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AUGUST 1982. No. 161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1982.8

재
다.
다.
금
니니.
이
방음,
재

案内

'82 會員建築設計作品 巡迴展示會 / 延長展示

그동안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전국 5 대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열렸던 회원건축설계작품 순회전시회가 지난 7월 17일 대전지역 전시를 마치고 그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전시가 크게 성황을 이뤘고 특히 전시기간 연장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서울(본회전시장)에서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 전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主催：大韓建築士協會

後援：建設部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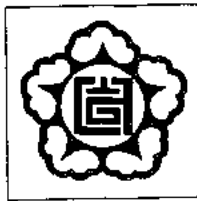
● 建築相談案内 ●

본회에서는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 無料建築相談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설계 및 시공·관계법규 등 건축과 관계되는 사항)

□ 월~금요일 / 오후 1시~오후 3시까지

□ 서울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1층 / 722 - 7653 · 7685



月刊 建築士

August 1982. No. 161

U. D. C. 69/72 (054-2) : 0612 (519)

発行所：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89 / 郵便番号：110

光化門郵便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9491 ~ 2,723-4287, 724-1045

發行人 兼 編輯人：具 珣 會 / 登録番号：第21-1251 / 登録：1967.3.23

発行：1982.8.15 / 非売品 / 印刷人：金 允 坤 (福祉文化社 / 265-7323)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目次

1982.8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61 호
구입년월일	1982.8.15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

論 壇	“책임과 능동적 자세와”	金基哲	2
	올림픽을 위한 환경조성：시리즈 II		10
	“올림픽과 建築士”		12
	都心環境과 高層事務所 建築	朴康平	13
	✓ 콘크리트構造物의 龜裂發生原因과 對策에 關한 研究	吳璇敎	29
	會員建築設計作品		35
	● 동원회관 (주·전일건축기술단) 吳鳳錫·申東海		36
	● 금성전선 기숙사 (회운건축설계사무소) 田燦珍		38
	● 여수상공회의소 (아진종합건축) 姜英一		40
	● 영풍빌딩 (주·박준명건축설계사무소) 朴春鳴		42
	● 신원빌딩 (의전건축연구소) 朴英昊		44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장원건축연구소) 朴潤雄		46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關한 考察[V]：連載	朴彦坤·金東旭	22
	✓ 構内通信線路設備에 關한 解説[II]：連載	金文洙	67
	✓ 風荷重 및 積雪荷重 基準의 改正内容과 解説[完]	姜一東	60
	“디자인 행위는 문제의 해결과정이다”	이필원	26
	“中東과 韓國建設”	柳正烈	8
	感傷紀行	金錫澈	16
海外作品	在美건축가 金泰修씨 작품소개		
	● SMITH SCHOOL - West Hartford, Connecticut		56
	● IMMANUEL HOUSE - Hartford, Connecticut		58
	● SOUTHBURY PUBLIC LIBRARY ADDITION - Southbury, Connecticut		59
	□ 협회소식		3
	□ 건축계뉴스		47
	□ 질의응답 <건축관계법 / 건축행정>		53
	□ 건축자재소개		71
	□ 법개정내용		74
	□ 회원등정		98

編纂委員會

委員長	朴商浩
委員	李明浩
“	姜健熙
“	朴勇煥
“	李榮一
“	金漢根
“	金基哲
“	姜哲求
“	趙東榮



표지설명 / 동원회관
설계：吳鳳錫·申東海
촬영：林正義

“책임과 능동적 자세와...”

金 基 哲 — 주·동양종합건축

모든 일에서 일하는 사람의 뜻과 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뜻이 일치되는 경우란 흔치 않으며, 그일을 하는 사람도 어떤 필요나 당위성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일상적인 일로서 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하여 행해지는 한계를 돌이켜 봄으로써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해야 할 일을 보완수정해 가려는 경우도 흔치 않다.

건축설계의 경우도 이에 필요한 관련된 일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형식에 얽매어 객관적 관점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므로서 필요한 일들이 등한하게 되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런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 때문에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어 남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기도 한다.

근래 개정된 건축사법 중에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 중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라는 구절이 삽입된 것을 보고 건축사의 책임과 업무범위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업무는 건축사로서의 업무 이외에 관리·운영·수주 등 잡다한 일들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해서 건축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던 것 같다.

면허만 관청에서 그 행사·제작 등을 허가하는 것으로, 일단 면허가 주어지면 일정범위 내에서 행사·제작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면허도 대부분의 자격면허인 경우 어떤 기술과 관련된 특정분야에 면허가 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업무의 한계가 그어지게 된다.

건축사의 경우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의 업무를 행하는 것으

로 규정되어 있다. 종전 2급 건축사의 경우 규모에 따라 업무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경과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고, 다른 기술 분야의 경우 업무범위는 면허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데 건축사의 경우는 면허종류는 한가지이면서 사무소개설 등록방식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이나 일반·전문 등으로 구분되는 타기술분야의 자격면허는 면허 그 자체로서 업무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의 경우 개인의 자격면허는 그 업무범위가 설계 등으로 특정지워지나, 단독·종합·합동건축사사무소 및 기술용역업체소속 건축사 등 사무소개설시 한두가지 건물을 제외하고 그 건물의 규모로서 업무범위를 구분함으로써 건축설계에 관련한 일반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합동사무소 개설자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법적의무의 연대책임은 건축사면허 단독사용이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으나 건축사의 책임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건물에 관한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설계하는 데는 건축구조 기술사와 건축설비 기술사의 안전확인 후 건축사 책임하에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건물의 다양화와 복잡성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많은 여건의 변화는 대형건물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인들과 협동으로 설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제도나 규정에 의한 책임때문이 아니라 제반 환경변화에 따른 설계자로서의 책임있는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다.

업무의 범위는 사무소 개설형태에 따라 구분되지만 책임의 한계는 역시 건축사 개인의 면허에 지워지고 합동의 경우 연대책임을 가지게 된다.

규정이나 면허 등은 건축을 하는데 최소한의 것만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규정은 지켜짐으로써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악용될 때도 있다.

따라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을 해나감으로써 시대적으로 환경에 알맞는 규정이 될 수 있다.

건축사는 여러부분에서 새롭고 많은 능력을 요구 당하고 있다. 새로운 능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변화하는 세계에 대하여 끈기있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정보의 수집과 교환은 앞을 내다보는 자세를 갖게하며 법이나 규정 이전에 건축사로서의 책임을 짐으로써 믿음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사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홍보는 협회의 활동도 중요하겠으나 주변의 정리와 정돈 등을 통한 건축사 각자의 능동적 행동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수가결에 의한 규정이나 결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동적 자세는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아 가는데 하등 도움을 주지 못한다. 조그마한 개선점도 빨리 발견하고 제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건축사 각자의 책임있는 행동은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낭비케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참여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일에 능동적이 될 때 건축사의 권익도 확고하게 될 것이다. 기나리는 자세란 주위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될 뿐이다.

전체적인 움직임의 기대보다는 자기 혼자만의 움직임이라도 능동적이 될 때, 그리고 그러한 각자의 행동이 한데 모인다면 좀더 개선된 건축사의 환경은 이루어 지리라 믿는다.

순회전시 大田서 幕 내려

各界人士 대거참석 홍보효과 커

大賞制定으로 施賞幅 넓혀

장장 33일간 전국 5 대도시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던 회원작품 순회전시회가 지난 7월16일 대전시민회관에서 전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마지막 전시회의 막을 올리기 위한 지난 7월12일의 대전시민회관에서 있었던 개막식에는 본회 具館會회장을 비롯한 金一榮이사, 柳根淵 대전지부장 등 본회 임원진이 참석함예이외 외빈으로는 유 흥수충남지사, 대전시장, 대전일보사장 등 각계 인사 등이 대거참석, 개막테이프를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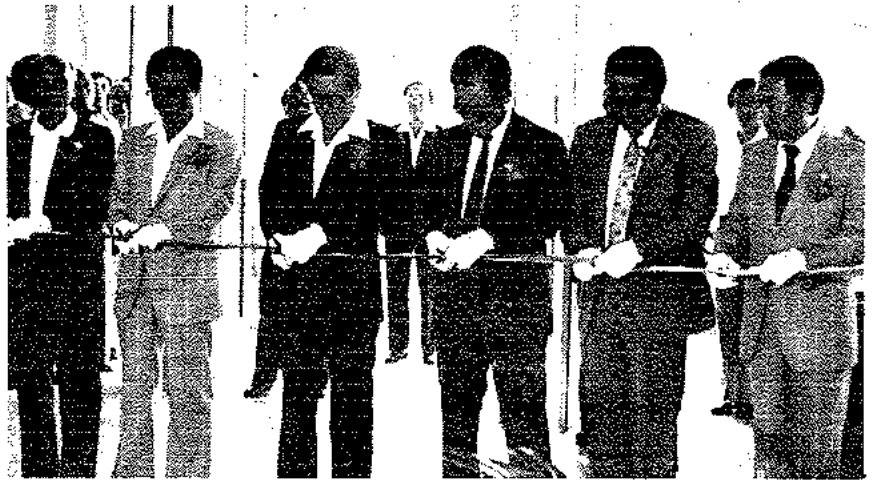
참석한 각계인사들은 전시장을 둘러보고 건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히고 다과를 나누며 화답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具회장은 개막식에 이어 소속 회원들과 증식을 나누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협회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참석회원들과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전시회를 총 결산하면 우선 관람객 수가 예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같이 관람객이 늘어난 까닭은 첫째, 종래의 서울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1개 지역주의 전시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시지역의 확산에 있었으며 둘째로는 이에따른 홍보활동이 잘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주요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보도와 TV뉴스를 이용한 전국적인 방영이 시민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몫을 했다.

전시회의 성과가 관람객의 많고적음에 달려있다고 할 때 이번 전시회의



□ 순회전시 마지막지역인 大田개막식

성과는 당초 예상을 넘는 큰 성과를 기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관람객이 참관했다는 외적인 평가가 수준이상이라는 호평을 받을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시회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 즉 내적 충실에 큰 힘을 쏟은 결과라고 하겠다.

본회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작품수집에서부터 새로운 상(대상) 제정, 심사, 개막식, 지방전시, 시상식, 작품수송 등 각 부문에 정성을 들여 빈틈 없고 나무랄데 없는 전시회로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에서와 개막식에는 각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이번 전시회의 목적인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인식제고” 달성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론 출품작품의 수에서도 예년에 비해 많았고,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에서도 밝혔듯이 작품수준도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이 작품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더욱 뜻깊게 한 것은 종래에 없었던 건설부장관상(대상) 제정이며, 지난해까지 협회상 시상이 매년 10월 중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이를 앞당겨 실시한 것과 더불어 시상 폭을 넓혀 새로 건설부장관상을 제정해서 보다 권위있는 시상제도로 승격한 점을 들 수 있다.

서울서 연장전시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각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분류해보면 일반인, 학생, 건축관계인,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울 약 3천명, 부산 약 1천8백명, 대구 약 2천5백명, 광주 약 2천명, 대전 약 1천5백여명이 각각 1주일에 전시장을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1주일간의 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각계의 요구로 지방전시가 모두 끝난 7월16일 이후부터 7월말까지 연장전시하기로 하고 현재 본회 전시장에서 계속 전시하고 있다.

任員 協議會 개최 현안문제등 중점협의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점검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임원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具所會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데 이어 16개사항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는 순회전시회 종료물 비롯해서 이에 따른 시상완료 내용, 전기통신공사 설계용역 입찰거부, 원천징수세무조사수점 등 10여개 업무에 대한 집행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서 협의사항으로는 먼저 8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와 예산안편성과 이에 따른 예산규모대책, 남세조합실시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소록세출인하검토

문제, 회지발간방안검토, 준회원에 대한 회비징수문제, 회관건립문제, 회원의로보험문제, 건축사현장제정, 보수율 덤핑방지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在美건축가 초청 간담회

金秀文씨—本회회의실에서



在美건축가 金秀文씨 초청 간담회가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具所會회장을 비롯하여 본회 임원 등이 참석하여 건축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이날 대담내용은, 일종의 친목단체인 남가좌주 건축가협회의 근황에 대한 설명을 金秀文씨로부터 들은 다음 본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건축사들을 돕기 위한 서로의 정확한 건축기술자료와 정보교환, 국내 건축사들의 미국 방문이나 초청에 의한 연수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계속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金秀文씨로부터 미국 건축실제사무실의 근황과 운영방법, 설계 및 감리비에 대한 미국과 한국 실정의 비교, 모든 건물이 조립식으로 건축되고 있는 현재 미국의 건축계 동향, 10~15% 정도의 합격을 밖에 보이고 있지 않은 AIA 라이선스 취득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金秀文씨는 지난 65년 한양공대 건축과를 졸업한 후 渡美, 78년에 미국 건축가협회 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Maxwell Starkman AIA & Associates의 한국 Project Director 직을 맡고 있고 남가좌주 건축가협회 Membership Chairman 직도 겸하고 있다.

한편 具所會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金秀文씨에게 기념패와 기념메달트를 전달했다.

편찬위원회

회지 편집계획수립을 위한 제8회 편찬위원회(위원장 朴商浩)가 지난달 30일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호에 대한 종합 합평과 이어서 8월호 편집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7월호 합평에서는 사진인쇄상태의 결함과 작품제재상에 있어서 설계사무소의 정확한 명기 등이 지적되었으며 8월호 편집의 주안점은 회원작품은 주로 사무실 빌딩 등을 수집해 재하고 이에 따른 회원논문 등을 실기로 했다.

“숨은 일꾼”으로 수상

제주지부 새마을 중앙본부서

제주지부(지부장 金守賢)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로부터 “새마을운동 숨은 일꾼”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동지부는 제주도 직능단체 새마을운동회원 104개 단체가

운에서 숨은 일꾼으로 뽑혀 이날 중앙본부장표창을 중앙본부별관 강당에서 수상하게 된 것이다.

전국 38명의 숨은 일꾼들과 함께 상을 받은 동지부는 그동안 주요공적으로 제주도 증산간 도로확장공사공구구 입비지원, 지부 자매부락결연 및 지원, 제주 청소년학교 설계비봉사, 불우결연아동양육비지원, 기타봉사활동 등이 크게 평가돼 이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의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낙도 경찰관 위문 행사

제주지부 회원 친목대회도

제주지부(지부장 金守賢)는 지난 달 17일 낙도 경찰관 위문을 겸한 회원 친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동지부 회원과 임직원 15명은 북제주군 구좌읍 연평리 제주경찰서

우도지서를 방문하고 지리적 조건이 불편한 낙도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비롯, 초소 및 전투경찰대원 등을 방문한 동지부회원들은 14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위문행사에 이어 회원친목을 다지는 남시대회를 가졌다.



② 會員作品展 巡回展示: 全国 5 大都市(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순회작품전을 개최(82. 6. 14~7. 30일까지)해서 총인원 2만여명이 관람, 人盛況을 이루었으며 특히 施賞幅을 넓혀 종래에는 없었던 건설부장관상을 제정, 展示會의 格을 높여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인식제고에 큰 성과를 거둬.

③ 弘報活動 展開: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고 회원 업무의増進을 위해 홍보활동 展開. 放送相談 40여회, T.V 20여회, 日刊新聞廣告 및 記事 10회 實施. 특히 東亜日報 1面 全面廣告 이후 各機關에서 건축설계 用役入札制度를 바꾸는 등 큰效果를 거둬.

④ 特別銓衡試驗에 다수 合格: 3회에 걸친 銓衡에서 452명이라는 많은 會員들이 特別銓衡에 合格할 수 있도록 共同教育 實務강좌 등을 실시했음. 次後로도 계속 協會共同努力으로 特別銓衡試驗에 대처할 예정임.

⑤ 建築士 業務報酬基準 作成: 現實의 으로 맞지않는(1975년도 개정 이후 현재 사용) 보수요율에 대한 보완을 10여회에 걸친 회의 등을 거쳐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유보상태이고 이는 계속 연구보완하여 당국의 인가가 되도록 추진할 방안이며 시기상 유보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한국경제 여건상 당분간 유보
- ② 내용상의 차이점, 즉 금번 통과된 건축법 이외 건축사법상의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보수요율개정
- ③ 부처간 협의의 전제차

⑥ 건축법·건축사법시행령 개정건의: 現實에 맞는 건축법·건축사법등이와 관련되는 法令에 대한 研究를 法研究分科委員會에서 數次에 다루워 支部長會議과 理事會議 등을 거쳐 關係 부처에 건의.

또한 이에 부수적으로 법,령,사령에서 많은 세부사항이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근일 내 령이

協會 業務報告

(1981. 5 ~ 1982. 7)

다음은 지난 1여년간 협회본부가 수행해 온 主要業務를 간추려 報告形式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동안 본회는 새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회원을 위한 협회육성에 회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많은 회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음니다.

여기에 그간의 業務內容을 옮기는 것은 안으로는 본부업무의 근간을 밝혀 보다 많

은 회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구하려는 뜻과 밖으로는 협회의 활동을 널리 홍보해서 일반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섭니다.

또한 다수회원께서는 各支域別 支部의 동정을 대략 이해하고 계실줄 사료되으나 本 部業務 近況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아시고자 하시는 會員님들을 위해서 회지를 통해 보고드립니다.

(事務處長)

① 協會予算節減運營: 景氣 침체에 따른 새입감소로 협회운영 예산 집행을 건축체제로 전환해서 예산규모의 축소와 효율화를 도모(총계 약 6천여만원 절감).

① 月刊 建築士誌 세신: 每回 發刊비용을 경쟁입찰로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반면 會誌의 質려化로 質을 높임(入札에 의한 發刊費 節約-年間 약1,500만원: 이 予算으로 年二 회에 걸쳐 특집 質려판 제작).

② 常設다목적展示場마련: 建築資材 메이커의 협조로 本會會館 1층에

常設다목적 會議場 및 展示場을 마련하여 각종 세미나, 綜合展示場, 會議室等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꾸밈(약 2천여만원 가량 시설비 協助).

③ 其他會員의 부담節減: 定期 및 臨時總會와 巡回展示會作品集 發刊, 각종 리셉션에 所要되는 費用을 資材메이커의 協助로 承擔(기타 사무용 집기등 상당액 기증 받음), 그밖에 사무용품비용을 최대한로 절감키 위해 복사기 구입, 전화사용 억제, 각종소모품 절약으로 예산절감.

개정공포되면 세부 사항을 공문화할 예정임.

다만 주요하게 변경 시행되는 사항은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建築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法の改正(1982. 4. 3 法律 第3,558号)에 따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래 건축물의 構造, 設備 등에 관한 技術的인 細部基準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令에 規定되어 있던 사항을 建設部令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現行의 運營上 나타난 未備點을 整備補完하여 全文改正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특정가구 정비지구 안의 건축계획 승인을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령 제4조 1항)

● 건축물의 건축 중에 받는 중간검사는 종래에는 기초 및 옥상의 공사에 대한 중간검사로 2회를 받도록 하였으나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초공사에 대한 중간검사 1회만 받도록 함(령 제11조 1항).

●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하자발생의 要因을 減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에 사용하는 건축재료 중 한 국공업규격 표시품의 사용대상 품목을 종래 14종에서 27종으로 하였고 그 적용대상 건축물은 共同住宅에 한하던 것을 3층이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령 제25조 별표 10)

● 都市生活에 필요한 도로·공원·광장 등 공공 空地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설계 樹立區域, 특정가구 정비지구 등 計劃的인 開發이 필요한 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동구역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기준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령 제86조 4항).

● 종래 용도변경 허가의 번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은 건축으로 보아 규제할 대상을 한정하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토록 함(령 제99조 1항).

建築士法施行令 改正理由

建築士法の改正(82. 4. 3 법률 第3,559号)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現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建築士事務所에 소속되어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계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이외 대통령령으로 그 자격을 정하도록 한 건축사보의 자격범위를 새로 정함(령 제2조의 2).

● 종전에는 주택허가 업무에도 합동사무실이 아니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고 연대하여 책임지던 사항이 단독사무소에서 조차·검사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단독사무소에서 주택허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됨.

● 기타 많은 사항은 그동안 회지를 통한 세부사항이므로 생략함.

7 納稅組合設立推進: 1981. 6. 19 일 부터 公聽會 2회와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납세조합 정관작성과 설립준비 후 서울지부를 시발로 국세청에 가입동의서를 접수 설립추진 중임바 정부의 교부금 예산관계로 보류 중이며 보류 원인은 다음과 같음.

보류 원인

- 납세조합 결성에 따른 교부금 예산에 미반영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37종의 직종 납세조합 신청에 따른 세입결손 우려
- 경제 여건과 경기부진에 따른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보류되고 있으며 계속 국세청 당국과 협의로 추진할 방침임.

8 회원의료보험제도 시행검토: 現行 법상 설계사무소는 사업소로 간주, 회원만의 의료보험수혜가 될 수 없는 실정으로 당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며 세

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의료보험 설립기준은 회원이 10,000명 이상이 될 때 운영이 가능하므로 건축사협회만의 의료보험 조합 구성은 불가.
- 자영자인 건축사는 직원이 5인 이상만 되면 제1종 의료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직원의 의료보험의 50%를 부담해 주어야 하며 의료보험료는 급료의 1.5% 범위 내에서 지불하면 하사라도 가입이 가능하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
- 회원의 영세성을 고려 회원만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추진 중이며 다만 예술인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관계 부처간에 協議中으로 계속 추진할 것임.

9 上근副會長 就任: 본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제도가 수립됨에 따라 지난 5월26일 金基壽부회장이 취임했다. 협회업무의 확대와 아울러 제반기능의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신장 내지지위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부회장 제도는 사무처기능강화의 일환책이기도 하다.

10 国会公聽會 公述人으로 選任: 국회탄생 이래 처음으로 건축에 대한 公聽會가 1981. 11. 26일 시도 되었음. 국회건설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本人 등 6명이 공술인으로 선정, 本人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건축법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을 피력하고 건축사의 권한이 없는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반을 조성하는 자는 건축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만을 행정처분하는 예를 들어 애로점을 역설함.

11 建築情報 資料室 운영: 비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정보 자료실을 개설, 국내외 서적 등 참고 문헌을 보유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음. 현재 일부 회원들이 기증한 서적을 보관하고 있음.

12 建築士所得標準率 引下 위한 업무: 建築士에 대한 소득표준을 인하로 회

원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이에 대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각종 표준율에 대한 조정작업이 9월부터 일제히 조사되어 12월 중에 확정되므로 이 기간동안 건축사의 원가계산과 타직종과의 비교를 통해 당국자와의 협의로 추진할 것임(각종 유별별 현소득표준율은 다음과 같음).

(정부소득 표준율표)

적요	금액	표준율
번호사	2,400만원 이하	35 %
	" 이상	38.5 %
공증인	" 이하	40 %
	" 이상	44 %
집달사	" 이하	42 %
	" 이상	46.2 %
사법서사	" 이하	36 %
	" 이상	39.6 %
공인회계사	" 이하	35 %
	" 이상	38.5 %
세무사	" 이하	29 %
	" 이상	31.9 %
평가인	" 이하	31 %
	" 이상	34.1 %
건축사	" 이하	27 %
	" 이상	29.7 %
공학건축기술서비스	" 이하	39 %
	" 이상	42.9 %
측량사(지적)	" 이하	28 %
	" 이상	30.8 %
기타	" 이하	36 %
	" 이상	39.6 %

⑬ 富川分所 회원分争件: 會員自律의 으로 運營되고 있는 福祉會 분쟁에서 비롯된 부천분소 회원간의 不協和音 또한 行政上의 問題로서 政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등 복잡한 諸般問題點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當事者로 하여금 소회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나 全般的인 事項은 別途 세밀한 實態 파악 후 검토 처리되어야 하겠으며 차후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임.

⑭ 韓國電氣通信公社 設計用役 入札問題 시정: 한국전기 통신공사가 발주하는 전신전화국청사 신축설계 용역에

있어 본회 회원 21명에게 입찰토록 公文으로 통보된 것을 본회에서는 설계 용역을 입찰로 발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공사에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주지토록 하고 전회원의 협조로서 入札에 응하는 회원이 없어 결국 모든 것이 수의계약 처리되었음.

끝으로 주요업무 내용의 제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타사항: □會員設問조사 실시 후 協會運營에 參考 □淨化運動 적극推進 □建築關係法令集 發刊 □海外視察 유대강화 □17個 委員會 議運營 □세미나 및 강과개최 □資格士制度의 改善點 건의 □會員名簿 發刊 □비위건축사 지도처리(윤리위원회) □건축기술향상 촉진강좌 □優秀建築資材展示會 開催 □건축사 협회 회관이전회의 계속 □건축 3 단체장 조찬회 계속 □協會연혁 책자 발간준비 □건축사 카드함 설치운영 □광고로 미수정리 □신규

직원 14명 채용 □대형공사 턴키베 이스 시정 촉구

□협회 규정 개정집 발간 □사정업무 5개년 계획 및 82년도 사정업무 계획수립 □정화 및 청탁배격 특별감사 전개 □회지 원고료지급기준 현실화 □건축 관계법 질의 142건 처리 □건축기술관계 도서 구입 활용 □건축표준 상세도집 복제인쇄 배부 □특별전형시험 강화 □회장 친서 3회 발송 □각 위원회 선임 위원 위촉패 제작 전달 □수재의연금 3백만원 기탁 □식수헌금 50만원 기탁·원호성금 전달 □전임임원 공로패 전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책자 인쇄 배부 □분소 업무지도강화·운영개선지도계몽시달 □누적된 서류정리를 통한 업무능률 제고 □회관 내부 수리 □고문번호 사 선인 □자문세무사 선임 □건설부 감사 수감 □각종 통계자료 수집 정리 □자재메이커의 협조로 매년 카렌다 제작 배부

수 도서 / 자료기증

“감사합니다”

◆韓國地名要覽

건설부 국립지리원이 펴낸 우리나라 地名要覽으로 한국지명요람 편찬위원회에서 편찬된 것이다.

이책에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地名에 관한 地理, 歷史 등을 종합하고 지도상에 수록될 地名을 위하여 복합지칭되고 있는 지명을 단일화하고 새로 제정이 필요한 지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地名의 연혁, 위치, 자연 환경, 산업, 문화 등을 종합수록하고 있다.

□건설부 국립지리원 발행 / 1982. 5.

10일

◆제 2 차 國土綜合開發計劃

국토개발연구원이 지난 80년2월 건설부의 의뢰로 연구한 보고서로서 이번엔 이를 부문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이다.

모두 5 권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제 1 편 計劃의 目標와 開發政策, 제 2

편 人口定着基盤의 造成, 제 3 편 資源開發과 環境保全, 제 4 편 國民生活環境의 整備, 제 5 편 國土開發基盤의 擴充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부문별 보고서는 대상기간 향후 10년(1982~1999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 개발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 발행 / 1982. 2.

◆國家技術資格便覽

技術資格檢定研究會가 펴낸 이 편람은 직접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각 분야에서 기술자격검정업무에 관계하는 이들이 항상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묶어 자료화 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서식을 비롯한 관계법과 시행령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부록으로는 각종 기술자격 시험문제제출제 및 관리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세진사 발행 / 값 5,000원 / 82. 7. 25.

“中東과 韓國建設”

柳 正 烈 — 外國語大學校
大學院長 / 政博

① 中東은 기후면에서는 아열대지방이며, 社會的으로는 소박한 농촌社會의 특성을 지닌,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후진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지역임에, 따라서 여러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中東의 여러 민족들은, 우리 민족보다 근면하지 못하며, 이슬람(ISLAM)이라는 종교적 영향 탓인지 樂天的이며, 기후 탓인지 또 긴 휴식, 卽 “시에스타”를 즐기는 민족들이다. 유목민족, 卽 “베두윈”(註: 아랍語로 沙漠民들을 말한다)의 후예인 아랍민족들은, 사막 가운데 거처인 천막(天幕) 아래에 모여 환담하기를 좋아하며 政治에서 私生活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줄거리가 이어지며 때로는 흥분하기까지 하는 熱砂의 情熱의인 민족이기도 하다.

어떤 知覺있는 아랍人들은 옛날보다 나태해진 아랍민족성의 원인을 “石油發見”에 있다고 아랍石油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기가야 中世 때부터 아프리카 大陸에서 “노예貿易”을 시작한 유명한 商人들은 아랍人들이었고 東西交易의 主導的인 역할을 하며 “실크 로오드”(SILK ROAD)를 따라 낙타의 隊商들을 이끌고 다닌 장본인들도 바로 아랍사람들이다.

近世에 와서도 “아랍船員”들은 世界的으로 유명했다. 한국선원들의 해외수출이 있기 훨씬 전에 아랍선원들은 世界的 五大洋을 누비고 다닌 근면하고 훌륭한 船員들로서 정평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아랍商人들이 온 것은 이미 9世紀 또는 11世紀로 알려져 있다.

한 아랍학자는 아랍商人들이 이미 9世紀에 “산 많고 金이 많은 新羅”를 來往했다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으며, 韓國史學家들은 11世紀인 高麗朝의 8代 현종, 10代 정종, 11代 문종 때에 각각 100여명의 아랍商人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朝廷에 그네들固有的 產物들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다.

한 예를 보면, 1040년 11월에 100여명의 아랍人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종에게 은도계, 沒藥(註: 향기 염료로 쓰는 수지), 多目(註: 물감 채취를 위한 나무) 등을 선물했고, 정종은 臣下들에게 命하여 따뜻한 호의를 이네들에게 베풀게 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금과 비단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자랑스러운 古代文明을 지닌, 또 옛날에는 活動的이었던 중동민족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후진성을 변치 못하고 석유개발만 해도 發見에서부터 生産, 수송, 정유공업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技術, 資本, 市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의존을 탈피하려고 몸부림치고는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앞에서 서술된 여러가지 理由가 있으며, 그러한 오늘의 중동사회이기에 우리는 이 지역에 經濟的인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② 1973年末의 石油波動과 위력을 떨치기 시작한 아랍의 석유달러는 기존 世界經濟질서를 흔들어 놓았으며 그 후 거둬들인 “오일쇼크”로 인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不況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는 世界경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상경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

며,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징후이다.

이 不況을 克服하지 못하고 있는 理由는 1973년말부터 거둬들인 油價와동에 따른 쇼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유가와동은 產油國과 非產油國 간의 國際的所得再分配라고 볼 수 있으며, 年間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소득을 산유국으로 이전시키고 있는 비산유국가군은 이에 기인한 경기위축요인을 제거시킬 방법을 아직껏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世界景氣가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다음 세가지로 설 명될 수 있겠다.

첫째로 世界景氣의 正常化는 어떤 形態로든지 궁극적으로 석유달러를 還流시키는 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나 各國의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 있어서도 산유국의 막대한 흑자와 非產油國의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石油달러의 流出로 인한 非產油國들의 國際收支 부담이 不均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一 例로 1977年度의 貿易收支의 경우를 보면, 美國은 315億弗의 赤字를 나타냈고 日本은 175億弗, 西獨은 160億弗의 黒字를 各各 내고 있어 부담이 특정국에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로 石油달러의 流出에 대한 各國의 대응책이 경기확대책이 아니고, 경기수축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各國이 경기부양과 수입증대로 나

가지 않고 수입억제, 경기수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世界不況을 심화시키고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을 질개한 것이다.

위와같은 世界景氣의 長期不況下에서 만약 中東지역으로의 해외건설 진출이 없었다면 1970年代 후반의 한국 경제는 크나큰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아니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외건설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로 成長減速下의 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경제를 成長加速下에서 구조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건설에서 온 外貨稼得은 한국경제의 內在的 취약점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이것을 다스려주고 있으며, 또 나아가서는 重化學工業化의 財源이 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經濟成長을 이끄는 데 있어서 수출에 처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에 彈力을 넣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韓國의 海外建設은 “오일 달러”를 還流시키는 데 중요한 일역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世界景氣에도 기여하고 있다. 오늘의 世界景氣가 長期不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基本的인 原因은 “오일 달러”의 환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建設輸出달러는 非產油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產油圈에서 온다는 점에서 商品수출보다 더욱 世界景氣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③ 建設을 통한 經濟協力 역시 雙務的이고 相對的이며 더욱이 互惠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의 中東건설진출을 두고 볼 때 상호간의 여건이 相對方의 必要를 적절히 充足시켜줄 수 있는 처지였기에 成功的으로 지금까지 進展되어 온 것이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中東地域의 산유국가들은 1973年의 “10월전쟁”이 몰고온 石油波動以後 막대한 오일달러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 財源을 自國內의 建設사업에 투입케 되었다. 많은 아랍產油國家들이 經濟開發計劃을 수립하여 自國의 近代化에 注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의 경우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計劃을 推進하고 있으니, 이에 수반되는 建設事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를 보면, 一般的으로 人的資源이 不足하며, 國內 대부분의 産業部門에 非사우디아라비아系 아랍인들, 특히 팔레스타인인, 에집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必要로 하는 技術人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의 건설인력이 사우디아라비아만해도 10만명 내외가 되는 것은 위의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으며, 이 人力輸出에 처한 現地의 여론과 반응이 대단히 좋은 것은 꽤 다행한 일로 생각된다.

우리의 中東건설수출을 성공시킨 또 다른 요인은, 1960年代에 쌓은 越南에서의 경험이라고 하겠다. 이 경험이 中東進出의 底力이 되었고, 또 과감히 진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본다.

본인이 196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방문했을 때 우리의 建設수출의 가능성을 절실히 느꼈다.

쿠웨이트의 힐튼 호텔에서 30代의 日本人 建築設計士 수명을 만났었다. 그때의 대화에서, 우리 건설업체들의 進出이 可能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日本人力이 活動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교통성 차관을 만났을 때 기존도로망, 건설 중인 도로, 計劃中인 道路 등이 明示된 “靑寫眞”을 보여주며, 韓國建設業체들의 進出을 중용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었다.

그 당시 나는 진퇴양난에 놓여있던 東南亞進出 建設業체들의 과감한 方向轉換과 中東進出의 必要性을 느꼈으며, 귀국하자마자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모 건설업체에 권유, 일년반을 協議 檢討하였으나 業체側의 시기상조라는 결론으로 成事되지 못했었다.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던 탓이라고 본다.

1970年代 후반의 中東建設景氣는 우리나라의 一般的인 低賃金에 상당한 힘을 입었던 것이며, 國際競爭力이 강했던 것도 이것이 크게 作用했기 때문이었다. 또 진출건설업체들도 직접 간접으로 이에 많은 利益을 볼 수 있었

던 것이다. 國內에서 約 300달러 정도의 勞賃이 中東에서는 約 700달러까지 計算되었던 것이 初期의 실정이었다.

④ 世界的으로 經濟成長이 저조했던 1970年代에도 우리의 高成長時代를 기록해온 큰 原動力의 하나가 바로 中東에도 경제진출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經濟가 景氣를 다시 回復하기 위해서 中東經濟進出에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날을 세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현재의 진출수준 유지이나, 上昇이나, 아니면, 低下나, 인 것이다.

1970年代 후반기보다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위와같은 상황을 물고 오겠끔한 큰 원인 중의 하나가, 自國의 産業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自國化 경향”이며 外來技術과 人力에 100% 依存하던 것이 점점 위축되어 內國人에게 참여 및 이윤추구 기회를 확대해 나가려는 시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석유달러의 위력이 弱化되어 가고 있으며 석유수입에 따른 景氣가 下落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랍產油國家들의 정책은 경제성을 더욱 더 따지게 되고, “石油生産高原”(PRODUCTION PLATEAU)를 유지하고 또 油價變動을 有利하게 조절하고자 減産을 시도하는 등 여러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脫石油時代”(POST OIL AGE)를 벌써 염려하며 經濟協力を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賃金上昇이 中東進出 韓國建設業체에게는 또 하나의 問題點을 던져주고 있다. 1980年 下半期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韓國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던 第三國의 근로자는 約 6%였으나, 점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40% 内外의 賃金으로 外國人을 싸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된 몇가지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처럼 中東建設事業은 순탄하지 못한 것이나 問題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克服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느냐, 또 그 能力을 培養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진취적인 자세와 노력으로 우리의 進出전략과 그비들과의 經濟協력을 재고해야 할 時點에 온 것 같다.

올림픽을 위한 환경조성

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준비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단순히 운동경기를 치루기 위한 경기장 시설비용뿐만 아니라 개최하는 도시의 모습을 단장하는데 드는 비용의 규모도 엄청난 규모라고 한다.

사실 외국 손님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데 집안 청소를 말끔하게 해놓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인 때문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도시의 모습을 잘 꾸며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올림픽이 단순히 몸으로 배우는 운동경기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연유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국민정신적인 차원에서 혹은 과학적, 경제적인 차원에서 개최국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데보다 큰 의의가 있음을 종래 올림픽을 통해 능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올림픽을 앞둔 준비 사항에는 훌륭한 경기장시설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바른 공중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의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유도하는 정신적 공사(?)에서부터 도시환경, 국민건강에 까지 폭넓은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경기장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 주변 환경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지 못한 시민이 도사리고 있다면 성(成)보다는 패(敗)가 따르는 결과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 固有美 살린 도시환경 조성

그렇다면 과연 올림픽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환경조성은 어떠한가 하며 이에 따른 도시개발은 어느 선까지가 적당한 것인가……

88올림픽을 앞두고 현재 우리의 형편과 앞으로 남아있는 5~6년간의 형편에 따라 적정규모에 맞춰 서울과 그 밖에 도시의 면모를 바꿔야 한다는 것

이 주어진 선이고 이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환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 크게 생각하면 아예 낡고 보기 흉한 건물을 쓸어버리고 새로 세운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불과 15일~20일가량 치루는 올림픽을 위해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형편 안에서 가로의 간판을 정리한다거나, 골목안락을 말끔하게 치운다거나 혹은 낡은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휴지통을 새로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등등 사소한 주변환경부터 정연하게 바로 잡는 것도 도시환경을 새롭게 하는 첫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이고 외적인 치장만으로는 세계적 잔치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에는 부족하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폭넓은 수선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다.

□ 大會 이후에 유용하게 이용토록 강구

서울 올림픽과 관계되는 인근 도시로는 인천, 수원, 안양, 성남 등이 보조 경기장시설이용으로 올림픽권 안에 들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도 올림픽을 위한 정형수술을 크든작든 안받을 수 없겠다.

문제는 분수에 넘치는 무턱대고 수술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다 잘고닫는 뜻있는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는데 원칙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서울과 위성도시들의 6년 후 올림픽을 위해 한국적 고유의 아름다움을 기조로한 도시정비의 기본 방향은 어떤 것인가——, 88올림픽을 준비하는

관계자는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녹지공간의 절대적확보를 꼽고 있다. 이 계획은 특히 단기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목이 자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이것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히 건설 중인 지하철공사가 하루빨리 원활하게 진행 완성되어야만 대중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 2,3,4호선이 완공되는 84년이 기대된다.

세째는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기 위한 하수처리 시설의 확대와 하상정리의 필요성이다. 서울은 자연적 조건이 아름답기 때문에 한강을 잘 가꾸면 그 아름다움이 한층 돋보인다는 것으로 오염된 한강물과 고르지 못한 강폭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시건축의 미화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축적 미가 가미되어야 할 건물, 교량 등 시설이 수요충족만을 고려한 결과 미적 안목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견해를 밝히고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서 작품성과 생산성이 병행된 시설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파리의 계획적으로 조성된 높이의 건축물, 교량의 조형미 등이 조화된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고…….

이상의 네가지 기본방향은 계획의 근간으로 이와 부수된 여러가지 도시환경조성계획과 병행돼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외국의 예 참작해서 계획수립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도시의 면모를 크게 바꾸는 작업을 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의 칼러를 정착시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다. 물론 자칫 빛나기 무리한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경우도 없지않겠지만 도시기능에 탄력성을 부여해서 시민생활의 능동화를 유도하

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데 큰 뜻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외국의 예를 들어 올림픽에 대비한 도시개발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앞둔 서울 올림픽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여긴다.

지난 1964년 동경올림픽을 위해 일본은 인구 1천만명의 과대도시로서 도시기능이 저하하고 있던 동경을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기능 회복의 기회로 삼고 도시개조 및 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력 추진키로 했다.

즉 대회경기에 사용될 시설을 비롯, 도로·교통·항만·상하수도 등의 도시시설의 건설정비, 청소 및 환경위생의 강화, 도시미화대책의 추진 등 광범위한 사업을 대회 관련사업으로 선정하고 국가지원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다.

당시의 수도권정비사업예산이 1958년~1964년까지 7년간 2천4백63억엔에 이르렀으며 동경올림픽대회준비를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약 1조엔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원의 출처는 국고부담이 25%, 동경시 부담 45%, 일반채원 30%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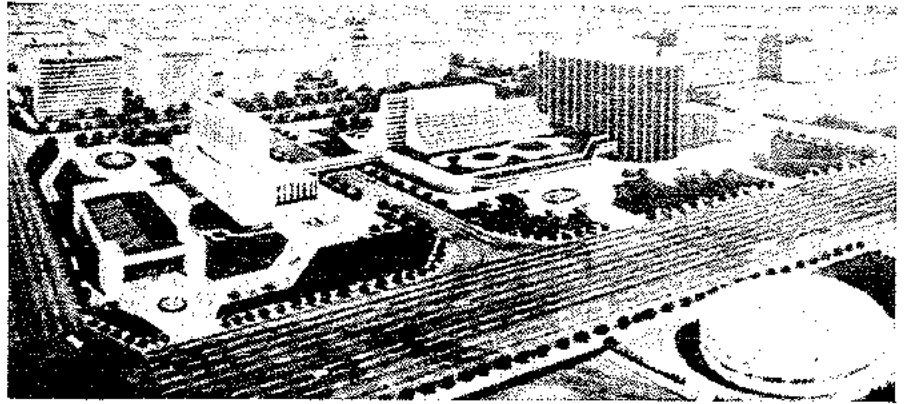
□ 올림픽은 도시기능 높이는 좋은 계기

이 재원을 가지고 경기장시설 건설정비와 도로교통시설, 고속철도건설, 환경정비사업 등을 했다.

경기장시설 건설정비사업으로는 駒沢都立공원 정비사업을 벌여 전문가로 하여금 전면 개조토록했다. 또 明治공원도 개수해서 올림픽에 사용토록 했다. 도로교통시설은 도로와 입체교차로를 건설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했고 고속철도를 새로 건설해서 초특급(동경-대판간)을 탄생시켰다.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상하수도를 정비해서 급수능력과 배수능력을 크게 높였다. 결국 동경의 경우도 도시의 모습을 새로 바꾸는 대수출이 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셈이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문헨과 몬트리올을 올림픽대회도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림픽이 하나의 전환



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72년 문헨대회를 위한 도시개발의 근간은 올림픽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공원과 선수촌건설, 교통시설의 확장과 도심지 내 자동차통행규제(보행자전용 공간 설정)와 지하개발 등이었다.

따라서 올림픽경기장시설로는 대단지(240만평)를 확보하고 주경기장의 5개종목의 경기장을 설립, 그 밖에 선수촌, 기자촌, 방송센터 등을 건립했다. 특히 선수촌은 12만평에 3천호의 아파트와 1천8백호의 연립주택으로 꾸며 대회 후에는 일반에 분양토록 했고, 방송센터 건물은 현재 체육학교로 전용되고 있다.

교통수송 시설면에서는 올림픽경기장을 남북으로 가르는 순환도로 등 3개의 외곽 순환선을 신설했고, 경기장과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과 대도시권 전철을 부설했다. 도심지 재개발은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보도를 만들고 지상은 개인승용차 통행을 제한했다. 특히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존을 막고 도심의 공기를 맑게 하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도시공간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한편 몬트리올대회는 연방정부의 의견과 비판자들의 비난 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치러진 대회였다.

그러나 도시개발은 다른 도시의 경우와 같이 경기시설, 교통시설, 도심지재개발과 지하활용으로 나누어 새 면모를 보여 줬다. 경기시설들에서는 주경기장시설과 기타 종목경기장을 한 지역내에 두고 특히 대회 이후에는 종합운동공원으로 활용토록 배려했다. 선수촌은 주경기장에서 약간 떨어

진 곳에 19층의 반피라밋형 아파트 4동 9백80호를 건설했으며 대회후에는 주민들에게 임대하고있다.

교통시설로는 주경기장부지의 동단과 서단에 지하철역을 위치시켜 도심지와 연결토록 건설했고 특히 동단역의 콩크스가 주경기장의 지하 출입구와 접속시켜놓아 관객서비스에 노력했다.

도심재개발과 지하활용면에서는 긴 겨울과 눈이 많은 몬트리올의 기후조건을 감안해서 지하철건설시 도심의 광장이나 역, 호텔, 극장, 아파트 주변의 지하를 개발하여 상가나 주차장을 만들어 전천후로 도시공간을 활용토록 유도한것이 특징이다.

□ 전문가의 대거 참여 바람직

이상에서와 같이 올림픽이 한 거대한 도시를 새로 변모시켜 놓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 시간, 노력이 들고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되며, 불과 며칠간의 대회를 위해서 벌이는 대역사로서는 너무 엄청난 일이며 어디까지나 대회이후에 기존시설물을 아주 유용하게 전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고려한 후 일에 착수하는것이 순서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따라서 관련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전문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훌륭한 대회 소화와 기념비적인 시설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도시문제 5월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간

“올림픽과 建築士”

- 올림픽 / 건축가의 의견 꼭 참작해야
- 건축 / 정신적 창조물의 으뜸
- 백년을 내다보는 안목 필요
- 한국문화의 底流 보여줘야

건축이란 인간정신의 참모습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외여행에서 폐허의 도시를 걸을 때는 특히 과거 인류의 정신적인 結晶이 그곳에 숨쉬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와같이 인류정신의 結晶을 표현해주는 것은 건축 이외는 없을 것이다.

정신사의 기억을 영구히 남기는 것이 바로 건축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나 어디를 가도 자연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또한 인간의 공동체로서의 형태가 확실히 눈에 띄게 되며 이러한 것의 集約이 도시가 되며 바로 이것이 건축인 것이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그속에 창조된 하나의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은 건축 이외는 없을 것이다. 불탄서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호-루 파데리는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 최고의 것이 건축이며 다음이 음악이고 詩라고 했다. 이렇게 불, 때 인간의 모습과 공동체로서의 感性의 형태가 건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외국인이 우리 도시를 보고 한 눈으로 민족적인 그 많은 수난사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한다. 貧困과 怨과 恨의 정신 속에 나의 참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참 형태가 사실 이외의 것으로 보인리는 없다.

나쁘게 말해서 당장에 닥친 오늘 하루하루를 겨우 지내오는 식의 생활태도, 무계획성의 결과가 우리 생활주변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살아 왔을까, 그래도 오천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때 당시의 어느 시대를 비교해 볼 때는 국제사회

적으로 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근세에 와서, 정확히 말해 2~3백년전부터가 더욱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가? 당쟁과 사회로 날을 새운 집정자와 주변인물들, 그러나 오늘 나와 우리들이 만일 이와같이 똑같은 형태로 세월을 보낸다면 후손들에게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우리도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문제, 10년 후의 문제, 백년 후의 문제, 아니 오백년, 천년 뒤까지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올해의 할 일들이 각각 다른 日課와 年課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쾰른사원을 보라! 3,4백년 동안 계속해서 건축을 해왔고 아직도 뒷손질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인에게 우리를 보일, 나의 참모습과 우리의 공동체의 참 형태를 보여야 할 시기가 바로 88년의 올림픽이다.

갑자기 그 시기 그 시간을 위해서 반드시 서두르기 보다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은 今時代, 동시대의 생활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건축인으로서 미래에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서도 인공적인 조형물인 건축이 추한 모양만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각 분야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되살리고, 역사와의 연속성을 생각하고 韓國文化의 底流에 있는 정신문화·철학도 찾아보자 (예를들면 불교철학 등). 이러한 우리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참 모습을 조형화 함으로써, 우리의 옛과 전통을 살림으로써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도시 주변을 살펴보면 서울을 남북으로 가

르고 있는 한강에 걸쳐진 다리만도 십여개나 된다. 이 한강의 푸른물이 흐르는 강변을 따라 인간주거의 공동체인 신촌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현시대 우리네 생활의 場이며 참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주거군은 建設意志의 성과로서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강에서 볼 때의 인공적인 조형이나 강변의 인공대지 위에 상가 등을 형성하거나 교량의 하부 측면의 조형미 등 또는 Land-mark로서의 Tower, 우리 우방의 6.25 참전기념비, 2차대전과 일제에 의한 민족수난역사관, 광복전실관, 민족적인 문화예술의 뿌리가 있는 기념관, 전통공예관 등을 건립해서 계속 현대적인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만 우리의 문화가 계승되지 않을까?

물론 건축사나 도시계획가에게는 불량지구의 재개발사업과 도시미관심의가 더욱 중요하고 절실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이란 개념에서 생각할 때 국제수준의 각종 현대시설, 호텔, 경기장 등 여러가지 시설이 당연히 준비되어야함은 사실이나 빠뜨리지 말아야할 것은 우리 한민족의 빛과 열이 담긴 예술, 조화의 뿌리가 있는 사실, 조형, 정신성, 음악성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차원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88년 축제에 대비하여 싹이 트게 하여야 한다.

건축사는 이러한 종합적인 眼力에서 볼 때 政策의 방향과 세부지침작성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각 건축관계 단체나 조직원은 우리의 대행사가 미래에 길이 성공적으로 남길 과제를 집행자 혹은 참여자들에게 자극과 도움, 참고가 되게 자혜를 짜내어 조직적으로 진언 되어야 하고 弘報되어야 하고 상호 정보교환도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에 직접 참여하는 인사들은 건축사의 의견과 의지를 심분참작하고 또한 그러한 소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다가올 88년의 올림픽 축제에 한국적인 우리의 참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건축사의 창작의 폭을 넓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心象)

都心環境과 高層事務所建築

朴 康 平—주·박준명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TOWN SPACE & OFFICE BUILDING DESIGN

Park, Kang Pyoung—C.M.PARK & CO. LTD.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서울은 예로부터 行政의 중심지로써 5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유한 地理的環境과 自然的條件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都市로 발전되어 왔으나 日帝의 植民地政策으로 말미암아 수난과 飢饉으로 폐허가 되어 버리고 文化는 말살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60·70년대의 급속한 高度成長을 가져왔지만 또한 혼란과 복잡성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産業化 내지 都市化의 영향으로 建築分野도 많은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획일화 및 동질화를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Modern Technology의 적절한 活用과 試圖은 새로운 建築文化의 창달과 쾌적한 都市環境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릇된 사용은 都市環境을 해치는 量産의 건축물과 무표정하고 획일화된 건축물을 만들 뿐이며, 人間과 自然을 손상시키는 무모한 行爲者로서 또한 非人格者로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발전되고 만다.

최근 서울의 都心內에도 高層事務所 建立이 눈부시게 進行되는 가운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고층건물의 계획에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하여 사무소건축의 몇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事務所建築의 始初

사무소건축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은 18세기말 영국의 産業革命에서 비롯된다.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한 機械文明에 따라 資本家들은 이 生産品을 매매하고 市場을 개척하는

전문적 職業人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空間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초기에는 生産地가 자기 주거 부근에 위치하여 자본가의 주택 중 일부를 사용하다가 차츰 확장되어가자 더 커다란 스페이스를 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나라의 中央地 또는 商業中心地에서 他産業分野와의 관계가 원활히 疏通될 수 있는 장소로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無形의 행위를 위한 크고 單一한 Space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밀집된 상업지역의 形成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따라서 급격한 사무소 건축물의 건립활동이 촉구되었던 것이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산업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하여 사무소 건축물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러한 合理的이고 능률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研究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고층화된 사무소 건축이 크게 늘어나 생산과 업무를 연결하는 效率의 人執務空間의 活性化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事務所建築의 高層化

歷史를 통해 보더라도 예로부터 인간은 자기과시를 위한 건축물 구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경주의 첨성대, 속리산 법주사의 捌相殿,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파리의 오벨리스크 등도 일종의 高層建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高層建築이 현대에 와서 많이 건립되고 있는 이유는 그 機能的 효과가 널리 判明되었기 때문이며, 아울러 내부

의 組織化가 가능하고 상·하 動線의 신속한 연결 등은 現代産業社會가 요구하는 능률적인 업무공간을 구성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층화 현상을 都市計劃的인 면에서 보면 근대의 전원적 도시전개론으로는 급속히 팽창하는 인구문제와 교통문제의 해결에 많은 난점이 발생하고, 특히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는 팽창하는 인구밀도, 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水平的 팽창을 억제시켜 급기야는 수직적인 팽창, 즉 고층화, 高密度化하는 都市展開論으로 연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층화 및 고밀도화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를테면 垜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점에서는 큰 이익이 있으나 자칫하면 都心環境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관리운영상의 複雜性, 기술적문제, 각종 災害·재난에 대비한 技術的 System, 初期投資의 經濟性 등, 企業主나 建築家들에게 많은 研究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高層事務所建築의 方向

고층 사무소건축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획할 때부터 수익성과 생활 적응도가 균형있게 해결되어야 하며 公共性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外部空間도 확보되어야 하고 垜地를 국민에게 개방, 集約的인 立體都市의인 高層化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理想을 실현시키기위하여는 垜地의 立地條件, 面積, 事務所의 性格, 建物形態 등에 따라 신축성있는 결정을 내려야한다. 일반적으로 기



업주나 건축가는 近視眼의인 經濟性만을 따지는 일과 法規의 規制에만 얽매어 都心에 複雜性만을 더하는 建物群의 量産을 초래하기 쉽다. 사무소 건물이 먼저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Open Space를 최대로 확보하고 人間性 회복의 욕구를 충족시킬 外部空間 창조에 힘을 쓰면 그 만큼 건축물의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업세의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隣近地域과 조화될 수 있는 거시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Super Block적인 계획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都市環境으로서의 高層建築의 外部空間

人工적으로 만들어진 요소가 支配的인 도시에는 自然的인 요소는 청량제의 역할을 하며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도시 속에서의 건물은 그것 자체로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공간 및 주변 건물들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연관성은 그 건물의 기능적 역할은 물론 視覺的인 측면, 더 나아가 주변 都市景觀 전체의 이미지 構成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도시 속에 어떠한 대규모 건물을 계획할 때에는 내부기능이 요구하는 空間設計뿐 아니라 外部空間이 都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内部空間과 設備 System이 우수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활동이 행해진다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外部空間이나 公共空間의 질이 都市의 일부분으로서 隣近환경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건물로서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都心地 내의 고층사무소 건물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물의 Approach時 느낄 수 있는 Townscape Vista, 저층부의 처리와 주위공간의 상호 突入여부, 출입구의 위치 및 공간형태 등인데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이 Piloti로서 교통난 해소와 人·車動線의 분리 등으로 이용하

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에서는 垜地 내에 Sunken Garden 및 Roof Garden, Atrium 등을 두어 건물내부의 空間感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視覺的으로도 一體感을 부여하고 있다.

美國의 Seagram Building의 경우 전형적인 前庭이며 Park Avenue에 면한 前庭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Unique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너편에 있는 Lever House는 piloti에 의해 개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공간형태의 최초시도는 1930년대 뉴욕의 Rock Feller Center가 뉴욕市の 환경을 改善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그 후 U.N본부 건물의 外部空間과 최근의 City Corp. Center도 건물을 피로티로 띄어 올림으로써 도시의 폐쇄적인 시각적 차단 및 開放感으로 外部空間을 造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최근 세워진 대한교육보험 빌딩의 Dome식 内庭도 이러한

방법의 일종으로서 새로운 시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空地의 활용은 그 건물의 評價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일반인들이 그 건물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그 건물의 所有主 및 관련기업群과도 상관되므로 建築物을 통한 企業의 明確한 印象을 줄 수 있는 선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要因으로 간주할 수 있다.

○交通量 및 發生人口의 예측

사무소건축에서 動線量을 파악하기 위한 發生人口 조사로는 출근인구와 방문자의 수, 교통수단별 분류,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 실태조사, 유동인구의 실태조사, 점심·퇴근 등의 Peak 시 출입구나 로비의 交通量 검토 등이 있다. 이로서 건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인구밀도를 조사하거나 재적인구에 대한 흡인 인구를 산출하여 건물에 대한 利用인구를 추정하며 한편으로는 기존건물의 實例에도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고층건물을 단위블럭 내에 計劃할 때는 車輛動線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동차의 入出, 인근 도로망의 消化能力, 지하철 및 서비스路線, 地區 내 차량의 총 유통량 및 이에 대응하는 건물 내의 주차장의 入車率·出車率의 예측, 충분한 駐車面積 확보, 人·車動線의 분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適正規模와 平面形

고층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소의 하나는 都心地 내의 法規制限 사항이다. 이러한 사전제한·높이제한·용적율·건폐율·주차장비 등 外形의 규제요소는 都市의 인 측면으로 간주

하고 여기에서는 건축적인 면에서의 규모추정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한다.

기준층의 平面形態는 건물의 外形規模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변화있는 産業社會에 대처하는 융통성있는 집부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地의 諸條件과 주변街區의 형태에도 많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整形의 平面形이 많은 까닭은 不整形이나 특수한 기준층의 平面形은 구조가 복잡·불합리하고 外壁面積의 증가와 內·外裝設備의 증가, 비기능적이고 공사비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방형·장방형 矩形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주의 과시의욕이나 都市景觀의 측면에서 특수한 형태가 채택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기준층의 형태에 따라서 기준층 면적이 넓을수록 有效事務室 면적의 R-entable比는 상승한다. 지금까지 외국의 초고층 빌딩의 기준층 면적은 대략 1,600m²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더욱 대규모화하여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新宿·住友빌딩은 2,678m², Pan Am 빌딩은 3,320m²이며 우리나라의 동방빌딩은 2,350m², 극동빌딩은 2,592m², 대한교육보험은 3,091m²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防火區劃상이나 코아의 형태상으로 보면 한개층의 면적이 이 이상 늘어 난다면 피난상의 문제, 層內의 보행거리의 증가, 복잡한 칸막이로 인한 업무능률의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평면계획상 필요한 모듈 System, 그릿드 Planning, 사무공간의 길이와 Office Landscape 등은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高層 事務所建築의 材料性

사무소건축이 초기에는 Cement·Glass·Steel 등의 재료에 의한 2·3층 정도의 소규모 건물로 세워졌으나 1885년 시카고의 Home Insurance 빌딩의 架橋構造의 성공으로 1890년, 필라델피아에 8층의 건물이 건립되었다. 이것이 5층 이상의 단독 사무소건축의 최초로 생각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 후 알루미늄 등의 경금속이 쓰이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Curtain Wall 구조로 된 Spandrel 또는 Precast Concrete Panel, All Glass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와 부수해서 水密性과 接合面의 形狀 및 접착의 기술적 해결과 벽·바닥의 Prefab化, 現場作業의 單純化 등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內裝材 역시 고정하중의 경감, 防火対策의 고려, 不燃化와 설비 System과의 상관성을 위해 많은 재료개발의 연구가 진행되며 생산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절약 방안으로 에너지절약형 건물에 대한 재료사용의 효율화와 고층화에 따른 部材의 조립화, 工法の 단순화 등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情報社會에 대처하는 컴퓨터식 업무처리와 각종 설비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의 현대화,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의 개선과 융통성 있는 사무공간, Landscape의 Design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계속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感傷紀行

金錫澈 — 建築設計事務所 이기빈

'81. 4. 대구

도시속을 기차가 간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 속을 간다. 이 가난한 살들의 나라에 유례없는 인구의 밀도가 저 경치들 때문에 비롯된 모양이다. 첫봄의 산색같은 풍만하고 선정적인 풍경이 있다. 소나무들 사이의 연록색 잡목은 꽃같이 화사하다. 산록에 일키어 있는 논들이 감탄스럽다. 어디 멀리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간혹 파수발들이 연변을 이어가는 초봄 경부선 철도를 탄다. 배꽃이 하얗게 피어 있다. 자그만 개울들, 멀리 접치어 이어지는 산들, 그 사이들로 바람이 자취가 되어 있는 작은 강들이 푸른 물색을 하면서 흘러 간다.

대구에서 30분 가량 더 시골로 들어선다. 높이 선 버드나무가 저녁 어스름에 물려, 터덜터덜 자갈길가에 점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시골길의 정취가 밝게 가슴으로 와 닿는다. 뿔산쪽으로 대숲이 있어 바람이 소리를 한다. 별당에 앉아 박형집에서 담은 밀주를 마신다. 가로 2미터쯤의 회랑을 두고 집앞 모두가 연못이다. 가운데 십길은 것이 있다. 어둑하게 하늘이 비치고 달빛이 바람에 흔들거린다. 연못가의 낮은 담들과 멀리 바라보이는 경치들과 하늘과 바람들이 기묘한 경경을 보인다. 극적인 인공의 한 세계를 체험한다. 밤이 늦어 안채 건넌방에 진을 치고 밤을 새워 마실 준비를 한다. 들기름 냄새가 기분좋은 장관에 앉는다. 벽은 모두 기둥까지, 문틀까지 한지로 발라 있다. 바닥은 따듯하다. 이 작은 방에 창까지 달린 다락문 외에도 넷이나 창지문이 있다. 옆마루, 앞마루, 뿔

마루 등, 방 하나에 참 많은 것들이 있어 있다. 장작타는 소리가 나며 방에 김이 오른다. 주안상을 주위로 밥적막 속에 한지로 둘러 싸인, 도치가 창이고 문이면서 다 같은 색깔들로 해서 밀실같은 방에 앉아 뿔산 새소리를 들으며 여배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건축공간의 어느 한 장면을 만끽한다. 매우 편안하고 익숙한 어느 공간에 있는 느낌이다. 밤이 깊었다. 술을 마시고 대취하였다. 뿔산의 나무들이 산소리를 한다.

'81. 4. 태고정

아침 사람들 소리에 잠이 깨었다. 뿔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면서 내려다 보이는 집들이 이제 뚜렷한 윤곽들을 한다. 조그만 산길을 가니 보이지 않던 먼 경치들이 보이다가 낙동강이 보이기 시작한다. 강이 흐른다. 멀리 다리가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산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고 바람의 흔적이 있는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 가면서 산들이 그 위로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다. 문득 사는 일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박형의 안내로 박씨 문중이 살던 태고정이 있는 마을로 간다. 이런 식의 문중마을은 처음 보는 셈이다. 많이들 손가하여 떠나고 유적처럼 빈집들이 대부분인, 반은 죽어 있는 마을이다. 젊은 사람은 없어 보인다. 소프트 웨어가 제거된 하드 웨어만인 환상의 마을을 보는 듯한 착각조차 있다. 담들과 지붕선들이 일키면서 마을이 전개되어 간다. 하나의 집이 시작이 되어 이웃집들이 만들어지고 차츰 모여가면서 마을의 공간들이 형성

되어 있는데 상식적인 경우와 달리 마을 전체의 형식보다 집안팎의 형식이 오히려 선명하다.

집과 담과 지붕들의 건축적 맥락이 마을로의 전개보다는 집안의 律調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대개 고건축을 접근하는 방식이 근거없는 몰두나 열광에 경시되어 진상을 아는 데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건축 집합의 방식은 도시형식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을 위쪽으로 사육신을 모신 태고정이 있고 주위로 그 종류의 건물들이 서 있다.

민가들이 자연스러운 경사로 이어지다가 단층이 지면서 이런 격식의 집들이 서 있다. 대략적, 이원적으로 마을과 병립하고 있다. 멀리 보이는 경치들, 주위의 농경지들, 뿔산과 어우러져 있는 임지들은 탁월하여 보이거나 각 집의 무성의한 정착은 부분적인 건축적 성과를 감안하여도 납득하기 힘들다. 안채, 바깥채, 앞뜰, 뿔뜰로 이어지는 아름다움은 여전하나 이런 일은 어느 보편건축에도 다 있는 일이다. 보편적인 가치, 인간이 모여 사는 일이 갖는 집합의 원리같은 것을 이 마을은 가지지 않고 있어 보인다. 전체로의 율조와 개체로의 전개가乖離하여 있다. 사람들이 없고 많은 것이 변해간 마을이기는 해도 기본적인 구성이 민속의 마을에서 우리가 보던 것을 크게 넘지 않는다. 이 조성중 때 거의 골격이 이루어진 마을인데도 이 마을에서 당시의 논리와 형이상학이 보이지 않는다.

건축이나 도시의 참다운 모습은 당시의 실상, 그 象形文字인데 이 마을에는 그 상형문자들 대신 게으른 장인들의 무성의만이 지금 느껴지는 일은 문화재 보수공사의 엉뚱한 파괴들 때문만일지. 무엇인가 빗기어가는 듯한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반쯤 비어 있는 마을 어느 빈집에 앉아 황형과 한참 토론하였다. 한국적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한다. 대개 우리는 게으른 무관심이나 근거없는 열광으로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접근한다. 건축공부하는 사람다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

교적 논리적 접근이 미숙하지만 느낌의 정밀한 것은 있고 이런 우리의 실망은 어느 측면의 진상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한국건축을 자의식이 적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때가 와야 할 것이다.

'81. 5. 서울, 교보빌딩

교보빌딩이 문을 열었다. 도시의 기하학에 보다는 자본의 산술에 의해 재단된 육면체의 무기미한 입체 속에 한 도시적 遭遇가 시작되었다. 광화문 본래였던 도시적 입지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은 내가 건축을 해서 느끼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합작인 중앙청(일제하 총독부건물)을 정면으로 해서 미국인에 의한 정부종합청사, 경제기획원과 미국대사관, 발버둥에 가까운 한국적 立像을 企圖하였으나 건축적 성과에 불구하고 도시적 인식의 차질로 스스로 이 거리에서 영거주층 소외된 세 층문화회관, 도시에서의 자본의 입지를 혼동한 현대전설사옥, 절충주의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동아일보사옥, 유일하지만 안스러워지는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국제극장 등이 어우러져 있는 광화문 네 거리에 일본적 감각을 이태리적 미국식으로 해학한 주일 미국대사관이 자본 투자의 산술로 절단된 입체로 어느날 우리 앞에 나타났다.

대지의 성격에 대한 특수감정의 물 이해가 건물의 축조기술에 대한 정확한 접근방식에 불구하고 눈에 띄인다. 이곳은 북악산과 인왕산 그리고 남산이 이어지는 서울의 중요한 장소이다. 그리고 이곳은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이 지점은 바로 서울의 중심부이다. 이곳에는 서울의 도시다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시아 할 자리다. 서울은 그 입지에 있어서 아름다운 도시다. 서울의 몇 장소들은 특히 아름답다. 산과 하늘과 강이 토지 속에 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광화문 네거리는 그런 장소 중의 하나다. 그런데 차일을 벗고 나타난 건물은 도시의 어디에서나 보게되는 전형적 한 예에 불과하다. 거대한 입체를 일본적 격자와 선들로 구성하면서 입구의 트임을 코어 월을 통해 동

측 아트리움으로 끌고 나간 건축적 전개는 테크닉은 훌륭하다. 그런데 왜 이런 집이, 이제 마지막 남기도 하였지만 광화문 네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비각측 네거리의 도시적 가능성을 탐당케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지하도가 있고 지하철이 지나고 많은 자동차와 사람의 흐름이 거리에 있고 북악산과 남산이 이어지는 서울의 주경관이 서는 이곳이 단순한 건축술의 교과서적 해학으로 끝난 일이 안스럽다. 입구홀에서 전개되는 내부공간의 다채로운 다각적 연출은 고층건물의 저층부다운 건축의 문법에는 새로운 일리의 장을 보여주지만 자본의 비정한 선심을 보는 섬뜩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준층 임대비의 다섯배가 되는 저층부를 과감히 오픈 스페이스로 한 내부의 처리나 대리석의 현란한 쓰임 등은 정작 기준층의 초라한 처리와 함께 자본제국적 비리의 건축술을 보는 듯 하다. 이 건물은 도시의 도시다움이나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나 이 건물에 당도할 사람들의 도시적 활기나 교양보다는 건축가의 자기만만한 자기과시의 여러 면모를 상기시키게 한다. 물론 건축가는 비자립적 분야의 역할을 하여야 하나 작가정신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될 수 없는 인간과 도시에 대한 의무와 헌신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시저펠리」의 퍼시픽 디자인 센터나 주일본 미국대사관 역시 그러한 작가정신의 결여가 느껴지는 건물이었다. 자가가 하게되는 일의 시일년대에 의한 해석과 주어진 대지의 도시적 개연성에 대한 인식은 건축가로서의 출발이다. 과거의 경우 도시는 서서히 성장하고 도시의 모든 장소는 이름지어져 있었다.

오늘에 와서 도시는 외형적성장 이외 도시생활의 다각적 변화에 따른 전환의 여러 계기들——즉 도시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변전하는 복합적 진전의 와중에 있다. 건축가에게는 항상 맹목적 사실의 변수와 대지의 도시적 개연성의 명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자질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에 새로운 더함의 질서를 의도하는 능력이다. 교보빌딩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많은

도시적 개연성과 건축적 사건의 가능성성을 외면하고 자기 탈출적인 전근대적 건축술에 의한 일본감각적 미제건물이다. 저층부의 메이저 스페이스는 자본의 지배적 과시가 건축공간의 휴메니티를 대신하고 각층간 연결의 여러 기법은 시종 과시적 연출이며 도시와 연속되는 동서정면의 처리 역시 약간의 설정의 절묘함을 제하면 지나치게 일관적인 개념적 처리에 불과하다.

교보빌딩을 보면서 느끼는 미묘한 낭독의 하나는 그 도시를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는 일은 잔혹 정곡을 보는 수는 있으나 도시의 실상인바의 도시적 조우의 가짓수를 모르게 되어 비현실적 피리를 야기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건축술이라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건축가의 포괄적 이해와 애정을 결핍하는 경우 이와 같은 완벽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과장과 성세의 성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교보빌딩은 교과서에 실려서 좋은 건축문법의 현상적 구현의 한 예이지만, 반면 오늘날의 건축이 탈피해야 하는 반현실적 건축의 한 예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81. 6. 플라자마이올의 동굴술집

코트라 박형의 안내를 받아 뽕만한 그의 차에 다섯이 실려서 어제밤 보았던 플라자마이올의 뒷길로 동굴술집을 찾았다. 본래는 여기가 마드리드의 골목들이다. 이런 골목들이 여덟 문틀을 통해서 광장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들어간 술집은 폭이 4미터쯤 되는 보울트의 아래인데 두개층으로 되어 있고 입구 카운터를 지나 세개의 반독립된 방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 방이자 통로인 볼트 속에 열일곱살쯤 된 여자아이들이 모여 앉아 피우고 마시고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들은 통로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홀라망코인지 디스코인지를 춘다. 우리는 통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았다. 다들 예쁘고 발랄하고 건강해 보인다. 장미 한송이씩을 들고, 대학생은 아직 아닌듯 한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 어른들만 다니는 듯한 술집에 천진난만한 얼굴들을 하고 앉아 있다. 이 아가씨들의 섬세한 충동과 흥분과 즐거움의 미묘한 활동을 보고 웃

는다. 입가에 손을 대고 까르르 웃다가 위에 입을 대면서 무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한다. 이러한 와중에 이 술집에 들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가세가 되어 그야말로 가관이 되었다. 우리도 나가서 춤을 추고 아이들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야말로 신기한 일은 이 아가씨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낚아 춤도 추면서 어느 하나 몸을 흐트리는 구석이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파조의 어느 가벼운 축제를 맞는 그런 모습들이다. 학교 때 같이 놀던, 소위 명문의 아가씨들이 모처럼 기분을 내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 경우 잠시 술집아가씨들과 비슷하게 되거나 박자 모르는 삼천포가 되는 둘 중의 하나였는데 이 아가씨들의 밝고 밝은 모습들을 보니 감개스럽다.

플라자마이올은 한때는 해적들의 밀수품이 거래되던 장소였다는데 지금은 모두 이러한 흥글술집들로 변하였다. 축제의 광장이 있는 그 뒷골목들의 이런 정경은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꽃같은 해후를 낳는다.

'81. 6. 바찌카

밤 11시 가까이 마드리드에서 제일 유명한 전통적인 플라멩코의 쇼가 있는 '바찌카'로 갔다. 기대하였던 집시풍의 그런 무대는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일종의 민속공연장 같은 곳이다. 이런 곳은 좀더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본래의 것의 일상화로서의 수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가설무대같은 이런 곳은 어떨까 싶다. 그러나 저러나 무대에 네여자와 두남자가 등장하고 원색의 조명이 밝혀진다.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카스타넷을 울리는데 손뼉소리가 소리의 분절과 리듬의 맥락이 선명하여 훌륭한 악기의 구실을 한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악기스럽다.

서서히, 서서히 춤을 추기 시작한다. 칼멘처럼 생긴 아가씨가 스타인 모양이다. 뱃이 어울리다 훌어지다가 각기 각대로 다가닥 다가닥하다가 또 돌씩 마주 엉키다가 드디어는 하나가 정면에 나서서 선정적인 율동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앞의 군무와 잘 이어져 회한한 전후의 맥락이 있다. 여자

의 모습도, 몸도, 그리고 그 율동도, 위의 박수소리, 악기의 소리들이 모두가 사란끼리의 그리움과 들뜬의 삭막을 선정적인 해후의 소리와 몸짓으로 변조시키고 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만취이 있다. 이 나라의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볼 때는 괴이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할 때 보면 그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없다.

'81. 6. 콜론광장과 국립문화회관

국립 운운할 때마다 우리는 민중, 시민, 자유, 이런 생각대신 전통, 민족, 국가 따위의 생각을 한다. 국립박물관하면 웅장한 스케일의 전통양식의 거대한 형상이 되고 하다못해 문화자만 들어가도 민족의 열이 나온다.

국립이라는 말은 국세로 그 공사비와 운영비가 지출된다는 뜻인데, 세금을 내는 민중이나 시민이나 세금을 내는 목적인 자유와 시민적 권리대신 살롱적인 문화양식이 난데없이 득세한다. 국립극장, 국립박물관, 세종문화회관, 게다가 극장 앞에서 몇받은 돈을 모아 지은 문예극장이나 미술회관에 이르기까지 특수제출, 특수제금을 위한 장소가 아닌 것이 없다.

국립 운운하는 건물들이야말로 도시의 도시다움과 민중과 연계된 시민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기이한 노릇이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여기 콜론광장의 국립문화회관은 잘 표현하고 있다. 부지 주위의 도시적 유적과 흐름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기둥이 지하로 들어가고 반층 정도 레벨 업된 광장이 그 위에 만들어져 있다. 원래의 콜론광장을 더 확대하여 새로운 콜론광장으로 만들고 그 입구는 물의 막이 쳐진 화사드가 되면서 광장축으로 면해 있다. 이 건물이 서면서 콜론광장은 더 커지고 동성해지고 주위의 모든 도시적 유적은 새로운 비전들을 갖게 되었다.

시원한 지하에는 극장이 있고 미술관이 있다. 미술관에 마침 짧은 여덟 작가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감동하였다. 그들의 자유분방한 상상력, 창조를 향한 집념, 제작에 대한 성실한 접근이 躍如하다.

서울서 전시회마다 느껴어지던 아

류들이 갖는 의도 투성이인 자위적인 해피 대신 여기는 건강한 작가들의 자기성찰과 피뇌와 과시가 있다. 새로 만들어진 인공토지의 처리에 주위를 더 개입시키는 적극적인 유도의 테크닉이 부족하고 극장이나 미술관도 처음 설정의 부연인 사건의 디테일이 결여되었다. 이 건축가는 마드리드를 잘 알고 좋아하고 국립문화회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 시작하였으나 최종의 성과들에까지 이루어내는 힘이 부족하였던듯 하다.

그러나 이 국립문화회관은 도시에 서의 좋은 건축물이 갖는 도시이고 건축인 한 실상을 보여준다.

인공토지에 야외전시장과 극장, 그 가운데의 중정을 통한 인공토지의 입체적 처리 등이 더 첨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주위의 화랑가나 앞 콜론광장이 주는 도시적 만남의 양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방식의 진화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81. 6. 틀레도

도시와 건축과 예술에 있어서 틀레도는 도처에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로마의 신들과 유대교와 회교와 기독교의 제적이 한 마을 속에 이웃하여 있다. 강의 원형 루프 속에 든 지형의 전략적 지리적 천혜를 높이 평가한 로마인들이 여기에 틀레를 세웠다. 6세기경 민족에게 점령되어 그들의 왕국이 되었다가 다시 8세기에 무어인들에게 코르도바와 함께 정복되고 11세기경에서야 반란 끝에 되찾아 독립왕국인 수도가 되었다. 당시 이 도시는 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의 커뮤니티가 혼재된 혼청거리는 도시였다. 틀레도는 수세기 동안 여러 종족과 종교가 혼란되어 오다가 기독교의 율법 아래 이상적인 진화의 경우를 보인 도시다. 여기에는 모슬렘이 있고 로마네스크가 있고 유가 있으며 드디어는 틀레디쉬가 있는 곳이다. 역사의 진화라는 것, 이질문명의 전이를 이 견고한 성채의 도시는 보여준다.

중세기 도시의 전형적인 성곽도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 산을 격하고 강이 막힌 천연의 요새인 산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조적

조 특유의 생명력으로 해서 과거의 상태가 많이 보존되어 있고 새로운 도시확대가 가능한 도시입지가 아니어서 과거의 도시가 대수선되는 정도의 변형만 있고 도시기능의 확대도 기왕의 흐름이 연장되는 정도만 되어 있어 도처에 보이는 자동차만 아니면 세월이 망각된 바로 중세인 그런 도시다. 멀리서 보는 산정의 성곽과 옛 도시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는 감계를 준다. 그림이나 사진에서만 보았던 과거의 도시, 지금 그 도시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전 도시가 황토 빛깔이다. 산들이 겹겹한 가운데 강이 흐르고 사방으로 트여 있는 도시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건축이다. 천년전의 도시가 원형 그대로 있다. 산기슭을 따라, 아마 마차길이었을 폭이 4미터 전후인 램프형 식인 길을 따라 4.5층 집들이 계속되다가 폭이 2,3미터 되는, 계단이 더러 생기는 작은 골목으로 연속된다. 길이 사방으로 이어가고 집들의 외곽을 형성하며 넓어지기도 하고 다시 작은길로 연결되기도 한다. 군데군데 조그만 광장이 생긴다. 벽들은 집의 외벽이 아니라 건의 내벽이고 지붕선들로 윤곽된 하늘은 도시의 천정이며 기슭을 따라 오르내리는 길은 이렇게 이어져가는 건축의 바닥이다.

여기서의 길은 2차원이 아닌 3차원인 도시공간 형식의 기본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있다. 집의 모든 건축적 감각은 그러한 의도에서 장식되고 계량된다. 건축형식의 기본적 문법은 도시형식의 부연에 불과하다. 중요한 모든 것은 도시형식이다. 건축은 도시형식의 한 부분 속에 그 진상이 새겨진 더함을 말한다.

모든 성곽도시가 그러하였듯이 틀레도 역시 자체에서 나는 재료만으로 이 도시를 만들었다. 황토색 벽돌과 크게 혹은 작게 조성된 현지의 돌들과 나무들만으로 이 거대한 도시가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도시의 공간형식의 기본이 길이었기 때문에 유례없이 훌륭한 해조를 성취하고 있다. 도시의 색깔이라는 것이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실감한다. 황토색의 변조가 푸른 하늘과 경치들과 벽을 타고 있는 녹색의 꽃들로 해서 아름다운 안정감을 준다. 하늘과 멀리 경치

가 이 도시와 하나인 것으로 대위되어 있다. 자연의 쓰임새가 만드는 격이 놀랄만하다.

도시는 건물의 연장이고 건축은 도시의 부분이며 모든 도시의 디테일이나 건축의 부분은 이러한 구성의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개구부벽의 처리, 박공의 단속적 전개, 기초적 매스의 조화 등에서 그들은 이러한 도시원리의 울조를 더욱 부연시키고 있다. 틀레도는 살아 있는 도시다. 틀레도는 구경용 관광도시가 아니다. 틀레도의 시민들은 새로 번창하는 개발도상국의 바쁜 도시의 시민들 같이 바쁘다. 천년전에 만들어진 하드웨어 속에 이들은 어색한 것하나 없이 살고 있다.

우리는 변화라는 말의 진상을 모르고 있다. 사람이 군을 이루고 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원시의 마을과 도시의 인간집합에는 집합의 상징형식이 있어 거의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경주와 같이 책으로만 형상이 남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상징형식의 피멸은 결국 하드웨어의 파탄을 가져와 변화라는 것에 당도하여 폐허가 되거나 시대의 쓰레기장이 되거나 한다. 복원된 유적들 말고는 팔기 위해 지은 집단으로 가득찬 경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독교의 개화와 불교문화의 비유적 상정을 보는 듯하다.

'81. 6. 피카소 미술관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은 한 위대한 예술가의 제적이기보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기에게 탁아온 세계와 자아와 이웃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애정의 기록이다. 초기의 습작들에서부터 만년의 천진스러운 파격에 이르기까지 그의 많은 것을 비교적 연대기적으로 모아 두었다. 골목 속의 로만고딕양식인 중정이 돌 건너 접치어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이다. 바르셀로나에 와서 피카소나 가우디가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바르셀로나적인 고딕식 건물이 현대회화의 실험과 도전의 남상이 그 박물관이 되어 있는 것이 미소롭다. 바르셀로나가 가진 열기와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이다.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아메리카대륙을 간 사람들이 아직

이 거리를 다니고 있다. 피카소는 수천 수만의 피카소의 한 상징으로 의인화 되었다는 느낌이 여기 바르셀로나에 와서 암시같이 느껴진다. 그의 그림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활의 태반을 이국에서 보낸 이 천재가 한번도 그의 본래인 자아와 자기의 이웃과 그러한 자아와 이웃의 배경인 인간에 대한 철저할 정도의 사랑과 이해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기법은 무수한 변천을 거듭하였지만 그의 그림은 모두 같은 그림이었다. 그야말로 교야의 후예이고 가우디의 친구며 칼렌의 이웃이었다. 사적 형이상학의 트릭을 헤치고 그는 항상 집에 몰아와 있었던 것이다. 예기치 않는 순간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구상적인 확신과 즐거움으로 만들었다.

우리 세기의 위대한 영혼으로서 그는 놀라운 명확성을 가지고 색깔 속에, 형태 속에 자신을 표현한다. 그는 스페인어를 깊이 사랑한 사람이다. 언어는 국가보다 더 불가피한 것이다. 그는 그의 모국어를 통해 방언과 시간성의 공간을 극복한 아름다움과 진실의 모습을 엄숙한 기도와 유쾌한 해학의 색채로 보여준다. 한 위대한 예술가를 가지는 민족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바로 그들의 천재를 만든 것이다.

나는 바르셀로나의 도처에서 피카소를 만났다. 옷집의 천진스러운 미소를 띤 아름답던 아가씨, 밤 2시까지 베시안을 같이 마신 길가 카페의 아저씨, 산타마리아호의 잔해, 바리 오고디크, 귀엘공원의 천진난만한 아이들, 밤 11시의 음악회에 모여든 남녀들. 피카소 뮤지엄은 예술을 수수께끼처럼 회랑에서 백일의 태양 속에 끌고 나온다. 피카소의 그림들은 예술을 진보하지 않고 단지 동일한 원형적 체험을 그대로 그 시대의 관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며 위대한 예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진술은 시간의 화살에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정말 위대한 인간이며 우리의 친구였다.

'81. 7. 바르셀로나, 바자르

바자르가 미사 후마다 시작된다는 마이올광장 옆 성당으로 갔다. 차가

다니는 길에 문이 바로 면하여 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엄숙하지 않고 일상적인 느낌이 들어 안심이다. 우리는 사후에 대해서 생각 안하려고 애를 쓴다.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는 일은 일종의 기억에 불과하다. 삼개월 시한부 삶인 사람의 일상은 어느 경우나 다른 빛깔이 된다.

우리는 수십년 시한부를 살고 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수개월 시한부 삶인 사람이 아는 죽음, 종교, 가죽이라는 그 말들이 과연 죽음을 안다는 일로 해서 일상의 빛깔까지 다르게 하는가. 안다는 일은 일상의 무슨 그림자가 되지 않는 두뇌 속의 각인, 작동하지 않는 메모리에 불과한,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미망적인 것이 아닌지.

종교적 생활의 일상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은 자신을 받치고 있는 잠재적 뿌리인 어머니즘과의 이별을 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가 기독교가 엄청난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도처가 교회인이 나라에서 종교란에 “무” 혹은 “불교”라고 적게되는 것도 그 연유이고 기독교인에 대한 약간의 어색한 느낌을 갖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당에 온 사람들은 마실을 가듯 여기에 온 것 같다. 집전의 말들, 성가대와 파이프 오르간과 이들의 편안한 얼굴들과 성채스러운 성당이 본래부터였던 것처럼 어울리어 있다. 이런 것이 종교건축의 한 모습이 아닌지.

미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바자르로 갔다. 동대문시장과 비슷하다. 원래 장치된 시장은 비상업적요소가 있다. 차츰 마켓트는 상인의 손을 떠나 장치와 정보와 시스템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장터는 장사꾼의 퍼스낼리티가 지배하는 경쟁터이다. 장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신용도 필요하고 임기응변도 있어야 한다. 경제가 인간집합의 한 본질적 부분인 것처럼 항상 자유스러운 교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중재하고, 진작시키는 것이 상인들의 일이다. 인구의 과도한 집합과 상품의 폭주가 우리에게서 장터를 빼앗아 간 것이다. 장터는 사람이 모

이는 곳이다. 가치라는 말이 많은 경우 화폐로의 계량인 것을 잊는 수가 많다. 사람들은 모두 돈에 초연하고 자 하는 남득할 수 없는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 가치있는 생활, 진실한 인간이라는 말은 가학성적인 냄새마저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장터에 와서는 그들의 욕망이 계량되는 것을 만끽하며 다닌다.

여기 이 바자르의 미사 후에 서는 장터스러운 분위기는 그러나 모든 것을 슈퍼마켓과 쇼핑몰 혹은 센터라는 이름의 장치상업에 잃어버린 사람들끼리 만든 가설무대 같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러 꼭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생태의 매듭을 보러 오는 것이다. 지금 이 바자르는 그 순환의 사슬이다. 토막이 나 있는 아무 것도 아닌 복원된 삼류 고전축 같다. 이 바자르가 성당 옆에서 매주 일요일 성당이 끝나지는 시간부터 열린다. 이것은 무슨 우연일까.

'81. 6. 바르셀로나, 플라자 델레이의 밤 야외음악회

바리오고디크의 킹스퀘어에서 구경한 플라자 델레이의 밤 11시 야외음악회는 사는 일의 한 즐거움이었다. 밤 어둠 속의 바리오고디크는 낮과는 다른 정취가 있다. 불이 밝혀지고 컴컴한 하늘 위로 바르셀로나 비상하고 환한 돌길들은 점프른 하늘과 조우하고 양쪽으로 석조기단의 장중한 그래픽이 굴곡한다. 길에 퍼질러 앉은 젊은 학생들, 껴안고 걸어가는 남녀들, 문득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선히여지는 눈이 큰 여자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차츰 모여든다.

불이 밝혀져진 석벽들의 디테일은 유적스럽고 서로 높낮이와 깊이가 다른 석벽의 접침이 단층을 이루며 하늘쪽으로 열린 사이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쳐진다. 나무의자들과 놓고 오록백 가까운 사람이 중정에 모였다. 성당의 종이 반시간마다 쿵쿵을 울리고 사람들의 수련거리는 기다림이 고조되면 서 무대 위로 기타를 든 세명의 연주자가 나타난다. 가운데에 기타를 든 여자가수가 서고 양측으로 두 남자가 서너개씩의 기타와 만돌린을 준비한다. 중정을 울리는 박수소리의 여운 속 간결한 인사에 바로 이어서 청영

한 목소리가 스페인의 가곡을 부른다. 기타의 반주도 훌륭하였으며 여가수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와 우아한 모습은 벌써 옛새제 4 시간씩이나 잠못자고 걸어다닌 피곤을 청정하게 하는 듯하다.

높고 낮은 석벽들의 반향으로 소리들은 더욱 고조된 정서적 울조를 보인다. 이 사람들도 잘 아는 어느 노래가 나오면 다같이 따라 부른다. 감동스럽다. 청량한 목소리가 가슴에 무방비상태로 퍼져온다. 돌바닥, 돌벽, 점프른 하늘, 그리고 여기의 이 음들, 이 소리들, 이 진지한 얼굴들——플라자 델레이의 밤 야외음악회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의 아름다움의 순간들——바로 그런 것이었다.

'81. 6. 가우디

귀엘공원, 카사파밀리아, 카사밀러, 카사바틀로. 건축은 사회생활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건축은 알 수 없는 자아와의 만남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환상과 실재 사이의 막은 얇은 것이다. 건축이 개인의 삶에 작용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다.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예술가는 인간의 천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계를 창조해가려는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몸이 수백만개의 세포로 되어 있드시 우리의 기억은 수억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은 자라고 자라서 그 자체로부터 양분을 얻어 거듭 새롭게 되어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귀엘공원은 우리의 기억 속에 침잠된 환상과 실재의 꿈과 열망, 천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유의 회복을 말하여준다. 바다가 보이는 광량한 산록에 가우디는 인간이 일상에서 망각한 자유의 빛깔, 사회생활에서 소외된 환상의 정체를 보여준다.

'81. 7. 코펜하겐, 티볼리가든

시청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 옷깃을 세우고 가족들이 나와 간단한 간식을 즐긴다. 광장의 크기와 길이와 주위의 건물이 주는 가라앉은 듯한 약간은 권태스러운 침잠이 있는 가운데 가벼운 미소들이 오간다. 바

로 이결 도시 한가운데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두 형식으로 장치된 130년 전에 만들어진 티볼리공원이 있다.

가을, 겨울은 낮 세시부터 어둡해져 이 도시다운 장소가 된다. 전혀 다른 것이 되는 파조가 한 장소에 한 장치로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 놀이터가 보이지만 실은 시민의 놀이터이다. 기후와 풍토가 사람에게 주는 연유를 우리는 잊고 있었다. 바르셀로나와 여기는 무엇이냐 많이 다르다. 동물의 생태가 기후와 풍토와 동물적 속성에 구속되듯이 인간의 생태는 역사라는 지 개인적 모험의 경우나 종말의식 등이 더 하여지는 것이 많은 부분이 동물생태와 다를 것이 없다. 인간집합의 생태는 도시마다에 단지 회화적인 설명으로만이 아닌 집합원리의 전형물로 나타나 있다. 밤의 티볼리는 그런 장소이다.

이 넓은 거리에 차도 사람도 잘 보이지 않고 북해의 찬 바닷바람과 어두운 갯빛하늘만 길에 가득한 이 도시의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밝은 원소가 왔는가. 대낮의 침잠이 밤의 화려함으로 바뀌어 있다. 가라앉은 조적조의 도시 한가운데 이런 환하고 밝은, 꽃이 가득한 새로운 정경이 매일 문을 연다. 우리는 어두운 구석을 찾아가는데 이들은 밝은 곳으로, 우리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이들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간다. 이 도시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 도시 거의가 다 그렇다. 점들이 그렇고 거리가 그렇고 카페들도 그렇다. 길마다 비어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도처가 사람이다. 집에도 마을에도 길에도. 우리는 사람에게 지쳐 있다. 원다는 일은 사람을 안만나는 일이다. 이들에게 원다는 일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장소는 어울리기도 힘들고 유지되기도 어렵다. 멀쩡한 사람도 이런 곳에 오면 우리는 양아치가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쉬는 일이고 나이다운 일이다. 인간집합의 과도한 스케일은 원래의 집합원리를 상실케한다.

근 100년에 걸친 불안정한 춘전시상태의 연속이 만든 파면과 밀도는 우리에게 이런 공원을 가질 수도 없게

만들었다.

티볼리의 밤은 더 없이 아름답다. 창경원 밤 벚꽃놀이가 20만인파가 아니면 여기보다 아름답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교묘도 집합사회의 원리를 더 공부해야 할 것이다. 이 작은 도시 코펜하겐에 200개가 넘는 공원이 있고 그 자체가 완벽한 공원인 강이 도시 한 가운데를 흐른다. 인왕산, 한강까지 공원면적으로 계산하고 자위하는 환각을 버리고 서울의 도시다움을 복원해야 한다. 중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업무지구를 만든다거나 재개발지구를 입도선매의 종합상가로 만드는 따위의 일은 도시의 도시다움을 파괴하는 전범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개인의 성을 쌓는 데에 전생애를 바친다. 그 개인의 성은 더 큰 성 안에서만 타당되는 것이다. 개인과 가문을 위한 새세대의 엄청난 비리와 집념이 2대불 못가는 이유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대신 자기들의 성만을 쌓는다. 그것은 성이 아니다. 사회의 성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장소를 갖는 것이다.

남들은 인구 100만일 때의 80년 전에 만든 지하철을 지금 만든다고 도시전부를 파헤치고 있는 800만의 거대도시 서울은 과연 무엇인가. 압구정동, 잠실울 지나는 도로변 차창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군의 불켜진 창들을 바라보노라면 피이한 공룡을 보는 전율이 있다. 조국근대화를 부르짖던 일부 극소수 인사에 의한 도시문명의 퇴락은 상상키 힘든 절곡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티볼리의 밤은 사람이 모여 산다는 일, 특히 도시에서 사는 일의 즐거움과 만남의 열락을 말하여 준다. 도시의 소프트 웨어가 가지는 도시다움의 가능성을 갯빛 하늘의 북해연변에서 배운다.

'81. 7 스톡홀름, 아스플란트

현대건축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고립적인 위대한 건축을 보았다. 건축은 필요에 구속되어 있으나 그 필요를 초극하는 거의 형이상학적이기까지한 이성의 경지를 표현할 수 있으리라던 생각의 실재를 보았다. 필요의 과장, 체사에 불화한 개인적 취

향의 과시, 고전의 자의적 왜곡만을 보여온 최근의 현대건축 와중에 이런 엄청난 만남을 당도한다. 주위 자연과의 비의적 조우, 건축의 모든 부분들과 보이지 않는 배후의 스트럭처어와의 내밀한 긴장. 공간형식의 단계적 진전이 이루는 움직임 속에서의 변환과 생성—그러나 이런 것을 말하거나 써도 이 감동에서는 정곡이 아니다. 떨어진 주위의 삼림 속 곳곳의 무덤들, 반추상 공간과 여기서 이어간 담과 벽들이 주는 서정의 아름다움은 차라리 숙연하다.

이곳은 죽은자를 위한 장소이다. 하나의 건축물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의 가장 고전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다. 과거의 건축은 그러한 형이상학 작인이었다. 선사의 유적과 고대의 폐허 속에 우리는 그들의 형이상학을 생각한다. 중세의 도시에는 삶과 죽음의 연속성이 경직하게 나타나 있다. 중세 이후 형이상학의 문제는 건축가의 명제가 아니게 되었다. 차츰 건축가들은 현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고 그 영광도 이제는 필요에로 국한되어 간다. 인간집합의 원리가 근대도시의 근간이 되었다. 집합하여 사는 일의 형식 속에서 건축가는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가우디는 이러한 경우의 위대한 건축가였다. 여기 스톡홀름의 화장장에서 아스플란트는 모든 건축가가 잊은 건축본래의 형이상학적 질문을 한다. 현대건축에서 죽음을 이렇게 정면에서 부닥트린 경우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는 죽음의 정체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 죽는다는 사건을 그는 생각한다. 그는 기억과 추상,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 지대를 만들었다. 그는 건축가로서 죽음을 대면하였다. 여기는 사실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피안의 외곽, 피안의 한 실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이다. 그의 형이상학적 언명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건축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우리가 오랜 동안 잊고 있었던 건축본래의 명제를 극도로 절제된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위대한 작가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말하는 곳이다. 한 인간이 이런 것을 그려낼 수 있다니! (*)

連載：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関한 考察〔V〕

朴彦坤 — 弘益大學校工科大学建築學科 副教授

金東旭 — 京畿大學建築工學科 專任講師

A STUDY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ark, Eon Kon — Prof. / Hong Ik University

Kim, Dong Uk — Instructor / Kyung Ki University

5. 部材의 意匠性 — 서까래

1. 머리말

原始住居 중에는 소위 수혈식 주거라고 하여 바닥을 地面보다 낮게 판 것이 있다. 수혈식 주거는 先史時代의 우리나라는 물론 中國이나 유럽大陸에도 존재하였으며 일부 未開地域에서는 최근까지도 유사한 형태의 住居가 남아 있었다. 수혈식 주거는 보통 바닥을 깊이 파고 중앙에 몇개의 기둥을 세우고 보를 전 뒤 그 위에 서까래를 걸쳐 지붕을 형성하는데 보다 간단한 주거의 경우에는 벽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서까래 下端을 地面까지 내려뜨려 地面에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때 서까래는 그 住居의 構體가 되며 서까래는 건물 그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道具가 발달되고 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다양한 生活空間이 요구되자 건물의 구조는 점차 다양하게 되었다. 지붕에 못지않게 벽체가 건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붕을 구성하는 기본 부재인) 서까래는 기둥이나 보에 비하여 가볍게 취급되게 되었다. 木造建물이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이르자 서

까래는 天障 등으로 가려져 보이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서까래는 여전히 중요한 구조재의 하나임에 변함이 없다.

서까래를 외벽 밖으로 길게 빼냄으로써 구성되는 처마는 실내에 햇살이 들어오거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부분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으며 서까래는 처마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재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서까래는 구조재로서도 중요한 部材이지만 동시에 건물의 外觀을 성격짓는 意匠의인 면에서도看過할 수 없는 중요한 部材이다. 왜냐하면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는 처마의 끝과 밑부분은 기단이나 벽면과 함께 사람들의 視線이 와 닿는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건물의 인상은 서까래 부재의 크기, 서까래의 배열방법, 세부와 가공수법 등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된다.

서까래가 갖는 이러한 意匠性은 시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으나 文化的 環境의 相異에 따라서 더욱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된다. 韓國建築과 中國·日本의 建築은 구조기법이

나 재료가 거의 동일하면서도 서로 다른 인상을 주는데 그러한 외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는 서까래라는 부재에 대한 구조적 외장적인 처리방법의 차이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本號에서는 지붕을 구성하는 部材인 서까래에 대해서 韓國 및 中國·日本建築 속에서 그것을 서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처마 주위의 서까래가 노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 부재가 갖는 구조적 외장적 특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韓國建築의 특성을 再吟味하고자 한다.

2. 서까래 斷面比例

서까래는 보통 長椽·短椽·처마서까래(檐下椽)·付椽 등을 통털어서 부르는 칭호이다. 長椽은 일반적으로 긴 서까래를 가리키는데 특히 중도리에서 처마 끝까지 걸친 긴 서까래를 처마서까래라고 부른다. 短椽은 중도리에서 중도리 사이에 걸친 짧은 서까래이며 付椽은 처마서까래 끝 위에 덧댄 짧은 서까래이다. 이 중에서 건물 外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마서까래와 부연이 된다.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처마서까래는 보통 圓形部材가 되며 부연은 角形이 되는데 이것은 中國建築도 마찬가지이다(사진 1). 日本建築에서는 두 部材가 모두 長方形의 直材로 되어 있다.

처마서까래와 부연은 멀리서 건물을 볼 때에는 마구리 부분이 특히 눈에 띄어 건물에 접근해서 올라다 볼 경우에는 길이 방향에 대해 주목받게 된다. 어느 경우이나 서까래部材의 크기는 건물전체의 의장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서까래부재의 치수를 기둥의 치수와 비교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기둥은 서까래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縱方向의 細長材란 共通性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우리나라의 木造建築物를 대상으로 기둥의 단면적경과 처마서까래·부연의 단면치수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의 끝에는 中國과 日本建築에서의 同一部材의 치수를 첨부하여 세 나라의 치수比를 對比하고자 하였다. 단 中國·日本의 경우에는 實建物の 치수를 제시하지 않고 <營造法式>·<匠明>이라는 두 나라의 建築技術書에 明示된 부재 치수를 인용하였다. 營造法式은 1100년 경에 中國에서 建築技法을 統合하고 설계나 見積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당시의 建築을 集大成한 것으로 法式에 기재된 수치는 당시의 中國建築의 표준적인 치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匠明은 1608년 日本의 한 建築工匠家門에서 편찬한 技術書로 부재간의 比例를 상세히 지정하여 건물에 일정한 비례체계를 세워 이를 傳授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日本建築에 대한 理念的인 형태가 규정되었으며 당시의 日本建築은 이러한 技術書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다.

서까래의 치수를 기둥의 직경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서까래부재는 中國·日本에 비하여 처마서까래가 약 1.5배 이상, 부연이 약 1.2배에서 1.5배 이상 굵은 것을 알 수 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건축의 경우 기둥의 직경을 1로 보았을 때 서까래의 직경은 0.365, 부연의 폭은 0.23이라는 평균가를 얻을 수 있다. 한편 營造法式에 規定된 中國건축의 치수는 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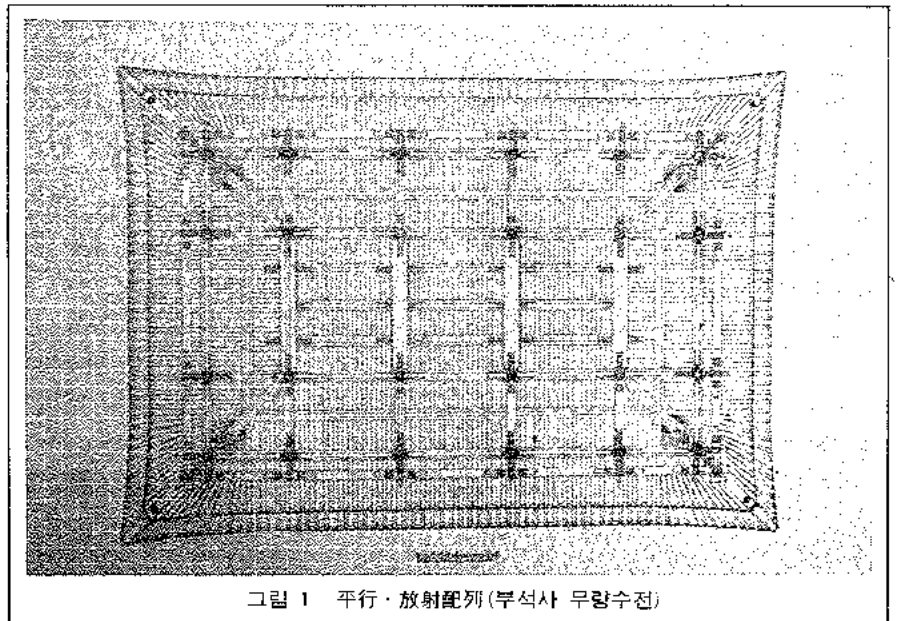


그림 1 平行·放射配列(부석사 무량수전)

표 1 서까래 단면치수의 기둥직경과의 대비표

(한국건축의 치수는 姜奎辰씨에 의해 調査, 大韓建築學會誌 1970~1973년에서)

단위 尺

건물명	연대	기둥(C)	처마서까래(S)	S/C의 비	부연(FR)	FR의 폭 C의 비	비고
서울남대문	1448	φ 1.80	φ .60	0.33	.40×.50	0.22	
문보대성전	1601	φ 1.75	φ .55	0.314	.35×.45	0.20	
봉정사회암강당	조선초	φ 1.50	φ .55	0.40	.40×.50	0.26	
창덕궁인정전	1616	φ 2.00	φ .70	0.35	.40×.60	0.20	
무량사극락전	조선중	φ 2.20	φ .80	0.36	.35×.50	0.15	
남원광한루	1638	φ 1.40	φ .60	0.43	.55×.55	0.39	
화엄사각황전	1703	φ 1.82	φ .70	0.39	.50×.60	0.27	
덕수궁중화전	1908	φ 1.70	φ .70	0.35	.40×.50	0.23	
장곡사상대웅전	미상	φ 1.60	φ .60	0.46	.40×.60	0.25	
계주관덕정	"	φ 1.50	φ .50	0.33	.25×.30	0.166	
서울창의문	"	φ 1.40	φ .50	0.35	.30×.40	0.21	
평균비(기둥에 대한 비)				0.365		0.23	
中國(營造法式)	1100	42分~45分 36分	9分~10分 7~8分	0.21~0.22 0.19~0.22	처마서까래의 폭	0.155 0.136~0.155	분은 설치수가 아닌法式에서 규정한 최소단위임
日本(匠明)	1608	1D	1/5D	0.2	1/5D	0.2	기둥을 1로 보았음
和樣(柱心包)		1D	1/6D	0.167	1/6D	0.167	

閣建物の 경우 기둥이 42分에서 45分, 처마서까래가 9分에서 10分이다. 이때의 분이란 건물의 비례체계를 만들기 위해 法式에서 따로 설정한 특수한 단위인데 法式에 의한 기둥과 서까래의 비는 1 : 0.21(처마서까래), 1 : 0.155(부연)이다. 日本의 경우는 처마서까래와 부연이 모두 角材이며 그 치수가 동일한 점이 특색인데 기둥에 대한 비는 0.2와 0.167

(多包系 건물)이다.

기둥과 對比시켜 보았을 때에 한국건축의 서까래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굵은 데에는 몇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구조적인 점에서 보아 우리나라의 지붕은 기와널과 서까래 사이에 多量の 흙을 집어넣어 지붕의 曲面을 만든다. 이 흙의 量은 想像 이상의 많은 量이 되며 지붕의 하중을 직

접 받게되는 서까래는 충분한 굵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편 日本의 건축은 약 10세기부터는 지붕에 흙을 덮는 방법을 버리고 서까래와 지붕널 사이를 빈 공간으로 하여 지붕하중을 가볍게 하고 하비기(枯木)라는 構造材를 서까래 위에 덧대어 지붕하중을 分擔시켰다.

따라서 서까래는 순수한 구조재의 성격보다 의장적인 의미를 더 갖게 되었다. 中國建築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서까래 위에 흙을 덮으며 서까래는 순수한 구조재로 活用된다. 그러나 中國建築의 서까래가 세 나라 중 가장 가늘다는 점은 부재의 經濟的·合理的 이용을 추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營造法式的 편찬 목적 중에 合理的인 부재사용과 見積의 표준화가 들어 있음을 보아 알 수 있으며 그 배후에는 이미 8,9세기부터 나타난 華北地方의 木材 결핍현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3. 서까래 配列技法

서까래는 지붕면 전체에 골고루 배열되게 되는데 우진각지붕이나 팔각지붕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배열방법이 있다. 첫째 모든 서까래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열되는 것으로 이를 平

行配列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째는 지붕의 中央部分은 平行으로 서까래를 배열하다가 귀퉁이 부분에서는 부채살 모양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平行·放射 배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세째는 지붕면 전체에 서까래를 부채살 모양으로 배열하는 것으로 放射 배열로 호칭한다.

평행배열은 맞배지붕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지만 우진각지붕이나 팔각지붕의 경우 네 귀퉁이를 평행배열로 하게 되면 귀퉁이 부분은 전연 하중을 받아내지 못하며 결국 처마 끝이 처지게 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처마서까래는 보통 중도리와 처마도리 위에 놓이는데 평행배열의 경우 서까래는 양 끝으로 가면서 처마도리 위에 놓이지 못하고 한쪽 끝을 추녀에 쏙고 있을뿐인 불안정한 상태에서 귀퉁이의 지붕하중을 지지하게 되기 때문이다(그림 5 참조).

우진각지붕이나 팔각지붕에서의 평행배열의 예는 中國이나 한국건축에는 없고 日本建築에만 보이는 수법인데 法隆寺 金堂을 비롯하여 소위 和樣(주심포양식)에 해당)은 모두가 평행배열을 취하고 있다. 이는 평행배열이 원시시대 이래로 日本建築에서 사용된 수법이란 점에서 새로이 모임지붕이나 팔

작지붕을 만들면서도 그들에게 익숙해 있던 평행배열의 意匠性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平行·放射 배열이란 지붕면의 가운데 부분은 평행배열을 하고 귀퉁이 부분의 서까래는 부채살 모양으로 배열하게 되는데 이때 부채살 모양의 서까래를 扇子椽이라고 부르고 있다. 선자연은 서까래가 처마도리 위에 놓이고 그 안쪽 끝은 보통 중도리가 교차되는 한 곳에 모두 모이게 된다. 따라서 시공에는 약간의 불편이 따르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된 技法이며 구조재로서의 서까래의 기능에 가장 알맞는 배열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배열방법은 中國建築과 우리나라 건축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日本建築에서는 극소수의 일부 건물에만 보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법이다.

放射 배열은 네 귀퉁이 뿐이 아니고 처마中心을 기점으로 서까래 전체를 부채살 모양으로 배열하는데 이는 시공상의 곤란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의장적 효과를 重視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살 배열의 예는 日本建築 중에서도 禪宗系統의 佛教寺院 建築에 한정되어 있다. 부채살 배열을 취하고 있는 禪宗系 建築의 지붕구조는 하네기라는 禪強材가 지붕하중을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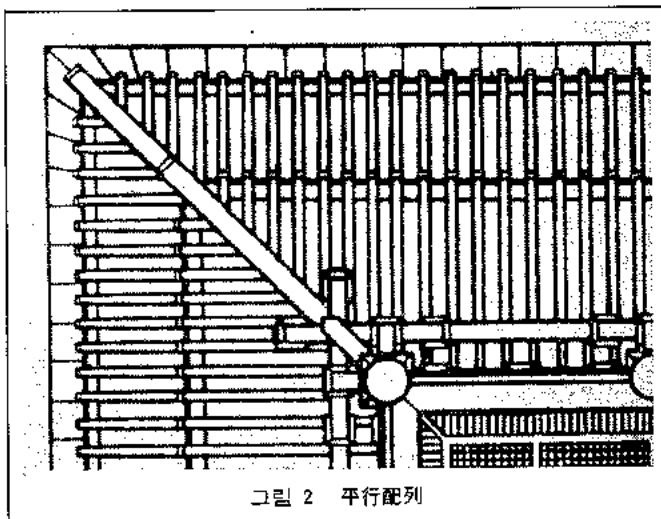


그림 2 平行配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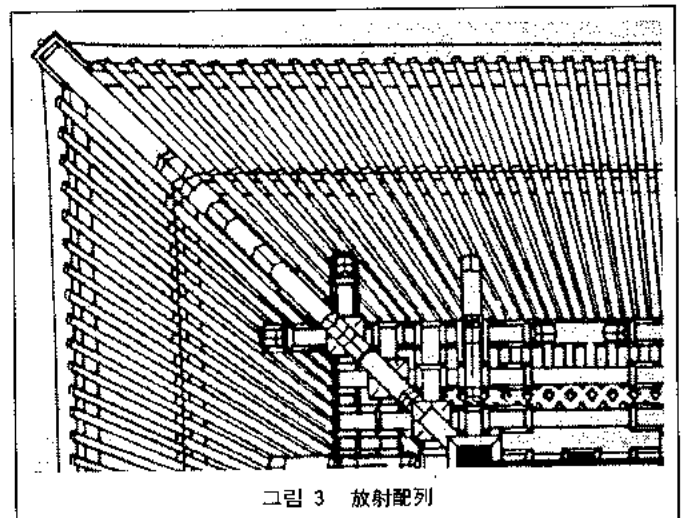


그림 3 放射配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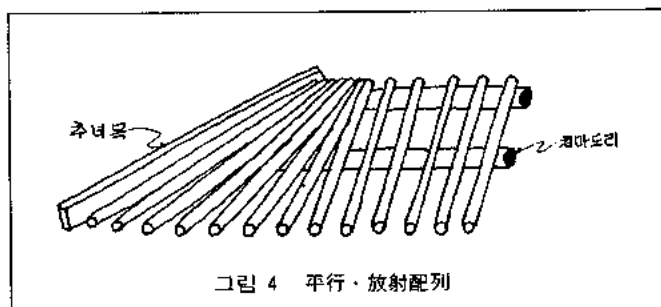


그림 4 平行·放射配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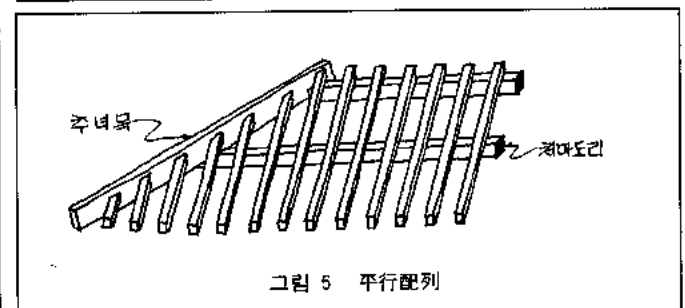


그림 5 平行配列

專擅하며 서까래는 지붕널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장식용 天障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서까래는 구조재로서 보다는 意匠의 부재로 되며 따라서 그 배열은 화려한 부채살 모양으로 장식되어지는 것이다.

4. 서까래 斷面意匠

서까래 부재는 外部에 노출되는 부분, 즉 처마서까래의 끝부분과 부연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각이 가해진다.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마구리 부분을 斜切, 즉 직각으로 하지 않고 그림 6 과 같이 약간 예각이 되게 자르는 것과 부재의 下部를 曲面으로 처리하는 점이다. 日本建築의 경우 서까래는 장방형의 단면을 가진 直材를 사용하며 마구리 부분 역시 直角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細部の 조각여하가 건물 전체의 인상을 부드럽게 또는 경직되게 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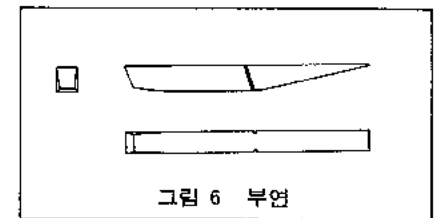
中國의 경우 부연의 처리에 있어서 마구리를 장방형이 아닌 마구리 하부가 들어드는 逆사다리꼴로 처리한다거나 부재 下部를 曲面으로 처리하는 것은 營造法式에도 詳細히 그 技法을 설명하고 있으나 마구리 부분을 斜切하는데 대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사진을 통해서 본 遺構에서도 斜切에 대하여는 아직 뚜렷한 實例를 확인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한국전축의 서까래의 마구리斜切은 매우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밑에서 서까래를 올려다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서까래의 마구리가 경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처마부분에 나타나는 서까래(부연)의 마구리의 形狀에 대하여 韓國과 日本의 경우를 비교하기로 한다.

처마가 양끝으로 가면서 위로 솟아오르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東洋三國에 공통된 현상이다. 이때에 처마가 솟아오르므로 해서 서까래 역시 수평되게 배열되지 못하고 曲線을 이루게 된다. 이 경우 圓形部材인 처마서까래는 그 처리가 간단하나 角材인 부연은 솟아오르는 曲線에 맞추어 部材를 變形시키든가 부연에 부착된 다른 부재를 變形시키어야 한다. 이 처리에 있어서 한국전축은 부연 위에 부연을 고정시키기 위해 놓는 조로라는 가늘고 긴 橫材를 약간 비틀어서 問題를 해결한다. 日本建築, 특히 平행배열의 경우 그 처리는 서까래 부재를 일일이 형태가 다른 마름모꼴로 架工하여 처리한다. 이것은 부재가 갖는 意

匠性을 구조에 순응시켜 처리하려는 태도와 의장에 중점을 두고 부재를 철저히 架工하려는 태도의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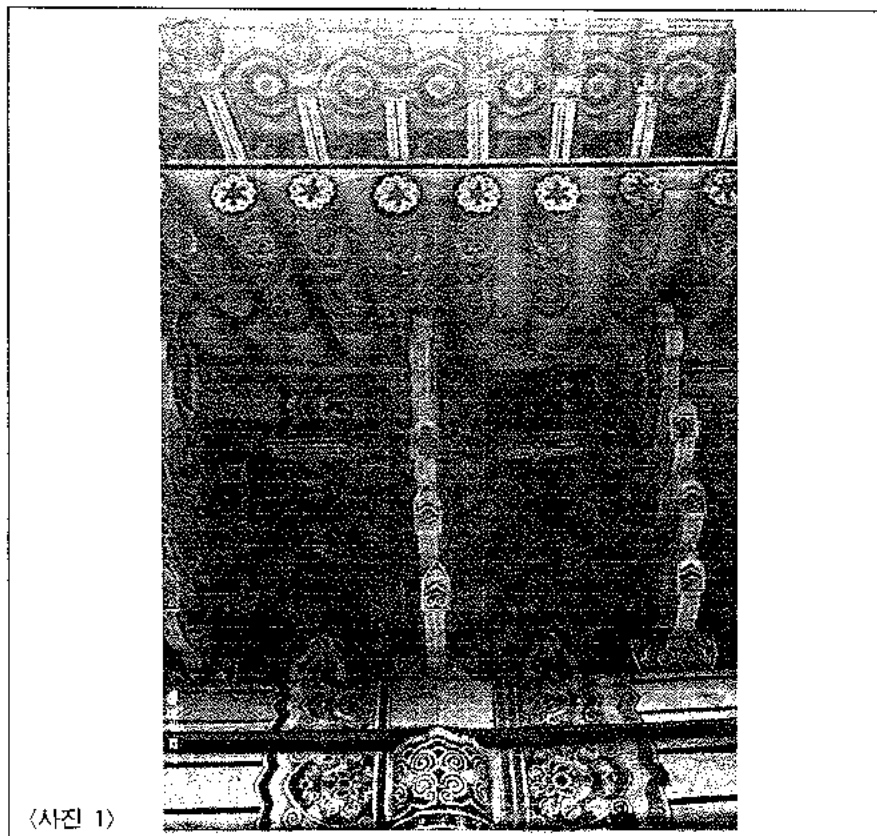
5. 맺음말

지금까지 서까래라는 부재를 놓고 치수·배열방법·세부처리 手法 등을 한국·중국·일본전축 속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다시 요약하여 세 나라 속에서 한국전축은 서까래를 어떻게 다루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전축에 어떠한 意匠의 특성을 부여하였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한국전축의 서까래는 그 부재가 中國·日本에 비교하여 약 1.5배 정도 굵다. 이것은 日本과는 달리 서까래가 지붕을 구성하고 그 하중을 下部에 전달하는 순수한 구조재라는 점과 육중한 지붕하중에 대한 지나친 安全性의 고려에 起因한다. 서까래의 배열에 있어서는 中國과 같은 平行·放射 배열을 하였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合理的이며 施工도 비교적 간편한 것이다. 이에 비해 日本建築에서 쓰였던 平행배열·방사배열은 구조적 무리, 시공상의 곤란을 무릅쓰고 意匠性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전축은 安全度 높은 굵은 부재사용에, 철저히 架工된 세련된 意匠性 보다는 構造的 合理性에 따른 부재 배열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재세부에 대한 미묘한 처리, 즉 서까래 마구리를 斜切하고 그 下部를 曲面으로 처리하여 처마부분에 대한 미묘한 장식효과를 자아내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재가 갖는 구조적 성격에 충실하면서도 거기에 細心한 意匠的 효과를 加味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한국전축이 一見 소박해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된 美를 간직하는 것은 서까래部材에서 보듯이 구조에 充實하면서도 미묘한 細部처리를 重視한 건축방법에서도 一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행위는 문제의 해결과정이다”

이 필 원 (건설부 건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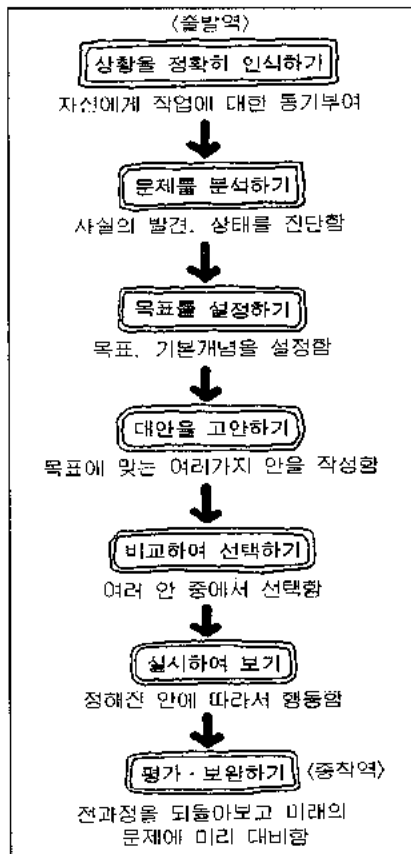
본고는 건축설계를 비롯한 일반적인 디자인과정에 대하여 쓴 것으로서 미국의 돈 코버그(Don Koberg)와 짐 바그날(Gim Bagnall)이 쓴 책“The Universal Traveller”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설계방법론에 관한 독특한 안내서로서 부제를 “a soft-systems guide to: creativity, problem-solving and the process of reaching goals”로 달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과정을 바로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보고, 건축가 등 디자이너를 고객이 부여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해결사(problem-solver)로 표현하고 있다. 그 내용이 평이한 문장과 독특한 접근방법으로 저술되어 있으므로 이해하기가 용이하여 실무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 소개한다.

I. 디자인과정의 본질

우리의 삶은 매일 매일의 문제에 부딪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과정의 반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디자인(역주 1)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행위는 어떤 문제의 해결과정-즉, 창조적인 동시에 생산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문제에 들어맞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아내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질학과 학생, 기고가, 채소재배업자, 영화제작자, 오토바이 경주 선수, 하이파이 건축애호가, 엘리베이터 안내양, 실로폰 연주자, 그리고 춤엔즈애호가 등 우리 모두는 문제를 매일 매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 특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문제를 해

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디자인, 즉 문제의 창조적 해결을 위한 과정은 일련의 연속적인 사전, 판단, 상태 또는 에너지상태(역주 2)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야 비로소 “디자인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과정은 결심-판단-해답-행동-평가(반성)의 행위로 이루어진 정겨운 한바퀴 돌아오는 일주여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상태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처치만(Churchman), 스타니슬라브스키(Stanislavsky), 오스본(Osborn) 등의 방법론에서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디자인 과정을 논리적 순서와 그 내용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의 인식 (accept situation)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것 : 의도를 확실히 하고 문제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인정하는 것. 즉 문제에 대한 선입견이나 방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

문제의 분석 (analyse)

사실을 발견하고 감정을 실제로 느껴보는 것. 즉 문제의 안팎에 대하여 아는 것. 바꾸어 말하면 문제의 내용과 범위를 발견하는 것.

문제의 정의 및 목표의 설정 (define)

문제해결의 목표(의도)를 결정하는 것. 즉 문제의 주된 쟁점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하는에 대한 의도를 개념화하고 확실히 하는 것.

대안의 작성 (창안) (ideat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 즉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대안(idea)을 찾아보는 것.

대안의 비교·선택 (select)

아이디어 중에서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것. 즉 정해진 목표달성을 위해 이미 작성된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실시(제작)
(implement)

실행하는 것 또는 실시계획을 짜는 것, 즉 선정된 안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거나 도면작성 등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평가·보완
(evaluate)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또는 재작성하는 것, 즉 우리의 디자인 작업과정의 성공 정도뿐 아니라 그 효과와 결과를 판단하는 것.

디자인, 곧 문제해결의 과정에 있어서 창조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흔히 갖게 되는 불안, 조심, 혼란, 그리고 다른 불편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여행할 때 체계적인 안내서를 이용하면 당초의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뿐 아니라 여행의 경유지에서 순간 순간의 풍물과 경치를 즐기도록 해주기 때문에 여행을 훨씬 더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의 활동을 잘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욱 충만하고 풍요하고 외욕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또는 자연의 결정에 그저 따르는 수동적인 희생물이 되는 것과는 정 반대의 상태입니다.

II. 디자인과정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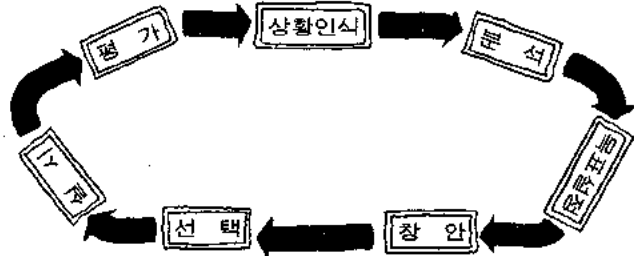
디자인과정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어 사람에 따라서 선형(線型)으로 또는 순환형(循環型), 환류형(環流型) 그리고 분기형(分枝型)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있어서는 디자인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디자인과정은 한 점에서 출발하여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일주여행일 뿐입니다. 만약에 논리적으로 법칙을 만들어 나간다면 모든 에너지상태를 통과하게 되는 체계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행이 뜻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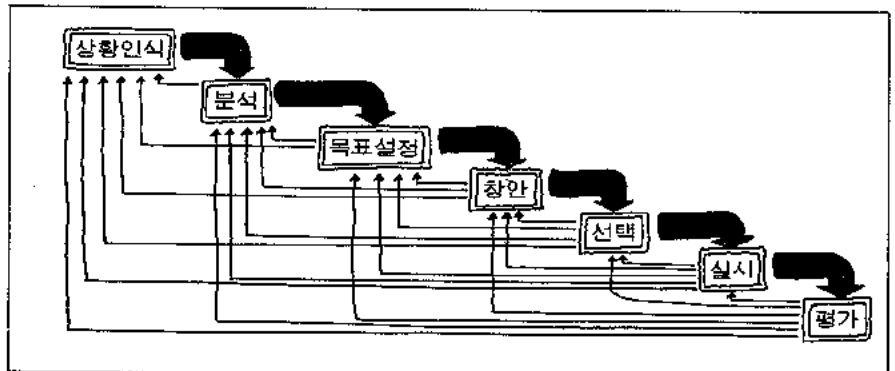
1) 선형 (Linear) - 하나의 과정이 끝으로서 작업이 직선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작업이 직선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작업이 직선적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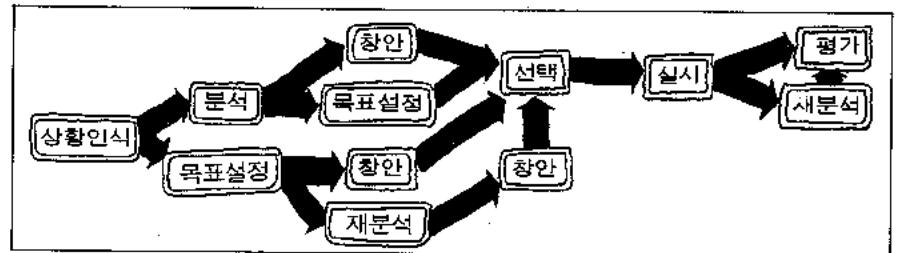
2) 순환형 (Circular) -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므로 처음과 나중의 구별이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일 때, 벌써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 환류형 (Feedback) - 앞으로 진행하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전단계로 되돌아가서 점검을 행하는 환류방식으로 시간이라든가 비용같은 제약요소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디자인 과정을 끝내야 할 경우가 아니면 각 단계의 행위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4) 분기형 (Branching) - 어떤 과정이 끝난 다음의 진행방향이 하나 이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벌어지거나 여러 과정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디자인과정의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는 것이었다면 출발역에 되돌아 왔을 때에는 모든 것이 처음 떠날 때와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새로운 경험들로 인해 신선하고 흥미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디자인과정 자체는 단순히 순환적이거나 나선형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생명체의 기본 모델인 DNA분자와 같은 연속적인 일주여행으로 이

루어진 나선형 연속체 (continuum)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III. 디자인과정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법들

끝으로 앞서 말한 디자인과정의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기법을 명칭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의 인식단계"에 이용되는 기법들

- 총장기재가격기준법(Ad Valorem) (역주 3)
- 우선순위의 행렬식을 만들어 비교하는 법
- 자신과 이해관계 계산법
- 자기최면법
-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여 보는 방법
- 잠시 잊어버리거나 초월하여 보는 방법
- 이 상황이 누구의 책임인가? 묻는 방법
- 나자신의 책임이 아닌가? 자문하는 방법
- 자신이 그 문제의 희생자로 생각해 보는 방법
- 독서 등을 통하여 대리체험을 해 보는 방법
- 남과 ○○일을 할 계획임을 약속하는 방법
- 무엇때문에 망설이는가? 자문하는 방법
- 스타니슬라브스키 (Stanislavsky) 방법 (역주 4)
- 고정관념을 버리는 방법

2. "문제의 분석" 단계에 이용되는 기법들

-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보는 방법
- 닥치는 대로 끌어 모아보는 방법
- 문제해결학(Synectics) (역주 5)
- 문제의 근원과악법
- 특성나열법
- 아는 것을 모두 기록하는 법
- 유사한 사례 비교법
- 모형 (Model)의 작성법
- 형태학(Morphology)적 모형이동법

- 행렬식 작성법
- 원형 (Pattern)의 발견
- 전문가와외의 상담법
- 목적의식을 뚜렷이 하는 방법
- 생각난 "아이디어" 그 자체를 잠시 잊어버리는 방법
- 감수성을 증진하여 생각하여 보는 방법
- 극대화 및 극소화 해 보는 방법

3. 목표의 설정단계에서 사용되는 기법들

- "무엇 때문인가?" 질문하는 방법
- 행렬식을 작성하여 핵심을 발견하는 방법
- 목표를 나열하여 기록해 보는 방법
- 핵심단어 (Key-word) 추출법
- 큰 문제 속의 작은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
- 친구와 토론해 보는 방법
- 집단토의에 의하여 핵심을 발견하는 방법

4. "창안단계"에서 이용되는 기법들

- Brainstorming (집단토의에 의한 지혜모으기)
- 조작적인 어휘사용법 (예: 확대 / 축소하다, 치환하다)
- 사이벡틱스 (Synectics)
- 제 3 자에게 아이디어를 부탁하는 방법
-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는 방법
- 유추 (Analogy)를 이용하는 방법
- 여행 등 환경을 바꾸어서 구상하여 보는 방법
- 형태론적 (Morphological)인 관계를 찾아보는 방법
- 아이디어 자체를 찾지 말고,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씨를 찾는 방법

- 5. "선택단계"에 이용되는 기법들
- 설계자가 스스로의 의견과 판단에 비추어 비교 선택하는 법
- 구상된 대안과 당초 목표를 대비해 보는 방법
- 각 대안의 장점만을 모아 새 대안을 작성하는 방법
- 실행상 문제점을 예측하여 비교선택하는 법
-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
- 한번에 하나씩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

6. "실시단계"에서 이용되는 기법들

- 일정과 작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 두려움이나 아쉬움을 씻어버리는 방법
- 성능 (Performance) 표시법
- 시범하여 보는 방법
- 변경, 수정을 허용하거나 그것에 대비하는 방법
-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방법
- 기타
- 도표 / 도식작성, —모형제작, —점진적 개선시도, —패턴 행거지, —공통분도 추출, —시행착오법, —원형탐구법, —생물전자학 (Cybernetics) 이론

7. "평가단계"에서 이용되는 기법들

- 진도의 양과 질 측정 (목표대비 실적)
- 입주자와 인근주민에게 평가를위한 설문조사 실시
- 진도도표 작성
- 친한 친구에게 편지로 물어 보는 방법
-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방법

역주 1 : "Design"의 번역에 대하여는 이희승전 국어대사전 (민중서관판)에 의하면 ① 입안 (立案) 계획 ② 설계 ③ 의장 (意匠) 도안 등으로 불리며 있어 보통 번역하는 "설계"라는 용어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디자인으로 그대로 썼다. 참고로 "설계"의 뜻에 대하여도 동 사전에서 ① 계획을 세움 ② 제작이나 공사 등에 앞서 그 목적에 맞도록 공비, 부지, 재료 및 구조상의 모든 계획을 세워 도면 혹은 그 밖의 방식으로 명시하는 일로 풀이하고 있어 비교적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보겠다.

역주 2 : 에너지 상태 (energy state) : 양자론에서 원자나 분자의 어떤 궤도상을 도는 전자가 기 준상태에서 가지는 일정한 에너지의 값 또는 그 상태를 말하며 적당한 자극을 받으면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상황의 인식"에서 "평가"까지의 7 단계를 전자가 회전하는 궤도로 보고 다음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됨을 뜻한다고 보겠다.

역주 3 :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총장 (invoice)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하여 이것의 몇%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역주 4 : 연극할 때 연기를 실감나게 하기 위하여 배우가 주인공과 잠정이입 (移入)을 시도하려고 하는 연기법을 말하며 러시아의 콘스탄틴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내세운 이론임.

역주 5 : 다양한 성격과 전문분야를 가진 소수의 그룹이 모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비유나 유추 등을 자유로이 사용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론이나 방법론, 굳이 번역하면 문제해결학이라고 할 수 있다. (*)

콘크리트構造物의 龜裂發生原因과 対策에 関한 研究〔完〕

吳 璇 敎—오선교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A STUDY ON THE CAUSE AND PREVENTION OF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

Oh, Sun Kyo—Oh Sun Kyo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IV. 龜裂防止對策

콘크리트 構造物에는 前述한 原因에 따라 龜裂이 發生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龜裂은 일단 發生한 것을 補修 補強하는 것도 重要하겠지만 그보다도 적극적인 對策으로 龜裂을 예상하는 어떤 部分으로 集中시키거나, 혹은 龜裂發生을 縮小시키거나 거의 發生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더욱 더 重要하다.

그러므로 龜裂補修 補強法은 V장에서 論하고, 龜裂防止對策은 다음과 같다. 단, 防止對策이란 原因에 따라 糾明되어야 하기 때문에 前 III장의 原因分析에서 자명해진 內容은 생략하고 特別한 事項 및 重要的 事項에 對하여만 論하기로 한다.

1. 이음의 設置

콘크리트 龜裂防止 對策으로는 龜裂을 어느 一定한 部分에 集中시키거나 또는 골고루 分散시키는 對策이 必要

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음의 設置하는 목적은 龜裂을 한곳에 集中시키는 方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음設置의 必要性은 溫度變化, 콘크리트의 팽창수축, 不同沈下, 적재하중의 變化 및 이동하중의 영향 등으로 콘크리트에 龜裂 또는 파손부가 생기는데, 여기에 合理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一定한 간격으로 구획을 두어 龜裂을 集中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方法으로는 팽창수축에 대응하는 膨脹줄눈(Expansion Joint)과 不同沈下 또는 施工上 두는 施工줄눈(Construction Joint) 등으로 區別하고 있으나 그 중 施工줄눈은 本內容과 상관관계가 적으므로 略하고, 必要한 경우는 伸縮줄눈에 平行하여 論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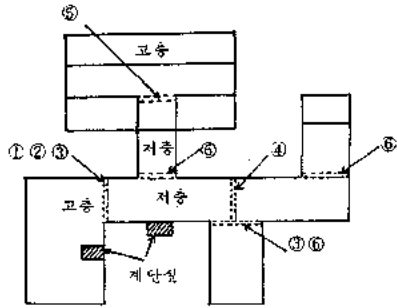
먼저 이와같은 伸縮줄눈을 두는 位置는 (그림 1)과 같다. (註1)

〈表 1〉 Expansion Joint의 간격

建 物 種 別	驅 體	이 음 간 격	備 考
無筋콘크리트	가느다란 建物	一般的으로 10m	AIB
	a) 補強이 없거나 아니면 小量의 補強을 한 板狀 슬래브한 驅體이며 太陽熱을 받는 것.	를 넘지 않는다.	p. 122
	b) 最小두께의 포장 및 매립한 응벽, 日射를 받는 매립한 驅體(支持력을 살기).	≤ 10 m	AMB § 33
	c) 日射를 받지 않는 매립한 驅體	15~20m	
鐵筋콘크리트	a) 火災 또는 폭발의 우려가 있는 建造物	≤ 30 m	DIN 1045 § 14.6 Richt Ilinien 1953, 4 DIN 1045 § 14.6
	b) 鉸架構, 剛加構 또는 판넬 (Pannel)	30~35m	
	c) 礦業地帶의 建物	50m	
	마 닻		
	a) 제자리 콘크리트 및 板으로서 一体로 結合된 기성 콘크리트板	30~50m	
	b) 板으로서 一体로 結合되지 않은 기성 콘크리트板	40~60m	
	지 붐 板		
	a) 斷熱層이 있는 경우	10~15m	
	b) 斷熱層이 없는 경우	5 ~ 6 m	
	c) 팽창, 수축이 없다는 것이 실증되어 있는 경우	>15m	
	돌림띠 (追加 Joint)	5 ~ 8 m	
	단열층을 갖고 補強 및 다듬질	3 ~ 4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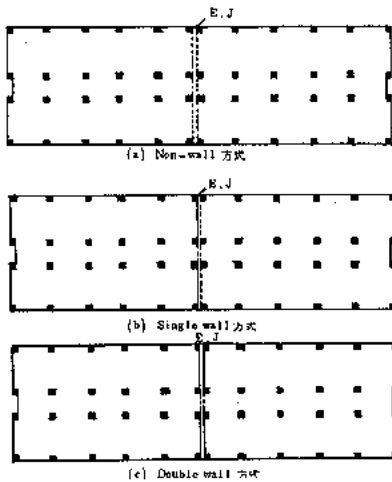
이음의 位置 中 建築인 (그림 1)의 ④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設置하는 間격에 對하여 명확하지 않으나 外國의 경우는 (表 1)과 같다. (註 2)

이와 같은 位置에 設置하는 이음의 構造는 또한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代表的인 方法은 平面的으로는 Double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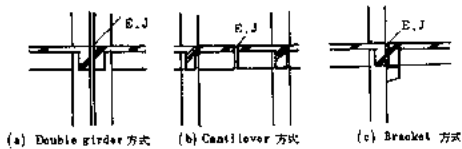


- ① 기존 建物과 增築 建物의 接합부
- ② 低層의 긴 建物이 高層 建物과의 接합부
- ③ 建物의 한쪽 끝에 달린 날개형 建物
- ④ 50~60m를 넘는 긴 建物
- ⑤ 두 高層 사이에 있는 긴 低層 建物
- ⑥ 平面이 L, T형의 交叉部分 等

〈그림 1〉 이음의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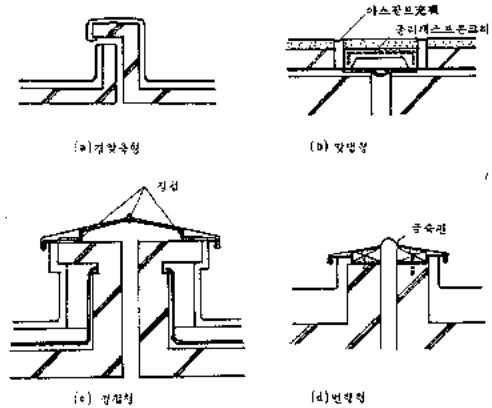
〈그림 2〉 平面形式에 따른 신축이음 (Expansion j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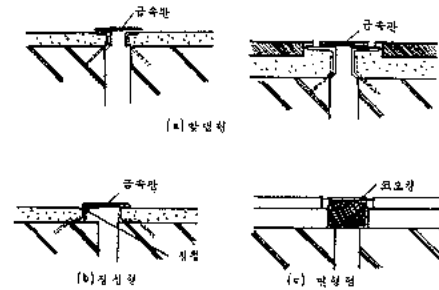
〈그림 3〉 斷面形式에 따른 신축이음 (Expansion joint)

all 방식, Single wall 방식이 있고 斷面的으로는 Double girder 방식, Cantilever 방식, Bracket 방식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그림 2) 및 (3)과 같다. (註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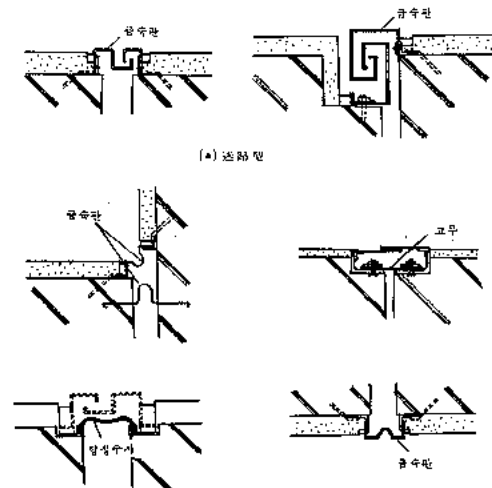
단면 각부의 신축이음 (Expansion joint)의 모양은 다음 (그림 4, 5, 6)과 같다. (註 4)



〈그림 4〉 지층의 신축이음 (Expansion joint)



〈그림 5〉 바닥의 신축이음 (Expansion joint)



〈그림 6〉 외벽의 신축이음 (Expansion joint)

註 1) 張起仁: 建築構造學, 普成文化社, 1981. 2. p. 191.

註 2) 李特求 譯(松下清夫, 鐵田光雄 著): 建物のエクステンション工法, 泰昌出版社, 1978. 8. p. 35.

註 3) 李特求 譯(松下清夫, 鐵田光雄 著): 엑스펜션조인트工法, 泰昌出版社, 1978. 8. p. 44~45.

註 4) 李特求 譯(松下清夫, 鐵田光雄 著): 建物のエクステンション, 泰昌出版社, 1978. 8. p. 64~72.

2. 環境要因의 改善

環境要因에 依한 龜裂防止策 中 溫度, 乾燥收縮 等에 關한 事項은 前 1 (이음의 設置)과 같다.

그러나 기타 要因인 凍結응해에 對한 對策은 材料自体를 수밀하게 하여 防水的으로 하든가, 其他 防水 처리를 해야 하고, 火災에 對하여는 콘크리트에 使用하는 骨材를 耐水性이 큰 안산암, 응회암 등의 骨材를 사용하도록 하며, 또한 化學的 性분에 對하여는 可能한 피해가 없는 環境으로 유도하고, 鐵筋의 腐蝕作用에 對하여는 물시멘트 비(W/C)를 작게 하여 고강도화 하고, 피복두께를 충분히 하며, 電流作用에 對하여는 構造物에 누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設計의인 고려

콘크리트 構造物의 設計時 原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構造物의 平面 및 立面形은 가급적 龜裂이 적은 形을 선택 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불가피할 시는 1 (이음의 設置)과 같은 方法으로 設計한다. 또한 構造計劃의인 原因에 對하여는 構造部材의 形態 및 크기, 개구부의 배치, 其他 構造의인 特性은 原因分析의 方法에 따라 龜裂防止토록 한다.

地耐力에 關係되는 事項은 不同沈下를 防止하는 方向으로 構造設計하고, 施工되어야 하며 構造計算의인 要因은 充分히 安全率을 고려하고, 또한 과실을 除去해야 하겠다.

또한 荷重要因에 對하여도 充分히 安全하게 構造設計에 고려하여야 함은 勿論이다.

4. 材料要因改良

材料的인 龜裂의 細部化 또는 發生을 저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의 高强度化

材料要因에서 龜裂을 發生하게 하는 原因은 대단히 많다.

材料의 品質에 關係되는 要因은 3 (材料要因)의 原因을 除去함이 必要하다. 그러나 材料의 여러 要因은 콘크리트의 高强度化와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콘크리트는 高强度化 되면 될수록 龜裂이 적은 樣相을 나타내므로 龜裂防止 對策으로 高强度化는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 材料의 品質向上 및 엄선이 필요하다. 또한 施工과정에서의 品質管理도 必要하다. (註5)

(2) 特殊材料의 利用

金屬纖維補強 콘크리트(Steel fiber concrete)로 製造하면 龜裂을 감소시킬 수 있다.

Steel fiber concrete란 콘크리트 製造時에 鋼을 金屬纖維로 만들어 骨材와 같이 混合하여 콘크리트로 一体化한 것으로 이와같은 콘크리트의 效果는 引張應力, 마모 저항, 피로현상 등에 좋은 效果가 있고 龜裂에 또한 有效하

다.

<表 2>는 Steel fiber concrete와 보통 콘크리트와 그 性能을 比較한 것이다. (註6)

<表 2> Steel fiber의 效果

性 質	보통 콘크리트에 對한 개선 효과 증가율
龜裂이 시작할 때의 휨 강도	50 %
극한 인장 파괴 계수	100 %
극한 압축 강도	15 %
극한 전단 강도	75 %
휨에 의한 피로한계 내구력	225 %

Polymer 物質을 利用하면 龜裂을 감소시킬 수 있다.

Polymer物質이란 monomer(單量體)를 附加重合 시키게 하여 얻어지는 物質로 高分子化 物質로 合成樹脂와 같은 原理를 應用한 것으로 매우 複雜하다. 이와같은 Polymer物質의 種類는 現在 美國의 경우는 PIC(Polymer Impregnated Concrete), P.C(Polymer Concrete), P.PCC(Polymer Portland Cement Concrete)의 3種類가 있는데, 이것은 經濟的 物質의인 속박 때문에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으나 龜裂防止에 效果가 월등하며 또한 수리·보수, 化學作用에 對한 抵抗, 腐蝕抵抗 等 폭넓게 利用될 수 있는 매혹적인 物質로 크게 기대되는 物質임에는 틀림없다. (註7)

콘크리트에 膨脹 Cement를 使用하면 龜裂을 감소시킬 수 있다.

콘크리트는 <그림 3>에서와 같이 硬化時 乾燥收縮으로 因하여 龜裂이 發生한다. 그러나 보오크사이트 白亞와 石膏를 混合燒成한 칼슘클링커(Ca, Al, O, SO)에 鐵滓(Slag) 및 포틀랜드클링커의 混合物을 넣어 만든 팽창성을 가진 膨脹시멘트(無收縮시멘트)를 利用하면 乾燥收縮에 依하여 發生하는 龜裂을 減小되는 부피만큼의 부피를 膨脹시킴으로 乾燥收縮에 依하여 發生하는 龜裂을 防止할 수 있다. (註7)

5. 施工의 철저

콘크리트에서 發生하는 龜裂은 施工의 不實도 큰 原因이 된다.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이어붓기, 養生方法, 養生溫度 等 前述한 原因의 除去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養生初期의 保養의 철저 및 初期過大 荷重회피는 대단히 중요한 事項으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V. 龜裂의 補修補強方法

콘크리트 構造物에 龜裂이 일단 發生하게 되면 恒時 持續한 바에 따라 原因을 규명할 必要가 있다. (III. 龜裂發生의 原因參照). 또한 이와같이 發生한 龜裂이 구조체에 근본적인 問題라면 特別한 對策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許容範圍 以內인가 以上인가를 分析하여

註5) 韓千求: 콘크리트의 高强度化에 關한 提案, 大韓建築學會誌, Vol. 25, No. 101, 1981. 8. p. 65~72.

註6) 김경수: 콘크리트內의 補強鋼材의 腐蝕에 關하여, 建設技術, No. 59, 1973. 3. p. 139.

註7) 韓千求: 콘크리트의 高度化에 關한 提案, 大韓建築學會誌, Vol. 25, No. 101, p. 66.

보수보강을 결정하게 된다.

1. 龜裂의 許容幅

콘크리트 構造物에서 龜裂을 全無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不可能한 일이다. 構造設計 側面에서는 당초 龜裂이 絶對로 發生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淚水나 鐵筋이 녹슬게 되는 정도는 龜裂의 幅이 늘어남에 따라 加速度的으로 증가되어 가지만 龜裂의 幅이 어느 값이라면 實質적인害는 없는 것으로 본다.

龜裂의 측정은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다이알 게이지, Strain gage, 초음파 측정기 등의 측정계기로 측정할 수 있다. (註8)

참고적으로 각국의 규준에 나타난 콘크리트의 龜裂許容幅은 <表 3>과 같다. (註9)

2. 보수 보강方法

콘크리트 構造物에 發生된 龜裂에 對하여는 許容幅 以上이건 以內이건 龜裂의 보수 보강이 必要하다.

보수란 龜裂의 發生으로 감소된 能力이 원상으로 복구되었을 때를 말하며 보강이란 龜裂의 發生으로 감소된 能力이 원상보다 向上되었을 때를 말한다. (註10) 이러한 龜裂의

보수, 보강方法은 龜裂의 狀況이나 보수 目的 등에 依해 工法別, 材料別, 目的別로 分類되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分 類

① 工法에 依한 分類 (註10)

○Cut工法……V-Cut工法, U-Cut工法.

○Anchor工法……鐵筋埋入工法, 鐵板注入工法, Wire mesh or Wire lath附着工法 等.

○表面 Seal工法 및 注入工法(機械的注入)……瀝青材料注入工法, Grout concrete 기타 콘크리트注入工法, 合成樹脂注入工法, R.C架構増設工法, 鐵骨架構材増設工法.

② 材料에 依한 分類 (註11)

○瀝青材料에 依한 方法……아스팔트 콤파운드, 피치 및 기타 Asphalt材料를 注入하여 主로 防水의으로 處理하는 것으로 補修에 利用.

○시멘트 및 콘크리트 材料에 依한 方法……Grout concrete, 방수Mortar, Polymer cement 等에 依한 方法으로 補修補強에 利用.

○合成樹脂에 依한 方法……에폭시수지, 페놀수지 等에 依한 方法으로 補修補強에 利用.

<表 3> 콘크리트의 許容龜裂幅

國 名	種 別	許容龜裂幅 (mm)	備 考
英 國	B. S. I. 規定 一般構造物 특히 격렬한 浸蝕性的 환경	0.3 0.004d	CP-110 d: 主鐵筋의 幅
佛 國		0.4	
獨 國	DIN 規定 鐵筋의 種類, 直徑, 鐵筋比, 荷重條件 등에서 計算式이 주어진다.		DIN 1045
스웨덴	死荷重 死荷重+活荷重/2	0.3 0.4	
美 國	ACI 規定 乾燥한 大氣 中 또는 保護層이 있는 경우 濕한 空氣 中 露出에 있을 경우 凍結防止用 藥品에 接할 경우 海水, 海水의 飛來로 인한 乾濕이 及復되는 경우 水密構造部材	0.4 0.3 0.175 0.15 0.10	ACI 318-77
歐 州 콘크리트 위 원 회	歐美 콘크리트 委員會 防護된 部材 防護되지 않는 部材 顯著히 露出된 部材 防護되지 않는 部材 顯著히 露出된 部材	0.3 0.2 0.1 0.3 0.2	CBB-FIP 지속하중 및 1年 以上 載荷된 변동 하중에 대하여 지속 하중과 변동 하중의 불리한 組合
日 本	効外와 같이 比較的 良好한 環境, 比較的 溫度가 높은 個所(河川上) 腐蝕性이 강한 條件인 곳, 海岩 또는 地覆高所와 같이 雨水의 影響을 直接 받기 쉬운 곳.	0.3 0.2 0.7	

註8) 鄭日榮, 韓千求, 鄭尚顯: 建築材料實驗, 營雪出版社, 1981. 4. p. 37~46.

註9) 鄭日榮: 龜裂發生으로 인한 構造物의 耐力低下에 關한 檢討(1), 建築士, 1981. 4. p. 18.

註10) 安甲善: 콘크리트構造物에 있어서 龜裂發生의 原因과 補修 補強方法에 關하여, 大韓建築學會誌, Vol. 24, No. 92, 1980. 2. p. 70~74.

註11) 鄭日榮: 龜裂發生으로 인한 構造物의 耐力低下에 關한 檢討(完), 建築士, 1981. 5. p. 9~17.

○其他 材料에 依한 方法……金屬材料, 塗料, 有機質材料, 鑲物質材料 等.

○複合材料 使用에 依한 方法……前述한 材料를 2個以上 複合하여 使用하는 方法.

③ 目的에 依한 分類

○補修方法……美觀 및 防水 等의 目的으로 處理하는 方法으로 主로 龜裂이 停止되었거나 重要치 않는 部分.

혹은 허용폭을 초과한 경우에 실시한다.

○補強方法……強度補強을 目的으로 하는 處理方法으로 主로 龜裂에 依한 위험성이 存在하며 許容幅을 초과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補修 補強方法 中에서 目的인 材料의 인 것은 要求하는 性質에 合當한 것을 選定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工法的인 面에서만 論한다.

(2) Cut工法

오래된 龜裂의 內部가 더럽혀 져다고 판단되는 龜裂內部에 높은 壓力으로 접착 충전시킬 物質을 注入하는 것으로 施工方法은 龜裂面을 V字 혹은 U字形으로 파내고 龜裂表面 處理를 한 後 施工量을 확인한 다음 청소를 하고 龜裂面의 Seal Pipe를 준비한 다음 養生과 동시에 파이프(Pipe) 간격을 확인한 다음 접착물질을 注入한 후 養生과 同時에 注入量을 확인한 다음 파이프 철거와 同時에 시일재(Seal)를 마무리 하는 方法이다.

(3) Anchor工法

龜裂面을 V-cut 또는 U-cut 處理할 경우에는 cut內部에 鐵筋 또는 鋼板을 埋入 接착하고 cut工法과 같은 工法으로 處理하는 경우와, 龜裂面을 cut하지 않을 때는 <그림 8>과 같이 워서를 附着하거나, 혹은 Wire mesh, Wire lath를 龜裂 양면에 Drivit gun 등에 의해 고정시키거나, 鋼板을 接착제로 부착하는 方法 등으로 고정하고 表面을 강성있는 接착제로 마감한다.

(4) 表面 Seal工法 및 注入工法(機械的인 注入)

소극적, 소규모적인 方法으로 龜裂面을 정리한 후 表面만 피복하여 施工하거나, 혹은 低粘度의 樹脂와 같은 接着材料를 高壓力으로 龜裂內에 삽입하는 方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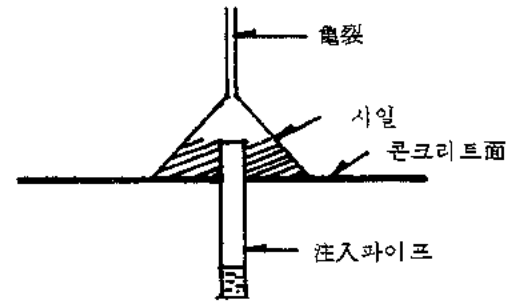
(5) 橫架構材 增設工法

龜裂 補修 補強方法 中 가장 效果的인 方法으로 응력의 측면 補強, 보의 下部龜裂 補強, 쉐넬레버의 처짐, 複強 slab의 防止 等に 利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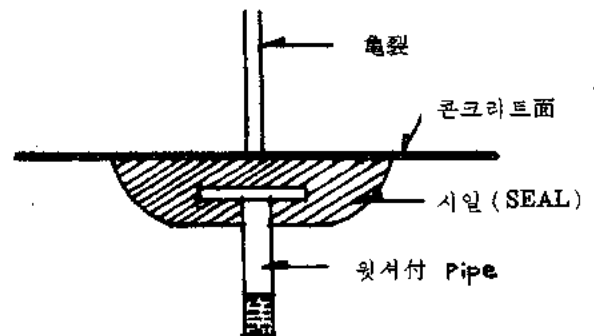
方法으로는 木材, 鋼材 또는 콘크리트部材 등의 橫架構材를 보의 部分에 5~10mm 以下에 設置하고 支柱(Support)를 木材, 鋼材, 콘크리트 部材, 혹은 벽돌과 같은 組積材 등으로 지지시킨 다음 seal材로 봉합하고 流入Pipe를 통해 接着物質을 流入시켜 固着시키는 方法이다.

VI.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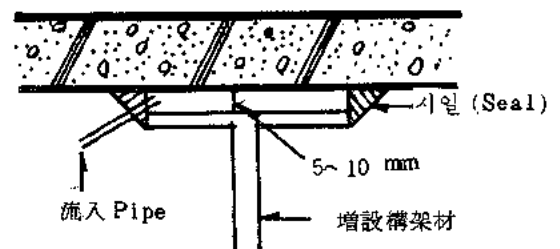
콘크리트 構造物에 發生하는 龜裂은 매우 複雜한 樣相을 가지며, 많은 原因에서 한 個 또는 여러 原因의 복합



<그림 7> V-cut注入方法



<그림 8> 워서附屬 注入方法



<그림 9> 橫架構材 增設方法

으로 發生한다. 이와 같은 龜裂의 樣相, 原因, 防止對策 및 補修 補強方法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에 發生하는 樣相은 Micro cracking 的인 것과 外形의 으로 感知할 수 있는 一定한 Pattern을 가진 龜裂樣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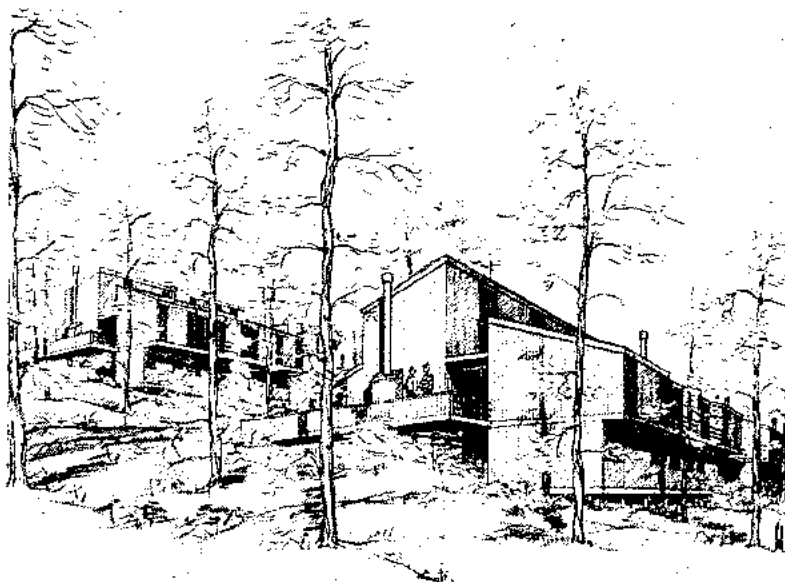
2. 龜裂 發生原因은 環境要因, 設計要因, 材料要因, 施工要因으로 分類된다.

3. 龜裂發生을 防止할 수 있는 對策으로는, 龜裂을 가능한 범위內에서 그 규모를 縮小시키는 方法으로 龜裂을 사전에 集中시키는 即, Joint를 設置하는 方法과 龜裂을 적극적으로 분산시키는 環境要因 改善과, 設計計劃的인 고려, 材料要因의 改良, 施工의 완벽을 기하는 方法이 있다.

4. 龜裂의 補修 補強方法은 龜裂의 狀況이나 目的等에 依해 工法別, 材料別, 目的別로 分類된다.

참 고 문 헌

1. Kenneth L. Saucier, "High-Strength Concrete, Past, Present, Future," Concrete International, Vol. 2, No. 6, 1980.
2. Thomas, T. C. Hsu, Floyd O. Slate, Gerald M. Sturman and George Winter, "Microcracking of plain Concrete and the Shape of the Stress-Strain Curves," ACI Journal, Vol. 60, No. 14, FEB, 1963.
3. ACI,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Reinforced Concrete (ACI 318-77)," ACI, 1977.
4. Adam Neville, "Fiber Reinforced & Cement Concrete, Concrete Construction, 1975.
5. 西忠雄 外 9 人, 建築學大系 Vol. 13 建築材料學, "彰國社, 1968, 2.
6. 李特求 譯(松下清夫, 鐵田光雄 著), 建物の Expansion Joint 工法, 1978, 8.
7. 建設省, 建築技術研究所, "失敗, 實例, 學子" I, 建築技術, No. 312, Aug. 1977; No. 315, Nov. 1977.
8. 김문한, "조적조벽체의 균열방지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ol. 16, No. 46, June, 1972.
9. 오창희, "벽돌 및 시멘트 부벽벽체의 균열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No. 131, Jan. 1980.
10. 安甲善, 韓千求,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龜裂發生의 典型的 原因과 事故 防止대책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논문집, Vol. 2, DEL, 1980.
11. 鄭日榮, "건축구조설계에 관한 小考," 대한건축학회지, No. 107, Jan. 1978; No. 108, Feb. 1978.
12. 鄭日榮, "龜裂發生으로 인한 구조물의 耐力低下에 관한 검토," 대한건축학회지, No. 145, Apr. 1981; No. 146, 1981.
13. 安甲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발생 원인과 보수보강방법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Vol. 24, No. 92, Jan. 1980.
14. 韓千求, "콘크리트의 高強度化에 관한 提案," 대한건축학회지, Vol. 25, No. 101, Aug. 1981.
15. 김형걸, "콘크리트 混和劑가 콘크리트 성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지, Vol. 17, No. 53, Aug. 1973.
16. 金敬洙, "콘크리트 内の 補強鋼材의 腐蝕에 關하여," 건설기술, No. 59, Mar. 1973.
17. 文濟吉, "콘크리트 橋의 補修 補強工法," 건설기술건설기술연구회, 1977, 4.
18. 장기인, "建築構造學," 보성문화사, 1981.
19. 정일영, 한천구, 정상진, "건축재료실험," 형설출판사, 1978.
20. 이희숙, "建築材料學," 형설출판사, 1979.
21. 김덕수, "철근콘크리트構造學," 형설출판사, 1981.
22. 洪鵬義, 吳昌熙, 金龍八, "建築材料學," 普成文化社, 1979.
23. 金光文, 박경호, "건축환경계획원론," 兄弟社, 1980.
24. 대한건축학회, "철근콘크리트 구조제산규준 동해설" 1979.
25. 具奉權, "建設材料學," 선진문화사, 1981.
26. 具奉權, 張東一, "建設材料實驗," 선진문화사, 1981.



會員建築設計作品

동원회관

吳鳳錫・申東海－주・전일건축 기술단

금성전선 기숙사

田燦珍－회운건축설계사무소

여수상공회의소

姜英－아진종합건축

영풍빌딩

朴春鳴－주・박준명건축설계사무소

신원빌딩

朴英昊－의전건축연구소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朴潤雄－정원건축연구소

DONG WON BUILDING

Oh, Bong Suk・Shin, Dong Hae－Chun il Architect & Engineering Consultant

GOLD STAR CABLE CO., LTD. DORMITORY

Jeon, Chan Jin－Hee Oon Architects & Engineers

YESWU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Kang, Young il－Architects Group A－Jin

YOUNG POONG BUILDING

Park, Choon Myung－C.M PARK & CO., LTD. Architects & Engineers

SHIN WON BUILDING

Park, Young Ho－Eui Jun Architects & Engineers

UNION CHRISTIANITY ATTENDANCE HALL

Park, Youn Woong－Jung Won Architects & Engineers

(정중) 지는 7월호 회원작품중 호텔 롯데는 (주)임이건축연구소와 상흥건축연구소의 공동 필작임.

동원회관

吳 鳳 錫 · 申 東 海 — 주 · 천일건축기술단 / 건축사

DONG WON BUILDING

Oh, Bong Suk · Shin, Dong Hae

CHUN IL Architect & Engineering Consultant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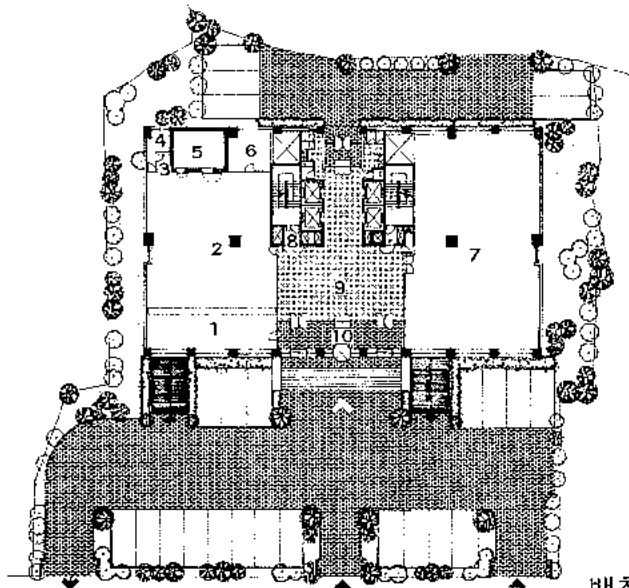
◆ 設計概要

본 건물은 구 동원에식장(종교에 인접하여 있음) 자리에 세우는 것으로서 인근의 불량주택들을 흡수하여 재개발사업의 뜻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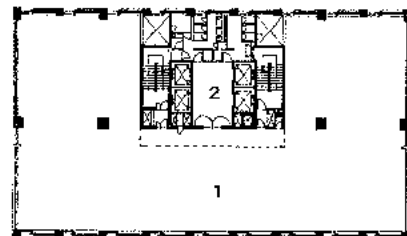
아쉬운 것은 예식장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사무소 용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서울의 名所가 과거에 영원히 묻히게 된 점이다.

평소에 생각하여 오던 외관은 변화가 있게 하였으며, 내부는 단순·명쾌하고 안락함과 넓은 공간으로 탁트인 조망을 갖는 실내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외벽은 벽면에 요철을 두어 3차원적 표현을 시도하였으며 내부공간의 처리는 창 내측에 기둥의 돌출을 자연스럽게 없애고자 기둥폭을 이용 FAN COIL UNIT BOX를 붙박이식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폭 넓은 조망을 주는 넓은 창처리와 RC 造로서는 부리인줄 알지만 12m 스패 처리를 하여 실내공간의 시각적·심리적 확장을 꾀하는 한편 코어는 컴팩트하게 구성하되 단순·명쾌성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대의 난점으로 기억되는 것은 후면 계획도로로부터의 출입동선을 원만히 처리하여 달라는 건축주의 주문이었다.



배치도 및 1층평면도



기존층평면도

- | | | | | | |
|--------------|-------------|---------------|----------|----------|----------------|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 8 - 전실 | ●전단면도 | 8 - 층 | 4 - 사무실 | 12 - 공조기실 |
| 1 - 객장 | 9 - 로비 | 1 - 전기실 | 9 - 화장실 | 5 - 복도 | 13 - ELEV. 기계실 |
| 2 - 영업부 | 10 - 방통실 | 2 - 주차장 | 10 - 기계실 | 6 - 분배실 | |
| 3 - 강의실 | | 3 - 은행 | | 7 - 창고 | |
| 4 - 숙직실 | 기준층평면도 | 4 - 사무실 | ●측단면도 | 8 - 방송실 | |
| 5 - 금고 | 1 - 사무실 | 5 - 공조기실 | 1 - 주차장 | 9 - 전실 | |
| 6 - 지점장실 | 2 - ELEV. 홀 | 6 - 계단실 | 2 - 방통실 | 10 - 계원실 | |
| 7 - 사무실 | | 7 - ELEV. 기계실 | 3 - 로비 | 11 - 전기실 |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인의동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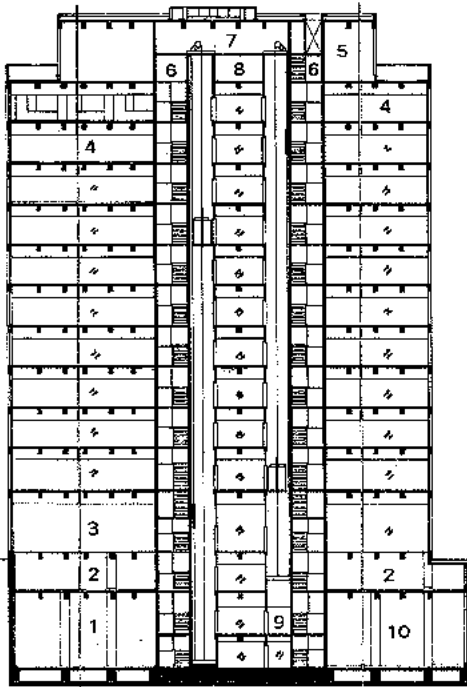
대지면적 : 2,596㎡

건축면적 : 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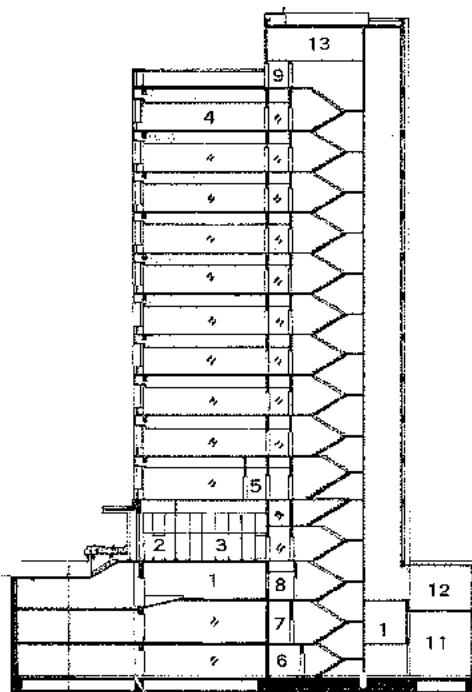
연면적 : 16,518㎡

규모 : 지하 2층 · 지상 1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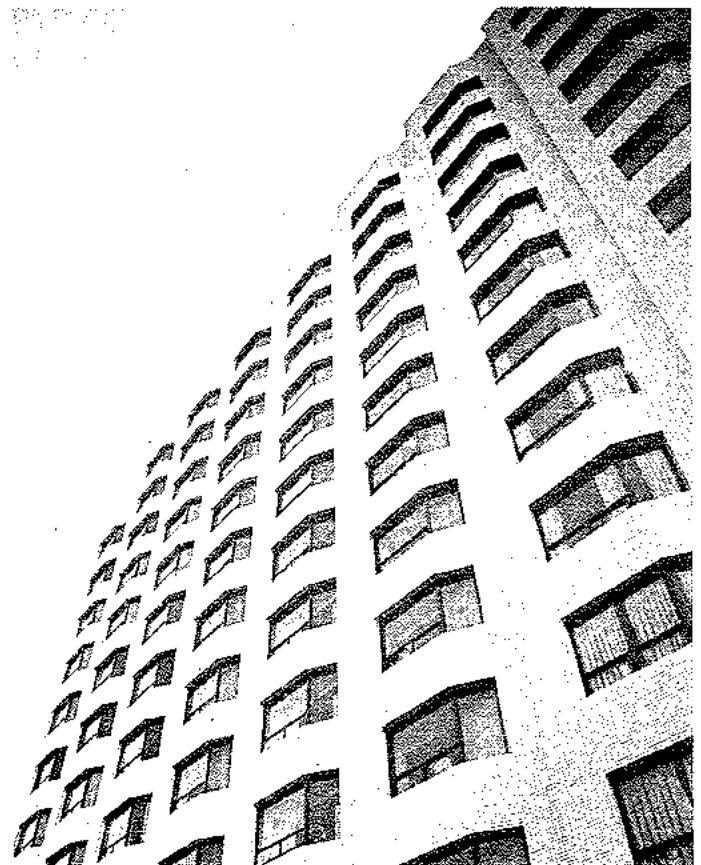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전단면도



측단면도



금성전선 기숙사

田 燦 珍 — 회운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GOLD STAR CABLE CO., LTD. DORMITORY

Jeon, Chan Jin — Hee Oon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 設計概要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려는 욕심이 기숙사라는 건축공간을 획일적이고 단순화로 만들기 쉽다. 따라서 본 기숙사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원들이 친밀감을 갖고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

용하기에 편리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 건물에는 공간 내의 공해·먼지 등으로 위생에 소홀해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중목욕탕, 각 단위(층)별 샤워시설 및 세탁장을 두었으며 복도의 동선에 변화를 주어 동선의 지

루함에서 탈피하였고 아울러 외부공간의 획일적인 입면을 피했다. 또한 유니트 프랜은 4.5×3.6m의 크기로 하여 초기에는 1실 4인용으로, 수년 후에는 1실 2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층침대 및 조립식 가구로 설계, 각 개인에게 독립성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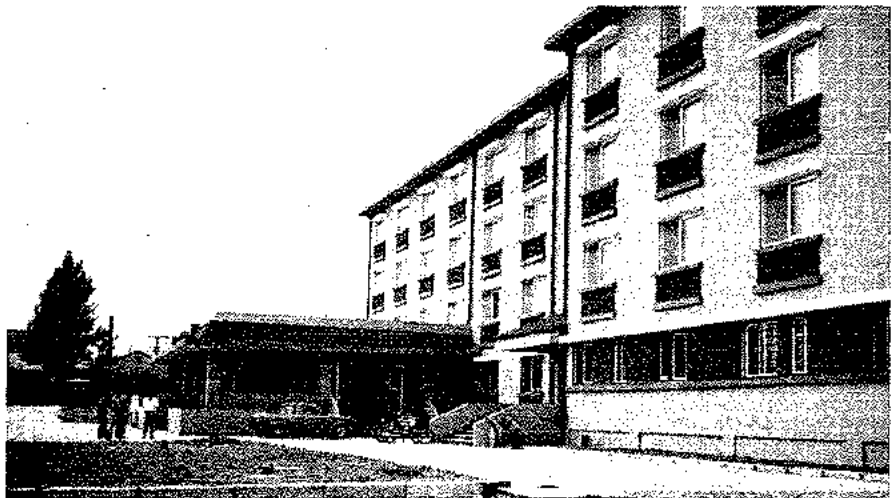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번지

대지면적 : 33,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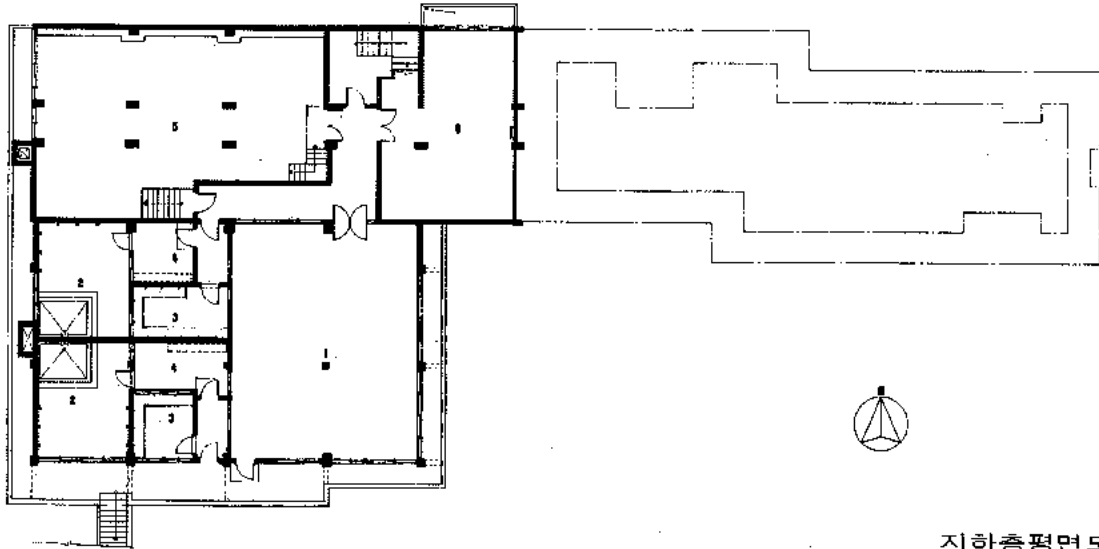
연면적 : 2,438.46㎡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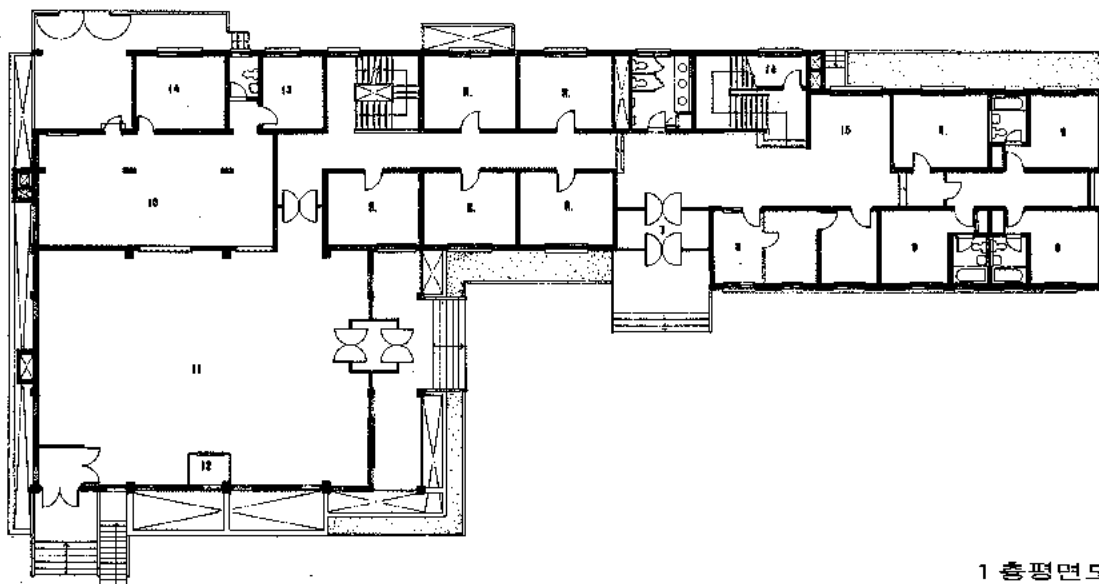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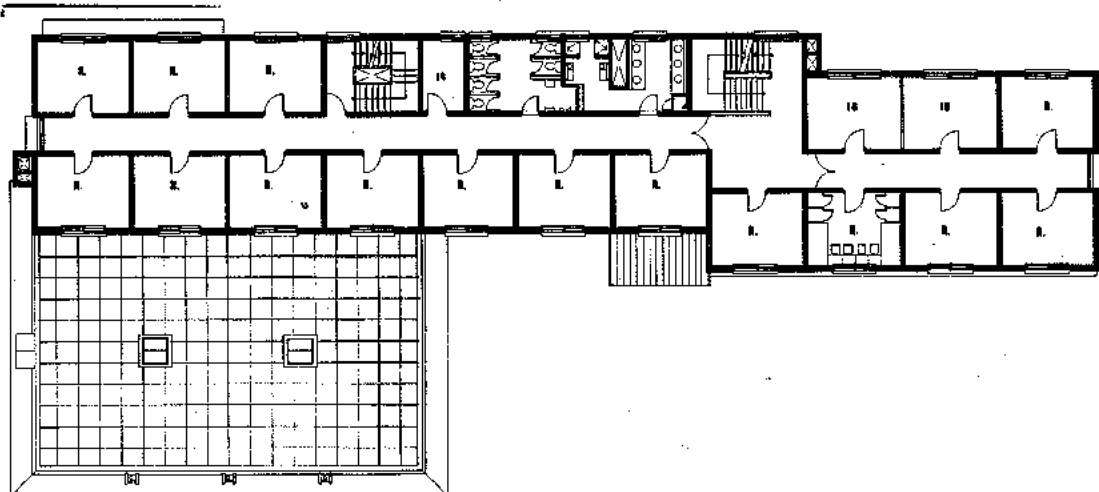
- | | | |
|---------|-----------|----------|
| 1 - 오락실 | 7 - 현관 | 13 - 집실 |
| 2 - 욕탕 | 8 - 사감사무실 | 14 - 창고 |
| 3 - 세탁실 | 9 - 방문객침실 | 15 - 라운지 |
| 4 - 탈의실 | 10 - 주방 | 16 - 휴게실 |
| 5 - 기계실 | 11 - 식당 | |
| 6 - 창고 | 12 - 매점 | |



지하층평면도



1층평면도



2, 3, 4층평면도

여수상공회의소

姜 英 — 아진종합건축 / 건축사

YESWU CHAMBER OF COMMERCE INDUSTRY

Kang, Young I — Architects Group A-Jin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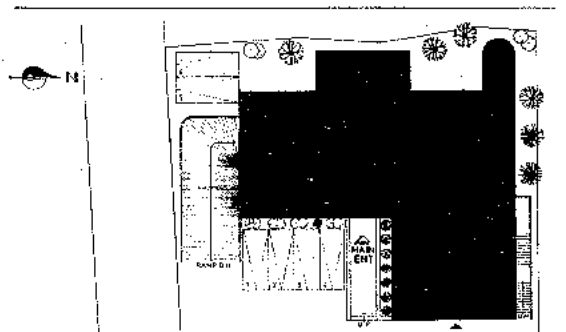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광무동

대지면적 : 99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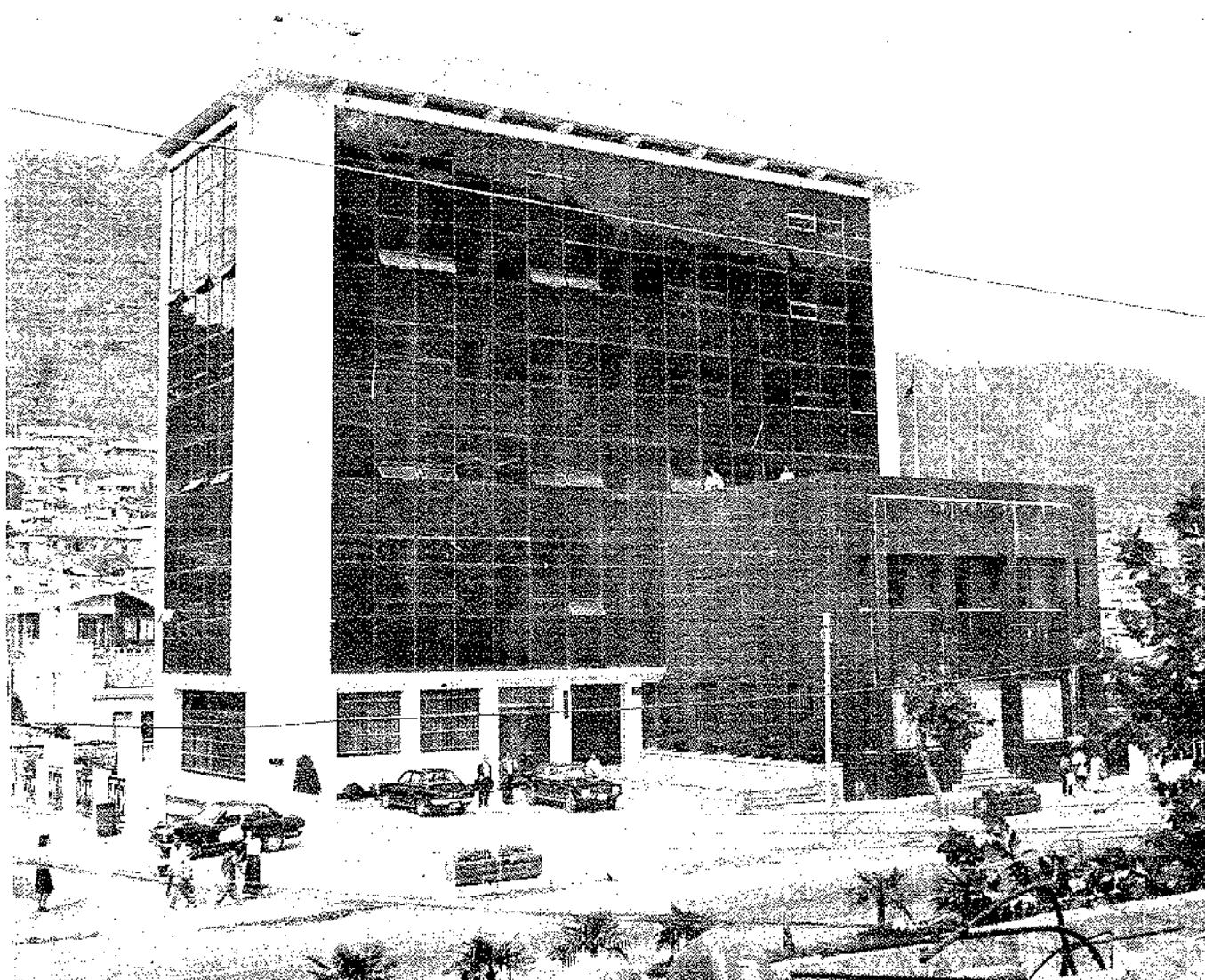
건축면적 : 520m²

연면적 : 3,258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 設計概要

본 상공회의소 건물은 작은 규모에 비해 많은 기능을 요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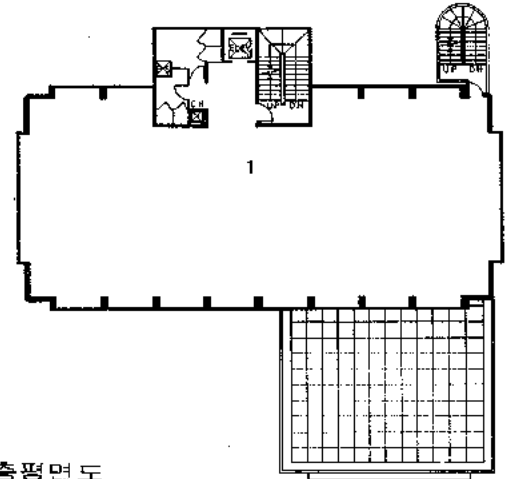
각종 문화행사, 모임, 회의, 강습회, 훈련 등 그리고 구내 판매점포가

지 겹들여야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포용해야 했다. 따라서 기준층의 사무실 공간을 12미터 장스팬으로 처리해서 장차 어떠한 쓰임에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2층의 회의실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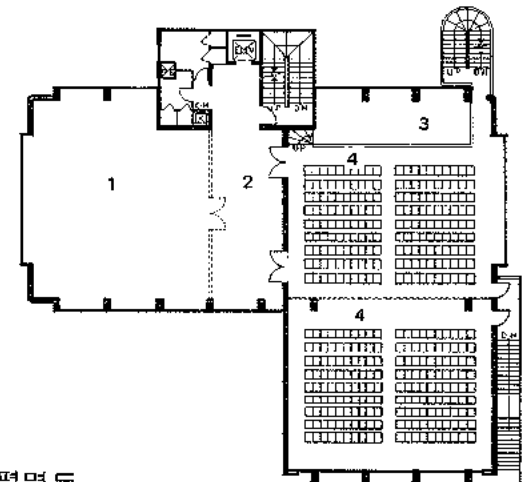
층 은행공간도 되도록 넓게 할애했다.

입면 발상은 전통보수적인 배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취성을 표현하고자 커다란 지붕과 그 아래 살아서 표정을 바꾸는 커튼월로 처리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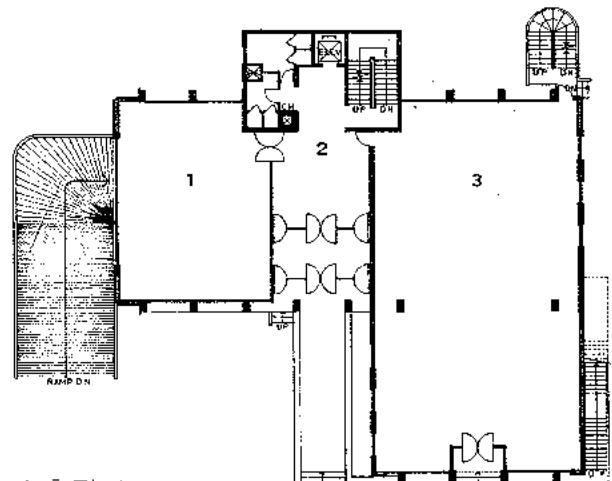
- | | | |
|----------|---------|----------|
| ● 1층평면도 | ● 2층평면도 | ● 기준층평면도 |
| 1 - 상공관 | 1 - 사무실 | 1 - 사무실 |
| 2 - 현관홀 | 2 - 홀 | |
| 3 - 상설점포 | 3 - 무대 | |
| | 4 - 집회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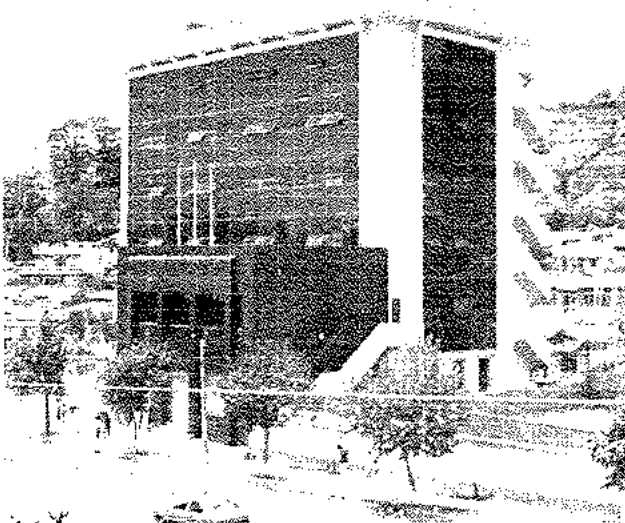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영풍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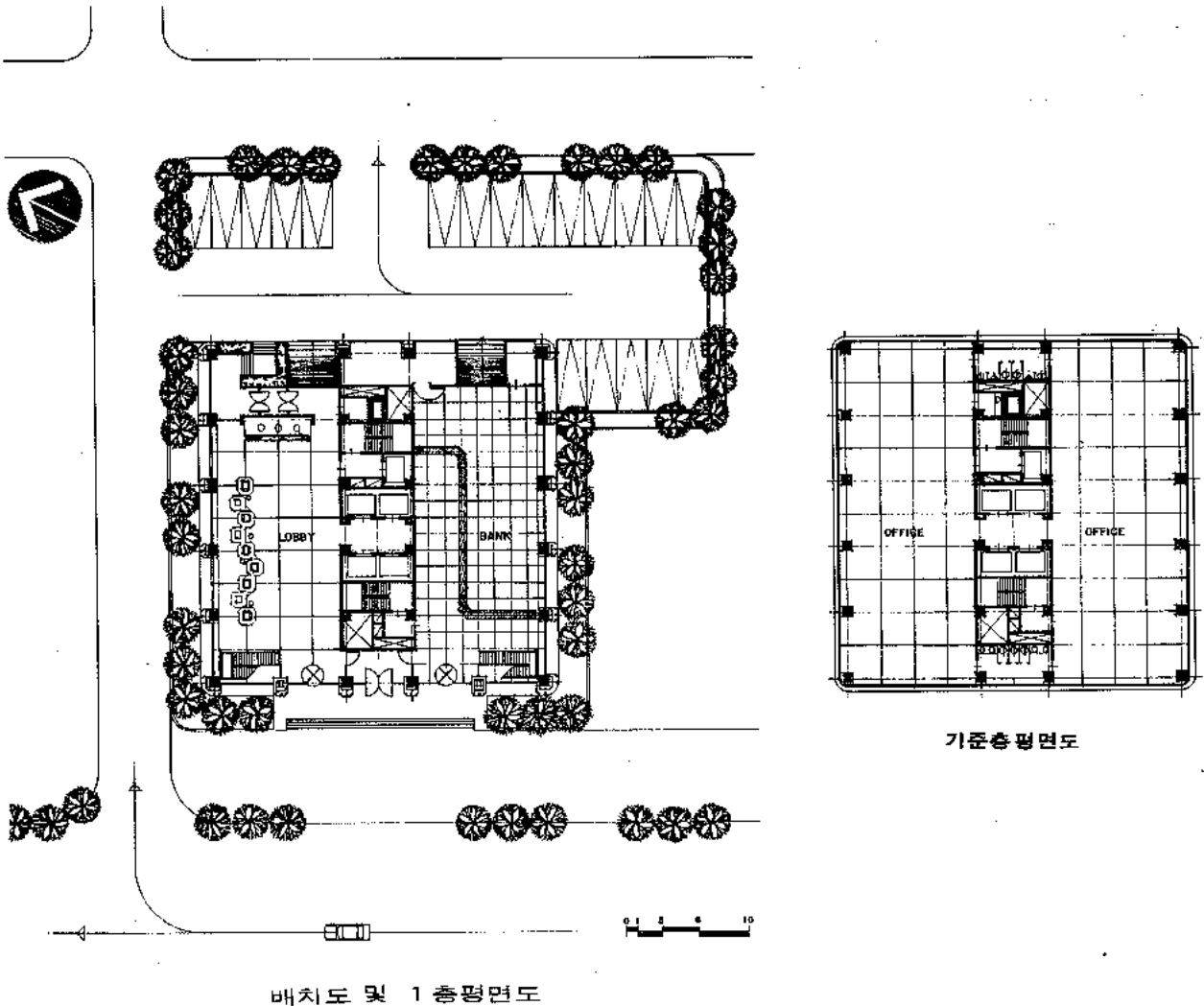
朴 春 鳴—주 · 박춘명건축 설계사무소 / 건축사

YOUNG POONG BUILDING

Park, Choon Myung—C.M.PARK & CO., LTD.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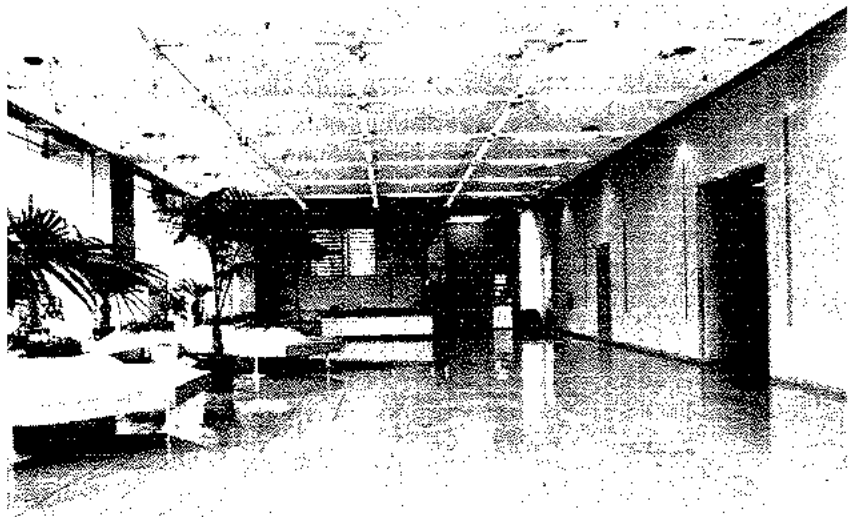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지면적 : 1,752.07㎡
 건축면적 : 793.04㎡
 연면적 : 16,694.03㎡
 규모 : 지하 3층 · 지상 16층
 구조 :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設計概要

새로운 도심으로 자리잡은 강남의 중심적 위치에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효율적인 사무공간과 그룹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유니크한 외관으로 인근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주공간과 모듈 시스템(2.7×2.7)으로 공간의 가변성을 시도하였으며 내부공간의 연속성을 위하여 띠모양의 줄창을 설치하고 모서리에는 곡면유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Horizontal Precast Concrete 板의 특수공법을 이용, 정사각형을 주재료 한 Tower 형 건물의 매스에 모서리 부분을 Round로 처리하여 부드러움을 가미시켰다.



신원빌딩

朴 英 昊 — 의전건축연구소 / 건축사

SHIN WON BUILDING

Park, young Ho — Eui Jun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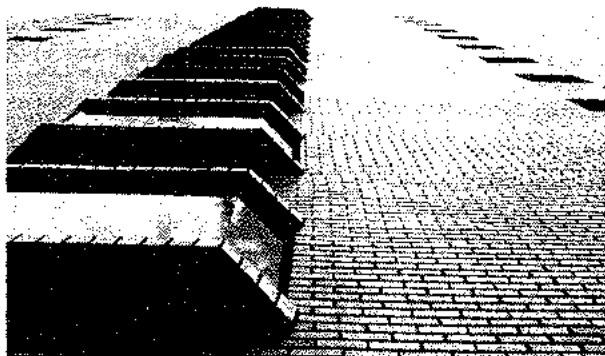
우리의 도시환경 가운데에는 양상이 다른 여러 종류의 건물이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건축적 어휘들은 불과 몇개로 한정되어 있어 선뜻 새로운 국면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사실 현대건축은 상당히 많은 건축적 어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대의 유동적이고 급진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거기에 대처할만한 새로운 어휘의 필요성도 생겨난다. 그러한 어휘를 한없이 풍부하게 하여 간다면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극히 제한하여 줄여 간다면 침묵과 정적이 가득찬 곳에 이를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좋다고 권장할만한 것은 없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어휘가 어느 것인가 하는 문제일 따름이며 더좋은 어휘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고심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어휘의 전개는 장벽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창의력의 한계점이고 다음은 관습과 관념의 저항이다.

나는 새삼스레 이러한 장벽들을 이 작품을 통해 실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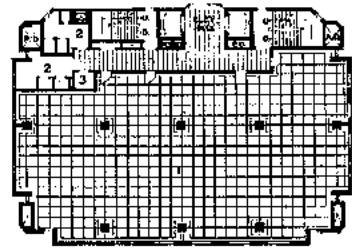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연면적 : 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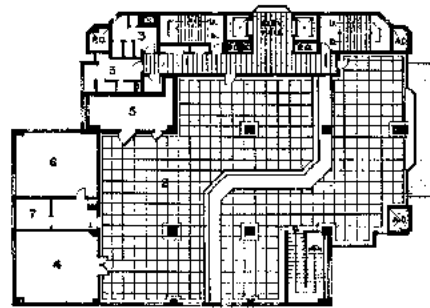
규모 : 지하 3층 · 지상 10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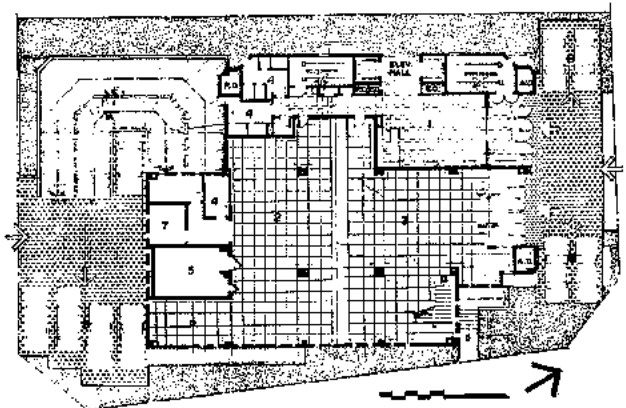
- | | | | |
|-------------|----------------|---------|-----------|
| ● 지하 1층 평면도 | ● 기준층 평면도 | 3 - 객장 | ● 2층 평면도 |
| 1 - 주차장 | 1 - 대사무실 | 4 - 화장실 | 1 - 객장 |
| 2 - 기사대기실 | 2 - 화장실 | 5 - 금고 | 2 - 영업장 |
| 3 - 레스토랑 | 3 - 탕비실 | 6 - 응접실 | 3 - 화장실 |
| 4 - 주방 | | 7 - 수작실 | 4 - 지점장실 |
| 5 - 화장실 | ●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 8 - 주차장 | 5 - 금고 |
| 6 - 방재센터 | 1 - 현관홀 | | 6 - 공기조화실 |
| 7 - 드라이에리어 | 2 - 영업장 | | 7 - 전화교환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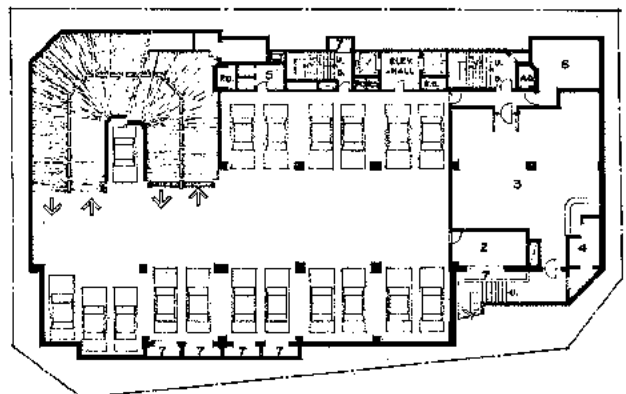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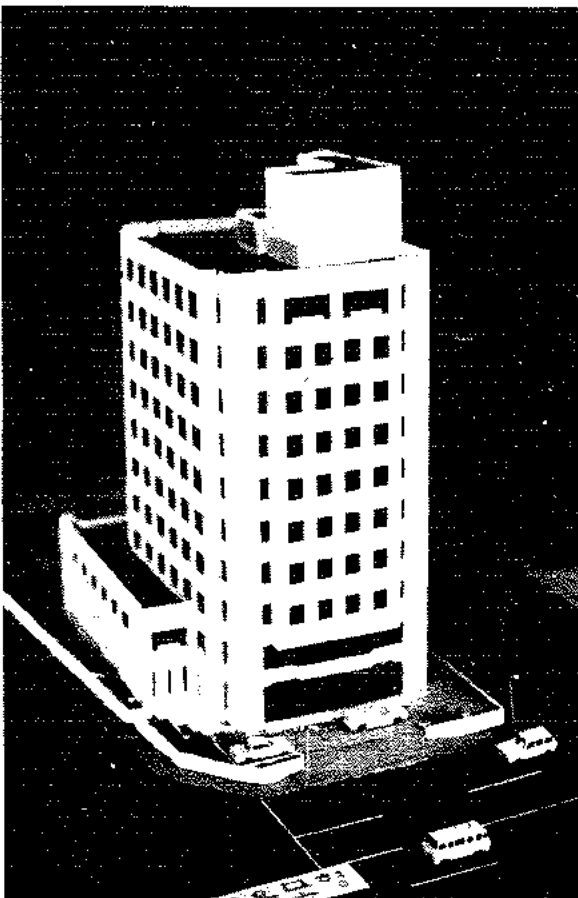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朴 潤 雄—정원건축연구소 / 건축사

UNION CHRISTIANITY ATTENDANCE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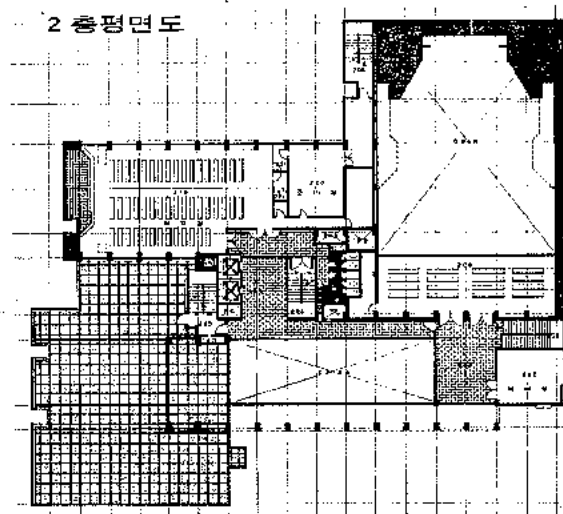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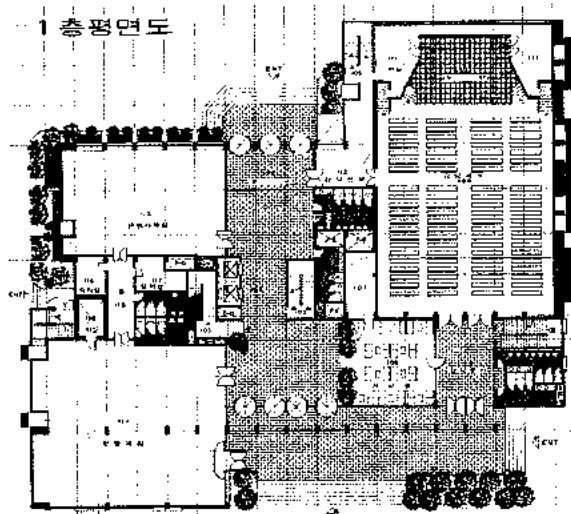
Park, Youn Woong —Jung Won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소재지 : 충남 대전시 문화동

연면적 : 10,253m²

규모 : 지하 1층 · 지상 9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계 뉴스 / 정보

新築建物 중간검사 간소화 준공검사도 선별 실시케

국무회의는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2회씩 실시해온 중간검사를 기초공사에 대한 중간검사 1회로 간소화했다.

개정령은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재료 가운데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의 사용대상 품목을 종래의 14종류에서 27종류로 늘렸으며 이의 적용대상 건축물도 종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온 것을 앞으로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개정령은 지금까지 모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건축관계법령의 모든 규제를 받도록 하던 것을 200㎡ 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로·공원·광장 등 公共用地의 확충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 안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용적율 기준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설계지역 소형주택 건립억제

서울시는 주요街路 지역단위의 도시기준을 설정하는 도시설계지역에서는 25.7명 이하의 소형아파트 건립을 억제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착수된 새중로·종로·을지로 등 도심간선도로와 잠실지역의 도시설계작업에서 도시설계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소형주택

金壽根회원 축하연 AIA 명예회원으로 추대

본회 회원인 金壽根(주·공간연구소)씨의 AIA 명예회원 추대를 축하하는 축하연이 지난달 16일 오후 6시에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건축가협회 주재로 열린 이날 축하연에는 본회 具熙會회장과 임원진을 비롯하여 건축가협회 李承雨회장 및 임원진, 건축학회 임원진, 그리고 홍중인씨 등 일반문화계 인사, 일간지·잡지사의 보도진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김 수근회원을 축하해 주었다.

카테일 파티를 곁들인 가운데 본회의 서 천석회원사회로 진행된 축하연에서 홍중인씨는 축사를 통해 <김 수근씨가 AIA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것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제 우리의 건축문화가 세계 수준으로 발돋움 했음을 확인케 해준 김 수근씨에게 거듭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수근회원은 답사를 통해 <너무 많은 축하를 받다보니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면서 <더욱 더 정진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참모습을 세계에 펼쳐 보이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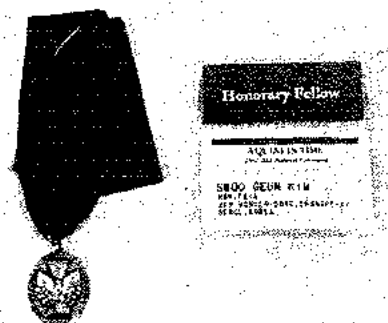
한편 김 수근회원은 AIA 명예회원증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3일 출국, 6월 6일 하오 2시에 호놀룰루의 셰라톤 와이키키 호텔에서 거행된 82년도 AIA 호놀룰루 총회(제125차)에서 AIA의 Robert M. Lawrence, FAIA 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증을 수여 받았다.

125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AIA에서는 해마다 非美国人 건축가 10명씩을 선정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있는데 개인의 건축업적을 평가하여 주기 때문에 대개 60~70세에 추대받게 된다. 현재 생존해 있는 AIA 명예회원은 100명 정도.

금년도 AIA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건축가로는 김 수근회원(만 51세)을 비롯하여 뽕피두 센터를 설계한 이탈리아의 저명한 건축가 벤조 베아노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FAIA 회장과 악수를 나누는 김수근씨 / 명예회원증(우)



건립을 억제키로 하고 그 범위를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명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환경정비 대상구역으로 설정돼 건축통제를 받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올림픽경기장 부지까지 구간이 25.7명 이하 주택신축규제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시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이를 규제하게 되는데 이처럼 도시설계지역에서 소형아파트를 규제키로 한 것은 아시안 게임, 올림픽 등을 앞두고 서울을 차임새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왕 실시되고 있는 도시설계지역에 소형아파트가 들어서 슬럼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잠실에 大規模 올림픽 公園

내년 下半期부터 착수

정부는 88올림픽마스터플랜을 확정, 83년 하반기부터 올림픽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올림픽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별도의 메인스타디움을 짓지 않고 南서울 대운동장의 메인스타디움을 활용하되 올림픽이 개최되는 蚕室 일대에 4개의 공원을 조성, 녹지로 뒤덮인 올림픽타운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당초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키로 예정했던 국립경기장부지 79만평 가운데 百濟의 옛土城이 있는 夢村 일대의 30만평을 조상의 열이 담긴 민족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민족공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49만평은 올림픽을 기념하는 萬國공원으로 조성하되 만국공원 안에는 실내수영장 등 3개의 실내경기장, 프레스센터, 선수촌, 萬國기념관, 체육대학, 체육고교 등을 건설키로 했다.

또 萬國공원 안에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대규모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城內川과 국립경기장부지가 만나는 지점에는 船着場을 설치, 배를 타고 서울도심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南서울대운동장 앞의 부지 2만평을 매입, 아시안게임을 기념하는 아시안공원을 조성하며 石村湖水 일대 7만평에 湖水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南서울대운동장과 국립경기장부지를 잇는 도로는 「올림픽街」로 명명하고 올림픽街 주변 일부부지를 사들여 도로를 확장, 그 주변에 가로수를 대량으로 심어 도로景觀을 살리기로 했다.

국립경기장에 설치될 선수촌과 경기장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지하철 2호선 蚕室역과 국립경기장부지 가운데를 질러 둔촌동으로 이어지는 연장 4km의 지하철을 새로 건설키로 했다.

蚕室 일대의 불량건물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림픽시설 건물에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선수촌 및 프레스센터는 民資를 유치, 건설하고 4개 공원부지매입, 만국기념관, 인공호수건설, 선착장설치, 가로확장 등에만 국고에서 건설비를 충당키로 했는데 정부가 8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국고지원비는 1천9백억원이다.

국고지원비 중 4백20억원이 대지매입비로 올림픽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인공호수, 만국기념관 등 시설 설치비용이다. 새로 설치하는 지하철 4km의 건설비는 올림픽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계정으로 처리키로 했다.

民資를 동원해서 짓게 될 선수촌 및 프레스센터 규모는 50명짜리 고급아파트 약 5천가구가 들어설 규모로 이곳에 88년 올림픽 때 서울로 물러올 각국선수 1만3천여명, 보도요원 6천여명 등을 수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림픽선수촌과 프레스센터를 87년에 착공, 개막 전에 완공시킬 계획인데, 선수촌을 착공하기 전에 아파트를 미리 일반에 先売, 이익금의 일부를 올림픽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9년 세제사격 선수권 대회 때도 당시의 위키힐 선수촌을 일반에 먼저 분양, 건설자금 일부를 충당했었다.

국민주택金融 대상擴大

社員用아닌 일반賃貸住宅도

건설부는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 건설이 부진하자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 자금을 주택건설업체가 일반을 대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기업이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직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가구당 최고 7백30만원까지를 지원, 올해 6천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융자신청을

받았으나 신청된 것은 목표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천8백71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지원대상을 확대, 직원용이 아니더라도 주택건설업체가 일반에게 임대해줄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직원용과 같은 조건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혜택을 주기로 하고 신청기간도 무기한 연기, 올해 목표량이 달성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토록 했다.

지원되는 자금은 일반국민주택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연리 1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국민주택채권 및 지하철공채매입도 면제된다.

아파트 12층이하로 규제

消防 범위 11층이하

서울시내에서는 앞으로 13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축법과 시조례에 따라 전폐율과 용적율만 규제, 최고 15층까지 허용해오던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앞으로는 12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가 13층 이상일 때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호스가 뻗칠수 있는 범위가 11층높이 정도 밖에 안돼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12층 이상을 초과하면 주민들이 오르내리기도 불편한 사정 등을 고려, 이같은 방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부터 입지 및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업체에 대해 12층을 초과하는 경우는 층수를 낮추도록 중용키로 했다.

이에대해 대부분의 아파트업자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고층아파트 층수제한은 그러지 않아도 택지가 모자라는 형편에 택지난을 가중시키고 아파트 건축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따른 보완책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大型건물에 美觀조성 권장

서울시 1%시스템 적용

서울시는 도시건물의 예술적 미관을 가꾸기 위해 건물 총공사비의 1%를 미관공사비로 투자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1%시스템으로 일컫는 미관공사투자는 앞으로 신축되는 대형건물에 대해 조각 등 예술작품을 건물외관에 설치해서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立地, 건축심의 때부터 적극권장키로 했다. 이 1%시스템은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도입, 도시미관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맞는 뚜렷한 법적규정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취지의 건축법 조항을 원용,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聯立주택 3층서 4層으로 建設部에 關係法 개정建議

서울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용적율을 100%에서 120%로 각각 확대키로 하고 이에 따른 관계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에 의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규모의 택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소규모 택지를 활용한 연립주택의 신축활동을 촉진키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되고 있는 연립주택의 층수 및 용적율을 완화키로 하고 이에따른 관계법 개정을 건설부에 요청했다는 것.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개념 중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으로 4층 이상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아파트가 대부분 5층 이상으로 건립되고 있어 사실상 4층 규모의 아파트는 없는 실정인데 반해 연립주택을 3층까지로 규제함으로써 부족한 택지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한편 4층규모의 연립이 건립될 경우 한 가구가 2개층의 사용이 가능,

아파트와 같은 평면설계뿐이던 연립주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게되며 따라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 공동주택의 면모를 일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상설시장 등 시설기준마련

정부는 유통구조 근대화를 위해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을 새로 정하고 販賣社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시장법시행령개정안을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설시장을 業態別로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大型店(슈퍼마켓 등) 등으로 분류 △도매시장은 건물의 연면적이 5천㎡ 이상 △일반 소매시장은 1천500㎡ 이상(서울 이외의 지역은 700㎡ 이상) △백화점은 5천㎡ 이상(서울 이외의 지역은 3천500㎡ 이상) △쇼핑센터는 1만㎡ 이상(서울 이외의 5천㎡ 이상) △대형점은 1천500㎡ 이상(서울 이외 700㎡ 이상)의 건물면적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 이들 상설시장은 모두 매장면적의 건물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전기·급수시설 △소비자상담실·휴게소·자유제량대·공동전화 등 소비자보호시설 △점포기본시설 △수세식화장실·오물수거장 등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주기적으로 장이 서는 정기 시장은 매지가 1천㎡ 이상(계절시장은 350㎡ 이상)이어야 하며 급수시설·배수시설·위생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장법인의 건설화와 시장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설시장 개설법인은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가 상설시장 개설허가 건물면적의 30/100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시장은 새로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販賣社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모든 시장은 3년 이내에 이 시

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유보조치를 두고 있다.

다만 시·도支社는 시장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지사가 3년 이내에 시장의 실태조사를 실시·지원·기타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陽性化 無許 건물

과태료 기준 확정

양성화대상에 포함된 무허가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산정기준이 지난달 21일 확정, 발표됐다.

건설부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 및 세 부지침에 따르면 토지등급을 기준한 대지가격에 ▲건물의 용도 ▲규모(연면적) ▲주요구조 ▲지붕구조 ▲건물소재지 ▲용도지역 등에 따른 지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 부과하게 된다.

실례를 들면 연면적 1백20평방m(37평)인 무허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85평방m를 뺀 35평방m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 건물 규모, 형태 등에 따른 지수에 따라 산출된 1백7만6천4백93원을 물어야 한다.

道路占用허가 등

별도 절차不要

서울시는 건축허가 및 준공시 별도의 절차를 밟도록 돼있던 도로점용허가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나 구내전화선공사, 준공검사 등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만 받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지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설치신고·구내전화선 준공검사 등은 건축물 자체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로 가능할 수 있는데도 관계법규의 규정이나 관할기관이 달라 2중처리가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때문에 이를 일원화시키고 처리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전국 都市 땅값 安定勢

전년대비 4.9% 상승

전국도시의 땅값이 13년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1일 현재 전국 도시의 대지(貸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4.9%상승에 그쳐, 같은 기간 중의 도매물가 상승률 9.75%보다 크게 낮았으며, 지난해 토지가격 평균상승률

9.6%에 비해서도 둔화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의 땅값은 평균 3.3%상승에 머물러 대도시의 저가안정세가 부드러졌다.

한국감정원이 은행대출담보 감정용 등을 목적으로 전국도시지역을 상대로 실시한 「토지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50개시의 종합지가는 4.7%가 오른데인 읍·면지역의

땅값은 5.1% 상승, 매년 시(市)급지역의 대지값이 읍·면지역보다 더 높게 올라가던 추세가 뒤집혀졌다.

땅값상승률을 용도별로 보면 ▲市級지역은 상업지대가 7.7%, 주택지대가 3.7%, 공장지대가 4.6% 각각 올랐고 ▲읍·면지역은 상업지대가 8.5%, 주택지대가 3.9%, 공장지대가 7.8%가 각각 상승, 상업, 공장, 주거지역의 순으로 땅값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경기도 화성군의 아산만 일대는 임해공단 설치가 광양만에 결정되고 이에따라 부동산투기가 사라짐에 따라 땅값이 평균 15.8% 하락했다.

전국 6대도시의 상업지대 가운데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땅」으로 알려진 서울명동1,2가의 땅값은 평당 2천2백만원으로 1년 사이에 5백만원(29.4%)이나 뛰었고 부산중구창선동2가는 평당 1천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2백만원(15.4%), 대구동성로1,2가는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백만원(11.1%)이 각각 올랐다. 그러나 인천과 광주의 최고 상업지대의 땅값은 지난해 수준인 평당 4백만원과 9백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부산, 대구의 상업지대 최고지가 강세를 보인 것은 불황기에 인구과밀지역의 상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주택지대에서는 서울 신문로2가가 평당 1백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20%올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지역으로 꼽혔고, 대구 삼덕동1가와 광주 대외동은 각각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4.3%, 대전 은행동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6.7% 상승했다.

그러나 부산에서 가장비싼 주거지역인 보수동과 인천의 경동은 각각 지난해와 같은 85만원과 50만원선에 머물렀다.

한편 6대도시의 공장지대는 부산의 가장 비싼 영도구 봉래동1가가 평당 6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서울 영등포동3가와 대구 원대동2가가 각각 40만원과 30만원선에 변동이 없었다.

◇ 6 대도시 주택지대 최고지가

(단위:천원)

市	別	81.4.1	82.4.1	상승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000	1,200	20.0
부산직할시	중구 보수동 1가	850	850	0.0
대구직할시	중구 삼덕동 1가	700	800	14.3
인천직할시	중구 경동	500	500	0.0
광주시	동구 대외동	700	800	14.3
대전시	중구 은행동	600	700	16.7

◇ 6 대도시 공장지대 최고지가

(단위:천원)

市	別	81.4.1	82.4.1	상승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3가	400	400	0.0
부산직할시	영도구 봉래동 1가	600	600	0.0
대구직할시	서구 원대동 2가	300	300	0.0
인천직할시	북구 산곡동	150	150	0.0
광주시	광주공단(광천)	140	160	14.3
대전시	동구 대화동	80	80	0.0

◇ 6 대도시 상업지대 최고지가

(단위:천원)

市	別	81.4.1	82.4.1	상승률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2가	17,000	22,000	29.4
부산직할시	중구 창선동 2가	13,000	15,000	15.4
대구직할시	중구 동성로 1가, 2가	9,000	10,000	11.1
인천직할시	중구 인현동	4,000	4,000	0.0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2가, 3가	9,000	9,000	0.0
대전시	동구 중동	8,000	8,000	0.0

◇ 6 대도시 지역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지역별	용도지역별 상업지대 (%)	주택지대 (%)	공장지대 (%)	총합 (%)
서울특별시	10.1	2.7	9.2	6.4
부산직할시	4.2	1.1	1.6	2.6
대구직할시	1.6	1.3	3.3	1.6
인천직할시	2.1	0.5	1.0	1.1
광주시	6.6	3.4	18.1	4.9
대전시	6.3	2.7	0.0	4.1
총 평균	6.8	2.1	4.6	3.3

올림픽 아파트 5천호 건립

종합운동장 부근에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오는 88년 각국에서 내한하는 선수 1만 3천여명, 보도요원 6천여명 등 모두 2만여명의 선수·임원·보도요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50평형 고급아파트 약 5천호 규모의 올림픽 선수촌을 잡실 국립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건립키로 했다.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선수촌 건설 계획에 의하면 당초 선수촌은 종합운동장 인접지에 7만9천4백평을 확보, 30~40평형(12~15층 규모)의 아파트로 건설하고 기차촌은 국립종합경기장 옆 한전신속부지 5만3천3백평에 40~50평형(12층 규모)의 아파트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부지면적을 이보다 배 이상인 24만3천평으로 늘려잡고 坪型도 50평형 규모의 고급으로 바꿔 모두 5천호를 짓기로 결정, 이를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붙였다.

조직위원회는 선수촌을 87년 봄에 착공, 88년 올림픽개막 직전에 완공시킬 계획인데 이에 앞서 자격선수권 대회 당시의 위키힐 선수촌처럼 일반에게 먼저 분양하여 건설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건설업 不況속 成長

전년비해 40% 늘어

작년말현재 국내건설업체수는 모두 5천 5백 1개로 이들이 작년 한해동안 주분받은 국내외건설공사는 既成高가준 11조 2천 7백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이 지난 3월 실시한 81년도 건설업 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80년에 비해 업체수는 11.7%, 공사액은 40.8%가 늘어 불황 속에서 호경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업체가 각종 공사를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4조7천 7백90억원으로 80년에 비해 46.5%가 늘었으며 종업원수는 64만7천9백15명으로 6.6%, 건설장비는 2만6천57대로 41.8%가 각각 늘었다.

공사종류별로 보면 국내에서 건축

이 부진한데 비해 토목공사가 80년에 비해 41.4%나 크게 늘었고 해외공사에서는 토목이 42.1% 증가한데 반해 건축공사가 69.1%나 크게 늘었다.

전체 건설업체 중 건설부장관 면허업체인 종합건설업체는 4백99개로 전체의 9.1%에 불과했으나 이들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액은 전체의 91%에 해당돼 건설업체의 대형화추세가 두드러졌으며 이들업체의 80년 對比공사액 증가율도 42.3%로 중소 건설업체의 증가율 27%를 크게 웃돌았다.

60개 재개발지역 해제

8월 추가해제 추진

서울시는 시내재개발예정지구 중 鍾路구東崇동 산275주변 등 60개지구를 재개발대상에서 전면 해제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은 재개발예정지구로 선정된 68개지구 중 이들 60개지구의 건물과 도로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인데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재개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는 앞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무허·위법건축물도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예정됐던 68개지구 중 城東구玉水동 2주변 등 8개지구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의사를 보이고 있어 계속 재개발예정지구로 남게됐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중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1백79개지역 중 75개지구 89만평을 해제키로 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이들 지구도 8월말까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 개축한 것은 중 개축부분만, 공부내용과 다른 건물은 그 부분만 불법건축면적에 삽입된다.

서울시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될 대상건축물은 무허가 7만 4천 7백20동, 위법건물 1만 7천40동 등 9만1천7백67동으로 이중 파타로가 면제되는 85평방m이하의 전체의 84.3%

인 7만7천3백93동으로 추산되고 있다.

평균 住居面積 확대추세

선진국에는 아직 못미쳐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先進外國에 비해 아직 크게 떨어지고 있다.

건설부의 조사에 의하면 住居水準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80년 현재 우리나라는 2.8평인데 비해 미국은 12.5평, 서독은 12.4평, 영국은 9.8평에 각각 달하고 있으며 우리와 국토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는 일본이 7.8평, 대만이 4.2평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같은 주거면적도 지난 70년의 1.98평, 75년의 2.4평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80년 현재의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市部가 2.6평, 郡部가 2.9평으로 도시지역이 다소 떨어져지고 있으나 서울은 2.9평으로 전국의 평균 수준을 넘고 있다.

자투리땅 건축허가 완화 방침

건폐율도 20%로 높여

자투리땅의 건축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건폐율도 높아져 자투리땅의 활용이 용이해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고 남은 땅은 법정기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조례를 개정, 앞으로는 25%만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투리땅에 대한 건폐율도 높여 현재 법정건폐율의 10%만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20%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종미관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 지역내의 건축가능한 최소면적인 2백평의 3분의1인 67평이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50평만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2,3종 미관지구는 25평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해진다.



連載 [3]

잃어버린 古代都市

Ⅲ. 都市에 의탁한 古代人의 想像力이란 무엇일까?

都市에는 다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본다면 質이 좋은 大量의 물자가 모여 들고 있다. 그리하여 교환이 이루어지며 즉 市場이 형성된다. 물자뿐만 아니라 情報나 知識이 모이게 된다. 그것은 바로 生産에 도움이 되거나 民族이나 국가를 조직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政治의 權力이 도시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權力자는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기스칸은 많은 도시를 정복했지만 도시는 만들지 않았다. 알렉산더大王은 북아프리카 제일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그의 이름을 붙였으나 그 자신은 당대에 도시를 구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음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바빌론의 도시나 이스탄불은 당대의 왕이나 권력자에 의해서 完成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시란 물론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의 중심으로서 작용하고 있긴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것이 도시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메카나 중세 일본의 奈良와 같은 혹은 한국의 신라와 같은 종교적인 聖地로서 도시가 된 도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경제만이 아닐 경우 도시란 말하자면 인간집단의 생물적 존재 기능의 集積만도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도시란 인간의 집단이 다만 大量으로 모이는 곳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部分이나 기능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有機體로서의 生物과 같이 정돈되고 조화된 때에 비로소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部分의 모여짜기에서 통일체에의 질적인 전환을 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존재해 있는 도시의 부분을 아무리 모여짜기 해 보아도 통일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一

로 느끼는 것은 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想像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想像이라고 해도 空想만이 아니며 인간의 집단이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혹은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意圖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더우기 文化와 文明을, 다만 생물적인 편리함만이 아닌 편리함이나 풍부함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동물과 같이 制限된 욕망으로부터 문화는 태어날 수가 없다.

만일 인간의 文化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충족이라면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단편적이 아닌 인간 전체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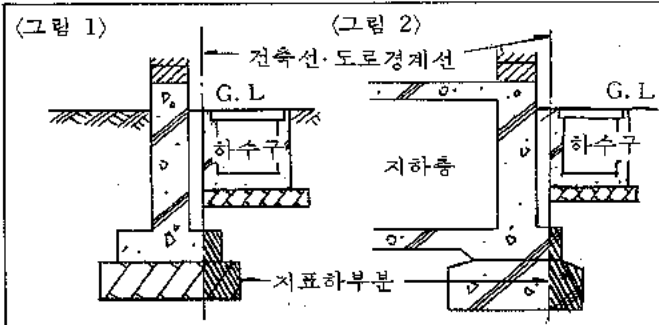
그렇게 생각할 때 도시를 도시답게 꾸며 가고 있는 것은 인간의 文化的 想像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건축관계법 / 건축행정〉

여기에 인용된 건축법 시행령은
개정(82. 8. 7) 이전의 조항임

- **㉡** 건축법 제31조제 1항 단서의 규정으로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그림중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전북·건축주)



㉡ 귀 질의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3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이 동일하므로 같은법 제31조제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지표하의 부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림과 같은 경우 건축선이 곧 도로의 경계선이므로 같은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표하의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자의 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 **㉢** 1. 국토이용 관리법 제9조제 1항 제2호에 의하면 산림보존 지구에는 복재의 생산·채종 및 재해나 공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산림지구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 명시되어 있고,
2. 같은법 제1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지역내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있으나 산림보존 지구내에서의 건축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3. 산림보존 지구내에서 산림법의 적용을 받아 산림훼손 허가를 득한 부지에는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 산림훼손 목적에 합당토록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되며 토지 조성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성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고 사료 되는바 귀절은? (경남·동인건축)

㉢ 1. 귀 질의를 검토한바 국토이용 관리법 제9조제 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전지구는 같은법

제15조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바

2. 산림보전 지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산림법 제16조 내지 제20조에 명시되어 있고, 보전임지에 대한 전용제한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3. 산림훼손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0조의 허가제한 사항과 제91조 제1항 규정에 적합한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4. 질의의 산림보전지구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와는 그 개념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 **㉣** 본 회외소(안양상공회의소) 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업무에 참고코자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공사의 기성고는 현장 감독자와 공사 감리자 중 누가 사정하며 그 근거는?

나. 시공중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공사비 증감 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현실공사가격 중 어느 것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근거는?

다. 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시 당해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 직원 이외에 다른 기술자를 지정해도 되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는? (안양상공회의소)

㉣ 1. 질의의 “가”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사전 감사관의 임명에 의하여 기성고를 사정할 수 있음.

2. 질의의 “나”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상의 단가(도급 내역서)로 함.

3. 질의의 “다”에 대하여는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 4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의 질차이행 대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설계자 이외에 임의의 공사 감리자(건축사이어야 함)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협회·기술부)

- **㉤** 주차장법 제19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 조례에는 주차 대수에 따른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물 옥외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옥외 주차장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대구시지부)

㉤ 필로티(pilotis)라 함은 기초기둥을 지상 2~3미터까지 노출시키고 그 위에 세운 건물의 하부부분으로서 건물 사용 인구의 자유 통행 및 건물내 광장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 1항제 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으로는 산림되지 않을뿐 옥외 공간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 **㉥**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하고 있는 증지에 대하여 내부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이 각각 상이하야 다음 내용을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가. 내무부장관의 회시문(경북법무 811—997 1980.10.20)
나. 전설부장관의 회시문(전설부건축 125—1979. 12.10)

(대구시지부)

㉔ 수수료의 징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업무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인바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법에 의거 허가 신청자가 반드시 수입증지로서 납부토록 규제되어 있으며 허가·불허가(취하·반려포함)와는 관계없이 징수하는 것입니다.

(건설부·건축과)

● ㉕ 1. 면급(面級)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도정업)으로서 공장이 오래되어 개축코자 하던 차 농수산부의 정부관리 양곡도정공장 통합 및 대형화 지침으로 시설을 개축코자 할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142조 별표 2에 의하면 주거지역내 는 공해공장을 건축할 수 없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 허가를 받는 공장은 공해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3. 도정공장은 30HP 이상일 때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본 공장은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현재 동력은 정미시설: 65HP, 정맥시설: 130HP, 압맥시설: 13HP]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현 위치에서 개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남·건축주)

㉕ 1. 도정공장으로서 30HP 이상의 동력을 사용할 경우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따라서 같은법 제15조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2. 질의의 기존 도정공장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 9 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 안에서는 증축·개축등 모든 건축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 ㉕ 당 합동건축연구조에서는 지상 5 층의 건물을 설계·감리코자 설계비의 30% 금액으로 감리 계약을 체결한바

1.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1조제 3 항에는 상주 감리시 상주 비용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별도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2. 건축사법 시행령 제 2 조 별표 1 에서 건축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건축물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상주 감리키로 되어 있는바

3. 감리자는 설계비의 30% 해당금액으로 상주 감리를 해야 하는지 또는 상주 감리비를 별도 지급받고 상주 감리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서울·합동건축)

㉕ 1. 공사의 규모 또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상주감리 보조원을 둘 수 있는바 이 경우 동 기준 제20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거 상주감리 보조원의 인건비와 이에 부수되는 현장 사무비 및 기타 경비를 건축주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2. 이를 거부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 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인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하시기 바랍니다.

(협회·기술부)

● ㉕ 기본설계 및 계획설계를 구분하여 설계를 의뢰 받았을 경우, 설계비 적용을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5조에 의하면 공사비 총액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비 총액이 확정된 경우 계획 및 기본설계비 적용을 실시설계 완료시 공사비 총액을 적용, 설계비를 요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여부?

(서울시지부)

㉕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한 공사비 총액은 실시설계가 완료된후 확정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본 및 계획설계의 구분 계약시 설계비 확정여부는 총 공사비에 따른 건축주와 건축사간의 가상 공사비를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출할 수 있으며 차후 공사비가 확정됨에 따라 설계비 증감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기술부)

● ㉕ 일단의 공장부지내 여러동의 기존건물이 있고 그중 한동의 건물(A동)을 A건축사가 설계 시공중에 있으며(A동은 변경없음), 다시 별도의 건물(B동)을 B건축사가 설계코자 하는바,

가. B동의 허가신청을 설계변경으로 신청하고 A동의 공사감리도 승계받아 최종설계 변경자인 B가 A동에 대한 최종 행정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인지,

나. B동의 증축은 설계변경 허가보다 증축허가로 처리하고 동별로 설계감리자가 상이하므로 동별로 A,B설계자가 각각 처리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경남지부)

㉕ 일단의 대지내에 수개동의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한동의 건물이라도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도의 건물을 축조할 경우 이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B동에 대한 설계자는 기시공되고 있는 A동에 대한 설계자의 동의를 받아 일건 서류로서 공사감리를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회·기술부)

● ㉕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뜻하고 있는바,

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 건축허가후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약간의 증축(연탄창고·변소 등)을 한 건축물의 경우와

나. 역시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의 실제 연면적과 가옥대장 또는 등기부상의 연면적이 서로 다른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협회·기술부)

㉕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정상적 건축허가후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약간의 증축(연탄창고, 변소등)을 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한 건축물이라면 무단증축한 부분을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의 실제 연면적과 가옥대장 또는 등기부상의 연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상이한 부분을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부·기술지도과)

□ 건축법

- **㉡** 일단의 대지가 과반이상의 주거지역과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적용은? (시민전화)
답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는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 병실의 환기 면적은 얼마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까? (시민전화)
답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실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 도로에 1.5m 폭의 사도만 접한 경우 건축이 가능한지요? (시민내방)
답 대지는 도로와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 **㉤**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철골 beam 제작 공장도 공장용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며 공장용도에 준해야 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 **㉡** 공원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회원전화)
답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계획 또는 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 **㉢** 주거 전용 지역에서 주택의 최고 높이가 지붕의 천장을 포함하여 11m 가량되면 건축이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답 건축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지붕의 물매가 4/10 이상이면 높이 12m 이하까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층은 꼭 설치해야 하나요? (시민전화)
답 건축법상 지하층 설치규정에 따르면 건축으로 인하여 주위 기존 건물에 심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여유 공간이 있을 때(5층이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주거지역 안에서 학교를 건축코자 할 때 일조권 규정 및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시민전화)
답 높이가 8m를 넘을 경우 정북 방향은 높이의 1/2 이상을 확보하고 대지 경계선에서는 외벽까지 50cm, 처마끝까지 20c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 부속 건축물이라 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4호에 계기한 동일 대지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과 주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것입니다.

□ 기타규정

- **㉡** 일단의 대지에 수동의 단독주택을 건립시 채권매입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시공자 선정은? (시민전화)

- 답** 채권은 1동당 연면적을 기준하여 매입하시면 되고 시공자 선정은 일단의 대지내 연면적 합계를 기준하여 661m²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법에 규정한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 예식장을 건축코자 하는데 개략적인 규제 사항은? (시민전화)
답 강북지역(서울)의 신규허가는 불가하며 주거지역내에 서는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500m² 미만이어야 하며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주차장 시설은 연면적 150m² 당 1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 합법적으로 준공필한 기존 건축물의 일부 무허가 건물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구제 가능한지요? (시민내방)
답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가능합니다.
-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시민내방)
답 2년입니다.
- **㉥** 연립주택을 개인자격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연면적은 얼마인지요? (시민전화)
답 개정된 건설업법에 의하면 661m² 이하 건축물(주거용)은 개인자격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 **㉦** car lift 설치시 회전을 위한 전면 공지는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시민전화)
답 소형차량의 경우 car lift 위치로부터 9.8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면 회전이 가능토록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개발 제한구역내 기존건축물의 개축은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답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동일 용도·규모 범위내에서 개축·재축은 가능합니다.

□ 건축행정

- **㉡** 여관과 공동주택을 병용 건축할 수 있는지요? (회원전화)
답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은 겸용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 인근대지 건축주가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하였는데 조치사항은? (시민내방)
답 정부 인정기관에 의한 대지측량후 해당 구청 건축과에 접수하시면 시정 명령이 하달됩니다.
- **㉣** 공동주택 단지내의 상가의 내력벽에 문을 내려고 할 경우 그 절차는? (시민내방)
답 피난시설 확보에 의한 경우등은 자치관리의 기구의 의결을 거치며 대수선사항인 경우에는 구청에 건축허가를, 기타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신고로써 설치 가능합니다.
- **㉤** 일반주택 건축허가시 대지 사용 승락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시민전화)
답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25일부터 30일까지 문예진흥원 전시실에서 열린 재미건축가 김 태수씨의 작품 가운데 3점을 소개한 것이다.

김 태수씨는 지난 61년에 서울대 건축과를 졸업한 후 渡美, 예일대학교 건축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67년에 미국건축가 자격 시험에 합격한바 있다. 그후 70년에 건축사무소 HARTFORD DESIGN GROUP을 창설, 현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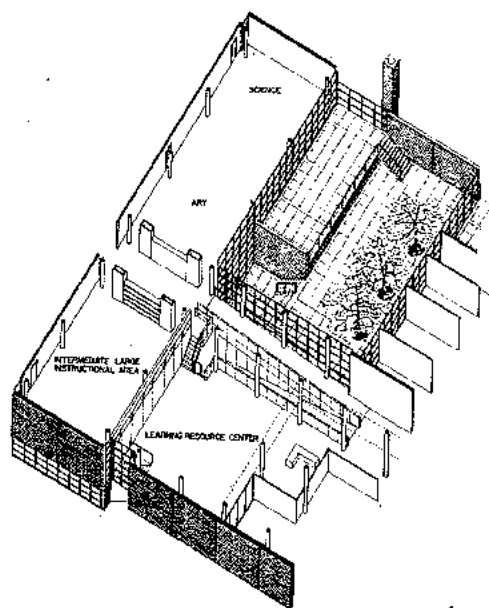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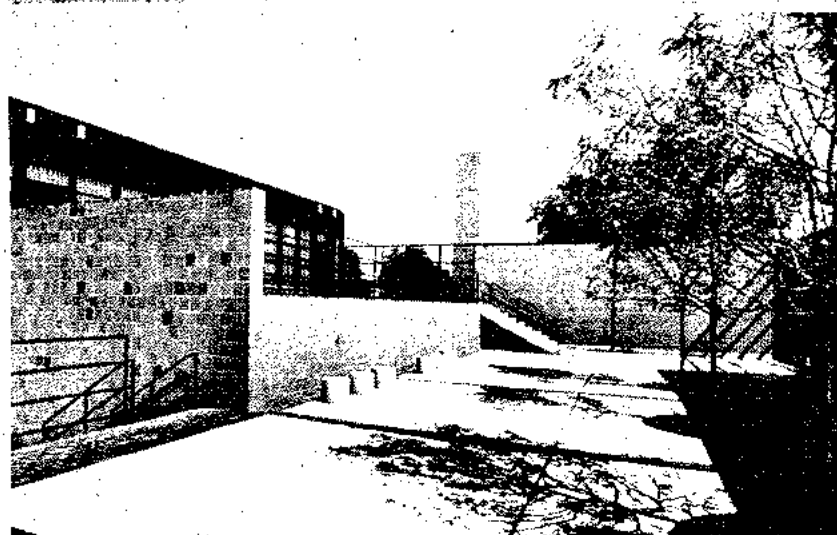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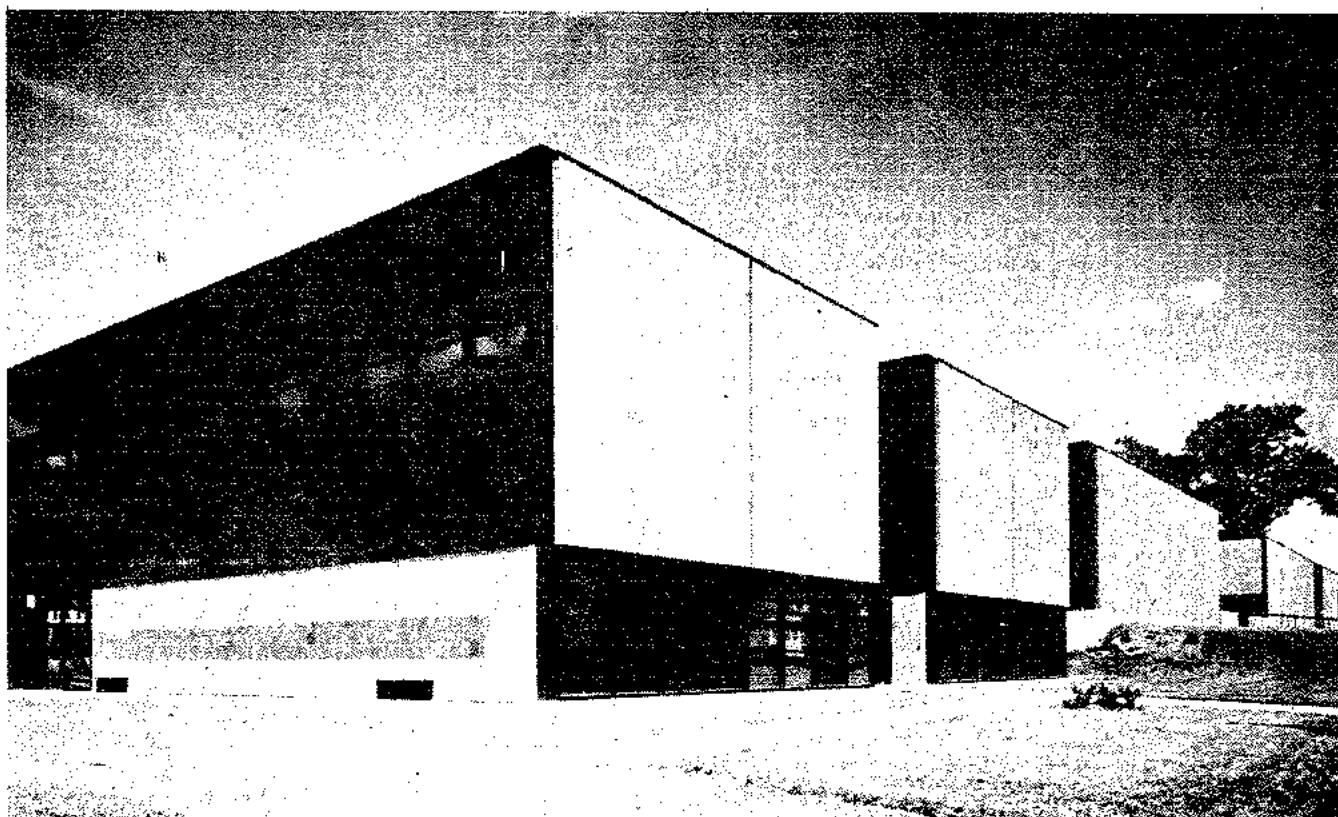
귀국 작품전을 가진 김 태수씨는 전시기간 중 본회 초청으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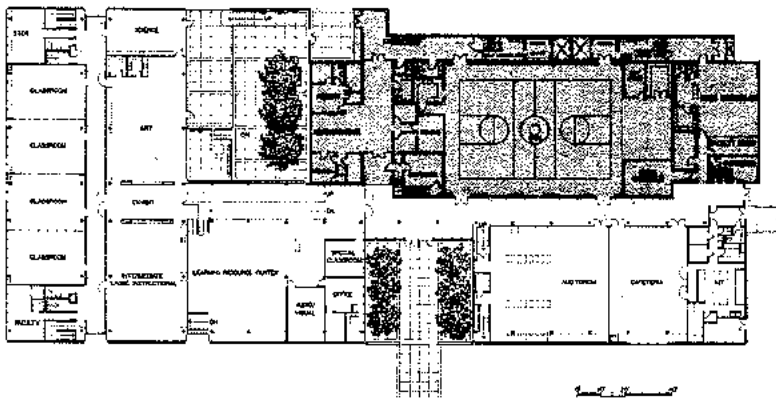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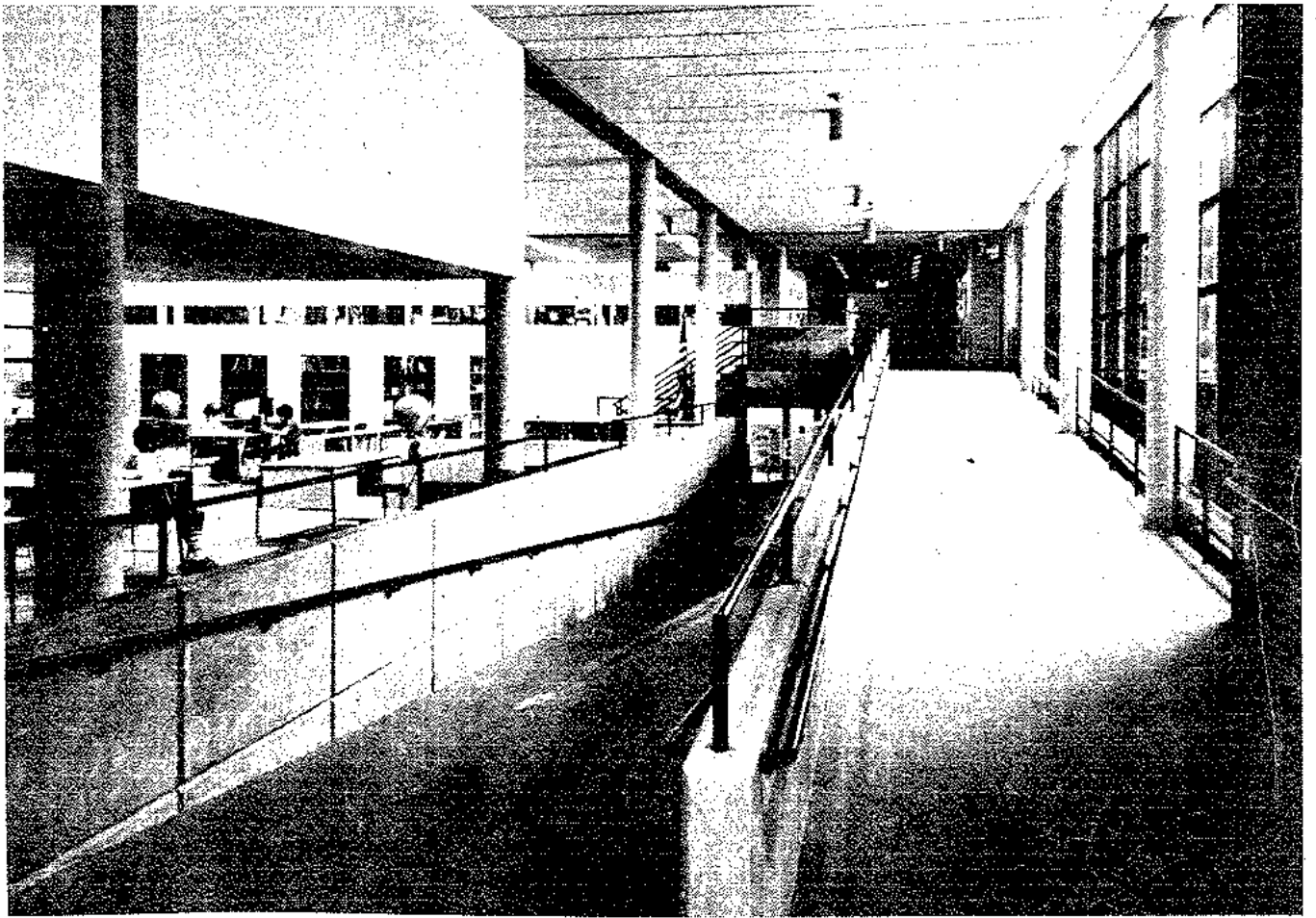
SMITH SCHOOL
West Hartford, Connecticut

IMMANUEL HOUSE
Hartford, Connecti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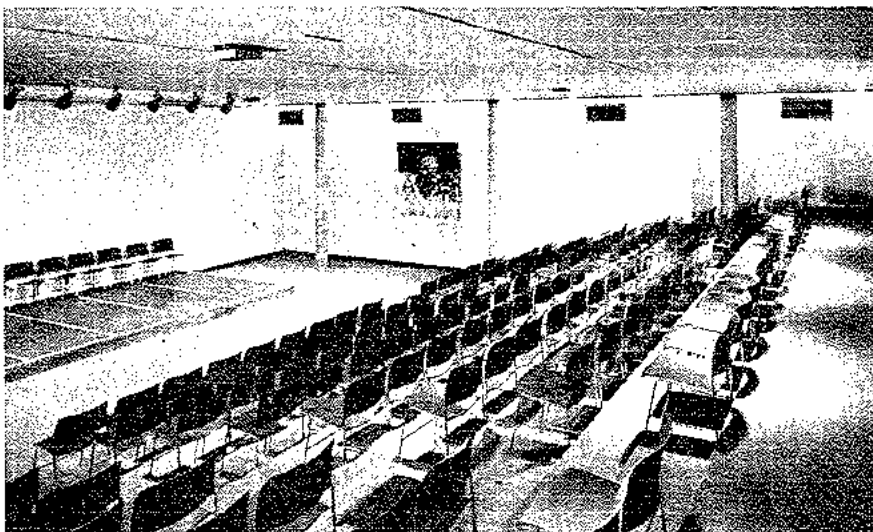
SOUTHBURY PUBLIC LIBRARY ADDITION
Southbury, Connecti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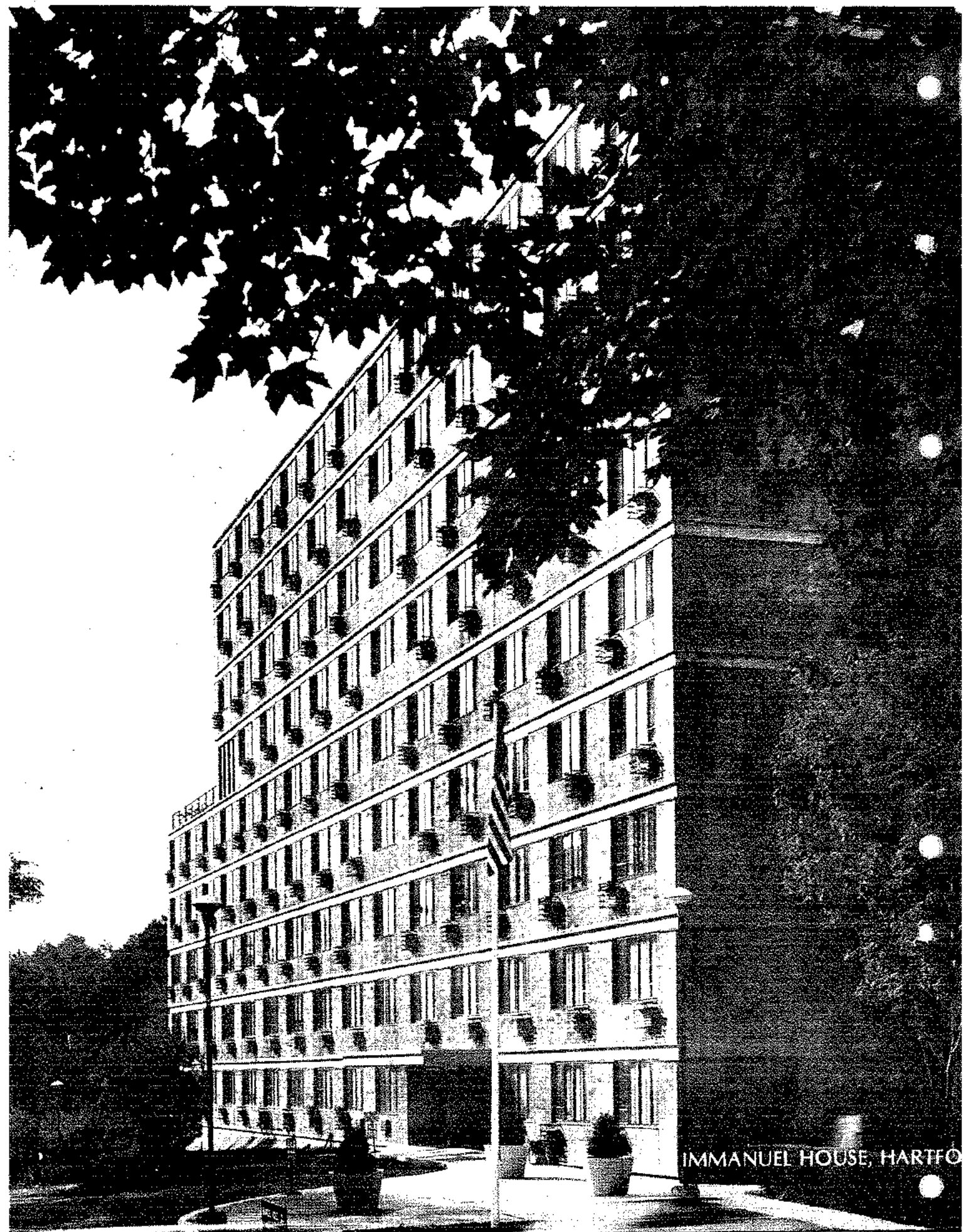
在美건축가 金泰修씨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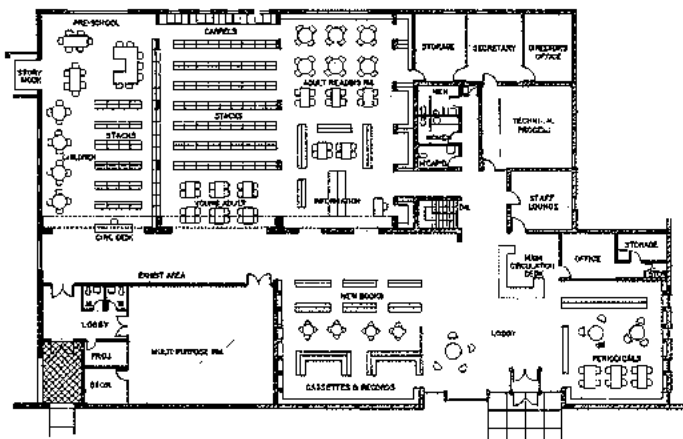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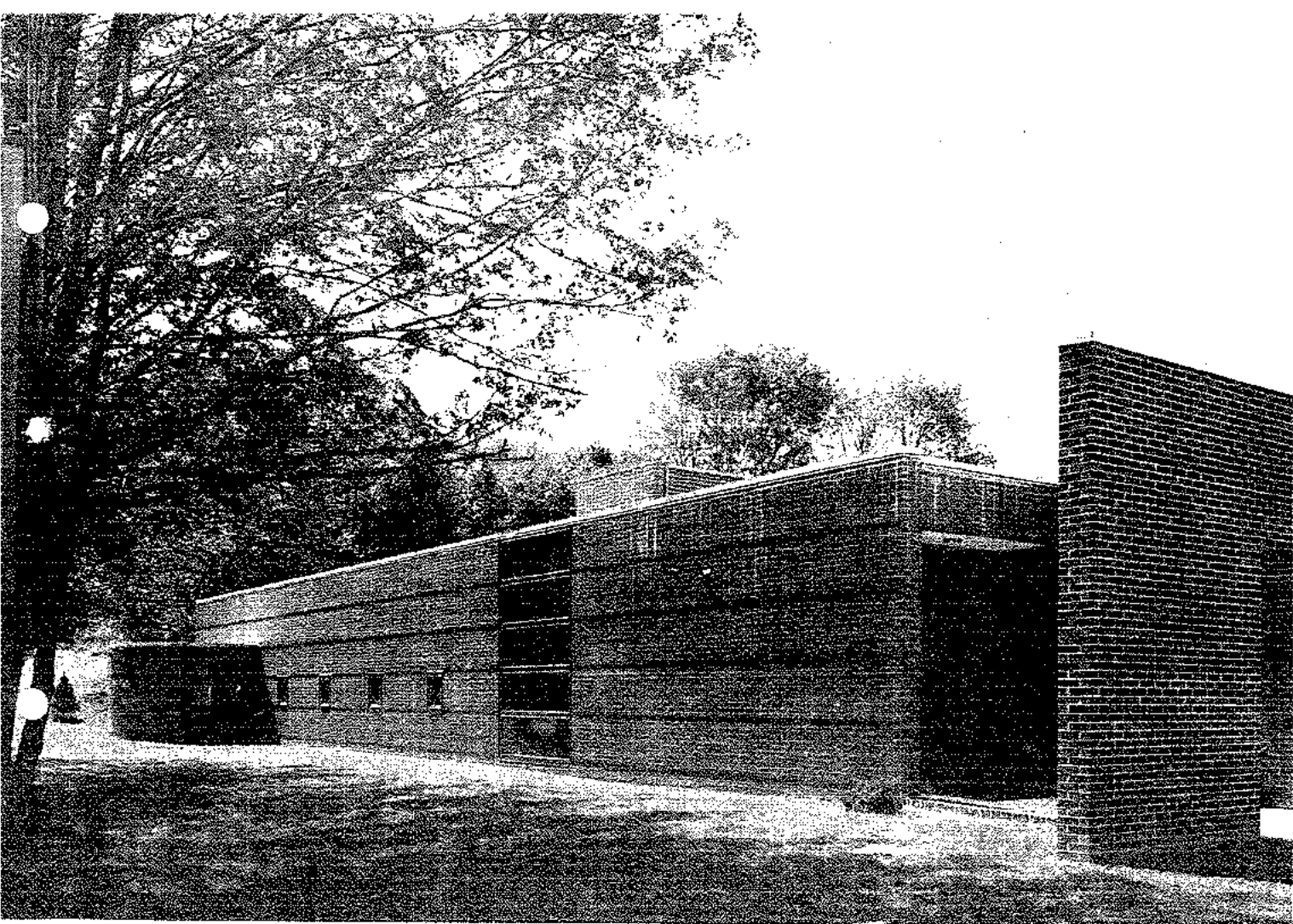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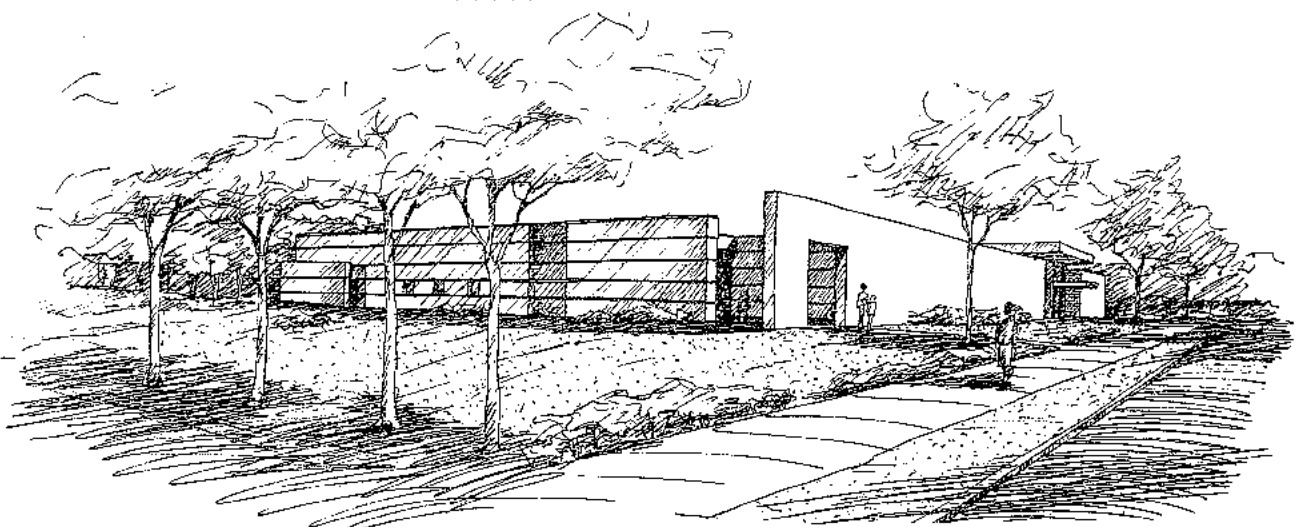
SMITH SCHOOL
West Hartford, Connecticut







SOUTHBURY PUBLIC LIBRARY ADDITION
Southbury, Connecticut



風荷重 및 積雪荷重基準의 改正內容과 解説〔完〕

姜 一 東 一 國立建設研究所 建築基準課 建築技佐

〔4〕積雪荷重

가. 구건축법시행령내용과 새로 시행되는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규칙내용의 비교

건축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내용		구 건축법시행령 내용
가. 적설하중의 산정 $S = P \times Z_s \times C_s$ S :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 (kg/m^2) P : 눈의 평균 단위 중량 ($\text{kg/m}^2 \cdot \text{cm}$) (적설량 1 cm 당 중량) Z_s : 설계용 수직최심적설량 (cm) C_s : 지붕의 경사·형상등에 따른 하중증감계수 나. 눈의 평균 단위 중량 P ($\text{kg/m}^2 \cdot \text{cm}$)		가. 적설하중의 산정 $S = P \times Z_s \times C_s$ S : 설계용 지붕적설하중 (kg/m^2) P : 눈의 평균 단위 중량 ($\text{kg/m}^2 \cdot \text{cm}$) Z_s : 수직최심적설량 (cm) C_s : 지붕의 경사에 따른 하중 증감계수 나. 눈의 평균 단위 중량 P ($\text{kg/m}^2 \cdot \text{cm}$) 보통지역 : $2.0 \text{ kg/m}^2 \cdot \text{cm}$ 다설구역 : $3.0 \text{ kg/m}^2 \cdot \text{cm}$ *다설구역은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정해지지 않고 있음.
수직최심적설량 (cm)	평균단위중량 ($\text{kg/m}^2 \cdot \text{cm}$)	
50 이하	1.0	
100	1.5	
150	2.0	
200 이상	3.0	
*수직최심적설량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눔 *다설구역은 수직최심적설량이 1m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다. 설계용 수직 최심적설량 Z_s (cm)		다. 수직최심적설량 Z_s (cm) *수직최심적설량은 과거의 적설 기록에 따라 상황이 유사한 구역마다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지역구분	Z_s	지 역
I	30	여수·진주·충무·부산·울산·제주·서귀포
II	50	서울·인천·수원·서산·대전·이리·진주·광주·울진·포항
III	70	춘천·청주·추풍령·군산·목포·대구
IV	150	속초·강릉·대관령
V	350	울릉도
*각지역별로 재현기간 100년의 최대 적설기대치를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남한지역을 5개 등급지역으로 구분했으며, 위표에 없는 지역은 지역조건을 고려 위표 중의 가까운 지역의 값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음.		

라. 지붕의 경사도 및 형상등에 따른 계수 박공지붕·외쪽지붕·반원지붕·기타 여러형태의 지붕구조와 그 경사도에 따라 경사도 및 형상 계수를 도표 또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하도록 함. (그림 1.2) 지붕경사도에 따른 기본계수			라. 지붕 경사도에 따른 계수	
α	바람막이가 있을때	바람막이가 없을때	경사각 (α)	Cs
0°—30°	0.8	0.6	0°—30°	1
40°	0.6	0.45	30°—40°	0.75
50°	0.4	0.3	40°—50°	0.50
60°	0.2	0.15	50°—60°	0.25
70°—90°	0	0	60°—90°	0
α : 지붕경사각 *주위에 바람을 막아주는 장애물이 없는 지붕에서는 바람에 의한 눈의 비산을 고려하여 Cs의 값을 25% 감소시킬 수 있음.			*지붕의 형상에 따른 고려는 없음.	

나. 적설하중기준 내용

건축물(공작물 포함)에 대한 적설하중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적설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의 산정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의 계산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S = P \times Z_s \times C_s$$

여기에서

S :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
(kg/m²)

P : 눈의 평균 단위중량(적설량 1cm 당 kg/m²)

Z_s : 설계용 수직최심적설량 (cm)

C_s : 지붕의 경사도·형상등에 따른 계수

(2) 눈의 평균 단위중량

통상의 경우, 눈의 평균 단위중량 P는 표 1에 의하되 중간값은 직선보간으로 구한다.

표 1

수직 최심 적설량 (cm)	평균 단위중량 P (적설량 1cm당 kg/m ²)
50 이하	1.0
100	1.5
150	2.0
200 이상	3.0

(3) 설계용 지상 적설하중

① 설계용 수직최심적설량 Z_s는 당해지역의 연간 최심적설 관측치에 의해 계산된 재현기간 100년의 최대

적설 기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② 설계용 지상 적설하중은 표 2에서 평균 단위중량과 수직 최심적설량을 곱한 값으로 구하고 이 표에 없는 지역은 지역조건을 고려 이 표 중 가까운 지역의 값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건설지역에 대한 적설관측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수직 최심적설량을 정할 때에는 표 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2

지역 구분	지상최심 적설량	P × Z _s	지 역
I	30 cm	30kg/cm	여수·진주·충무·부산·울산·제주·서귀포
II	50 "	50 "	안동·서울·수원·서산·대전·이리·전주·광주·울진·포항
III	70 "	64 "	군산·목포·춘천·청주·주봉령·대구
IV	150 "	300 "	속초·강릉·대관령
V	350 "	1,050 "	울릉도

(4) 지붕경사도 및 형상 등에 따른 하중증감계수 (C_s)

① 통상의 지붕에 대한 경사도 및 형상에 따른 하중증감계수 C_s는 그림 1 및 2에 의한다.

② 지붕면에 있어서 적설량이 부분적으로 집중 또는 편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

(5) 풍하중·지진하중과의 조합

풍하중 및 지진하중과의 조합을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적설기간에 준해 표 3의 계수를 곱하여 적설하중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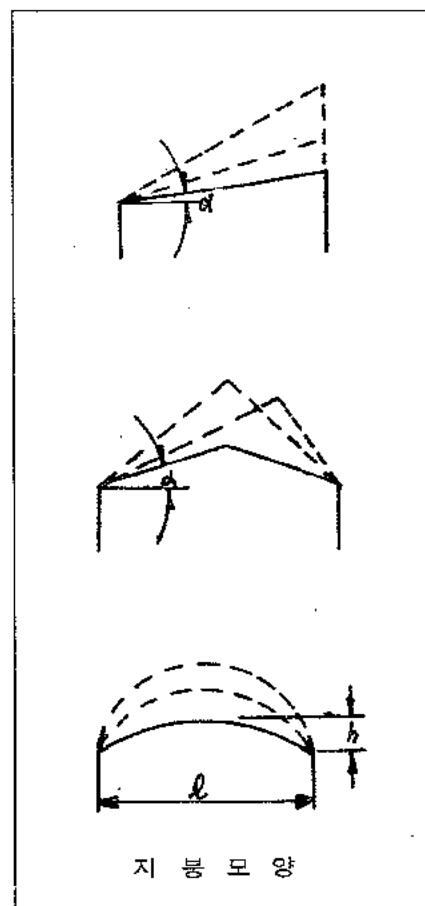
표 3

적설기간	1 개월미만	3 개월이상
계수	0	0.5

다만 중간기간에 대해서는 직선보간으로 구한다.

(6) 눈의 側压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는 적설량이 多量인 경우에는 눈의 측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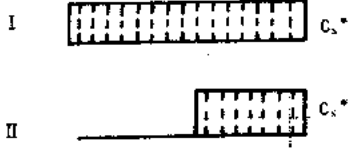




$$C_s^* = 0.8 - \frac{\alpha - 30}{50}$$

표 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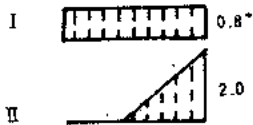
α	C_s	
	바람막이가 있을 때	바람막이가 없을 때
0~30	0.8	0.6
40	0.6	0.45
50	0.4	0.3
60	0.2	0.15
70~90	0	0



$d \leq 20^\circ$ 일 때 I 사용
 $d > 20^\circ$ 일 때 I 및 II 사용

$$I \quad C_s^* = 0.8 - \frac{\alpha - 30}{50}$$

$$II \quad C_s^* = 1.25 \left(0.8 - \frac{\alpha - 30}{50}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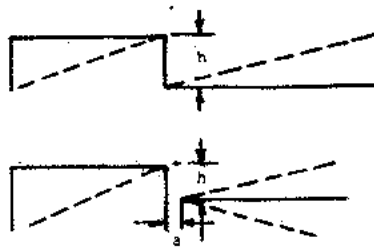


$\frac{h}{l} \leq \frac{1}{10}$ 일 때 I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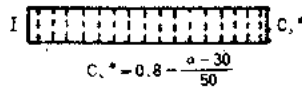
$\frac{h}{l} > \frac{1}{10}$ 일 때 I 및 II 사용

적설하중분포 및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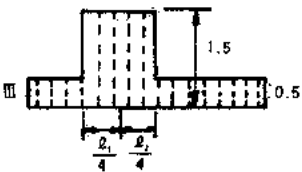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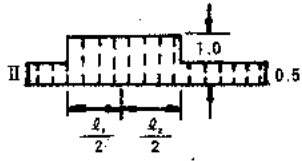
그림 1



지붕 모양



$$C_s^* = 0.8 - \frac{\alpha - 30}{50}$$



$$\beta = \frac{\alpha_1 + \alpha_2}{2}$$

$\beta \leq 10^\circ$ 일 때 I 사용
 $10^\circ < \beta < 20^\circ$ 일 때 I 및 II 사용
 $\beta \geq 20^\circ$ 일 때 I, II, III 사용



적설하중분포 및 계수

$$C_s = 15 \frac{h}{g}$$

$15 \frac{h}{g} < 0.8^*$ 일 때 $C_s = 0.8^*$ 사용

$15 \frac{h}{g} > 3.0$ 일 때 $C_s = 3.0$

$$W = 2h$$

$h < 1.5m$ 일 때 $W = 3m$ 사용

$h > 5.5m$ 일 때 $W = 9m$ 사용

h = 지붕높이의 차 (m)

g = 지상적설하중 (kg/m²)

w = 높은 건물로부터 편차(偏差)에 의한 폭 (m)

α = 건물과의 거리 4.5

높은 지붕의 하중은 단일수평지붕에 대한 하중을 적용해서 설계할 것.

바람막이가 없는 지붕에서는 바람에 의한 눈의 비산을 고려하여 별표로 표시한 C_s 값 (C_s^)을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계산식에서 $\frac{\alpha - 30}{50}$ 은 $\alpha > 30^\circ$ 일 때만이 적용된다.

다. 적설하중기준 해설

(1) 개설

적설하중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 중의 하나로 다른 하중에 비해 적설은 (1)눈으로 볼 수 있으며 (2)가력방향이 일정(연직방향)하며 (3)하중값의 변화가 비교적 완만하고 (4)大雪의豫知,豫報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5)눈을 지붕에서 끌어내려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단지, (2)·(3)항의 경우에서 滑落·눈사태·축압 등은 별도로 취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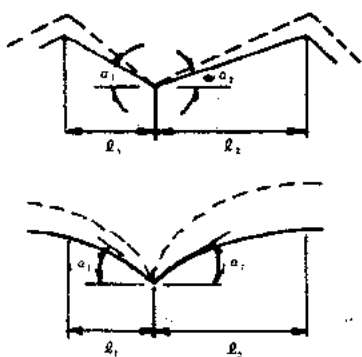
따라서 눈에 의한 사상자의 대부분은 눈사태 등에 의한 것이며 눈의 중량 즉, 적설하중에 의해 건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람은 사전에 피할 수 있어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적설하중에 불리한 건물은 경량이며 低層인 건물로 특히 스펀이 긴 구조물로서 철골조나 木造가 이에 해당한다. 또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도 현판채양, 발코니 부분과 같이 하중이 집중되며 그 위에 구조나 시공상으로 취약한 부위에서 局部的인 파괴가 일어남을 자주 볼 수 있다. 눈의 沈降으로 인한 沈降壓도 대단히 크며 이로 인해 철탑 하부의 수평재 등이 파괴되기도 하고 동시에 저온인 관계로 철골조의 불완전 용접부분의 파괴도 많이 볼 수 있다. 산사태에 대해 견딜 건물의 시공은 경제상 곤란하여 오히려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눈의 활락을 고려한 설계 또는 활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건물에서는 눈의 落下에 의한 사상자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어 안전한 어프로치(Approach) 이외에는 적설중에 건물에의 접근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분석

우리나라의 눈은 지역에 의한 差가 크다. 강원도나 울릉도와 같은 다설지역이 있는 반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눈이 적은 편이다.

그림 2



설계하중을 구하려면 어떤 지역의 최대적설 외에 大積雪의 빈도를 알아야 한다. 「전 설계하중으로서의 구조물이 그 可用期間中에 數回 또는 많은 회수로 작용하는 정도의 하중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적설량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906년 ~ 1979년에 걸친 중앙관상대의 데이터를 근거로 남한 각지의 최대 적설 기대치 및 최대 적설량을 조사한 것이 표 3이다.

표 3에서 최대 적설기대치의 再現期間은 50년과 100년에 대해 각각 2중지수분포도 방법과 Fisher Tippet 방법에 의해 지역별로 계산한 것이나, 아직 측정된 데이터가 지역별로 충분치 못한 실정에 있다. 조사된 데이터가 20개 미만인 지역은 전주를 비롯해 광주·충주·여수·속초·춘천·울릉도·수원·서산·청주·대전·군산이며 특히 울진은 2개, 대관령은 단 1개의 데이터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기준안에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된 후에 지도상에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은 남한지역을 4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림 3은 한국물리학회(공업진흥청 의뢰)에서 최심적설 분포를 지도에 등고선으로 표시한 것으로 개략적인 설계용 지상적설하중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안다.

(3) 설계용 지붕적설하중의 산정

지붕의 적설은 지상의 적설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1)지붕경사의 존재 (2)風向·풍속의 영향 (3)지붕면의 모양에 의한 차이 (4)일사·난방시의 차이를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붕의 적설분포가 일정하지 않게 된다. 본 안에서는 이상의 4개항 중 주로 (1)·(3)항을 참조하여 설계용 지붕적설하중의 산정을 다음 식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S = P \times Z_s \times C_s$$

여기에서: $P \times Z_s$ 는 지상적설하중

C_s : 지붕경사도나 형상에 따른

계수

설계용 지붕적설하중은 직접 지붕에 내린 눈을 측정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상 적설관측의 자료를 가

표 3 남한각지의 적설기대치(50년 및 100년) 및 최대적설량

지역 구분	지 명	최 대 적 설 기 대 치				최대적 설량(cm) 종 속
		재 현 기 간 50 년		재 현 기 간 100 년		
		2중지수분포 도 방 법	Fisher Tippet 방법	2중지수분포 도 방 법	Fisher Tippet 방법	
I	서울	25.8	35.3	29.0	40.8	31.0
	인천	28.5	33.4	32.3	38.4	43.8
	수원	25.5	36.5	28.6	42.2	25.9
	서산	37.4	44.2	42.3	51.0	32.0
	대전	29.0	33.9	32.9	39.0	25.5
	포항	28.1	16.8	32.6	18.6	30.0
	이리	18.2	30.5	20.2	35.5	14.1
	전주	25.1	36.5	28.1	42.3	28.1
	울산	12.9	7.0	15.0	7.6	21.9
	진주	15.0	11.3	17.3	12.7	13.0
	부산	14.9	9.4	17.2	10.5	22.5
	충무	12.2	12.6	13.8	14.5	9.2
	여수	20.3	15.5	23.4	17.4	20.6
	제주	19.4	19.4	22.2	22.2	21.5
서귀포 울진*	24.3	19.0	28.0	21.3	37.8 24.1	
II	춘천	40.95	58.46	45.9	67.6	44.2
	청주	46.2	53.2	52.5	61.1	39.0
	추풍령	35.4	46.8	39.8	54.1	37.1
	군산	43.2	64.8	48.3	75.1	36.6
	대구	30.3	24.0	34.8	27.1	55.4
	광주	32.1	48.0	35.8	55.6	35.0
	목포	39.3	42.4	44.7	48.6	56.1
III	속초	134.3	126.5	153.6	144.1	123.8
	강릉	102.6	131.7	115.8	151.9	130.2
	대관령					123.3
IV	울릉도	304.3	384.9	343.5	443.9	293.6

*자료가 1개 또는 2개인 지역

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물론 지붕에 내린 눈의 측정자료가 많은 지역은 일부러 지상 적설관측자료에 준하지 않아도 된다. 지붕적설하중 산정방법으로서는 諸係數를 곱하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각 나라별 산정기준을 표 4에 표시하였다. 이 기준도 미국·캐나다·독일 등의 기준과 비슷한 내용으로, 특히 지붕경사도 및 형상계수 C_s 는 미국·캐나다·CIB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수 중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채택하였다. 설계용 수직최심적설량(Z_s)은 측정된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외국의 기준과 같이 적설하중을 지도상에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피하고 지역별로 적설하중을 계산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하였다.

(4) 설계용 지상적설하중

눈의 質은 눈이 내릴 때부터 녹을 때까지 계속 변화하며 이에 따라 밀도도 변화한다. 이 밀도는 기온과 적설량 및 시간 경과에 영향을 받으며, 적설량과 밀도만의 관계로 정리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표 1은 일반적으로 低溫에서 최대 적설량을 표시할 때의 적설상태를 대상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또한 표 2는 직접 하중치로서의 관계를 각 지역별로 표시한 것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정리한 것이다.

(5) 지붕의 경사도 및 형상 등에 따른 하중증감계수

경사 지붕면에서는 지붕면에 눈막이 장치가 없는한 눈이 지붕에 쌓이는 대로 흘러 내리므로 경사면에 대한 적설하중은 지붕경사도에 따라 수평

그림 3 최심적설분포 (1940-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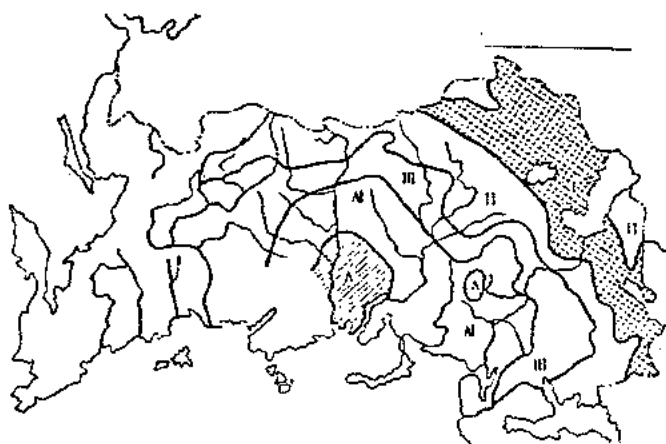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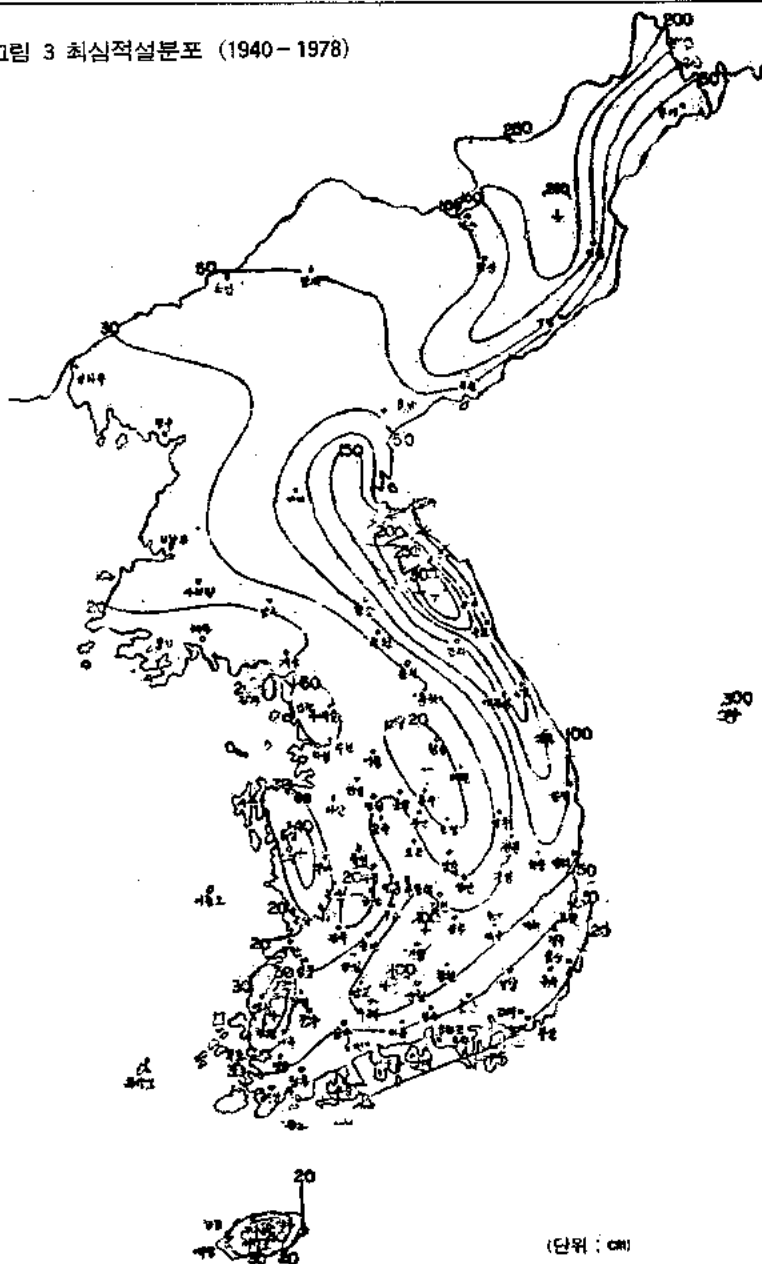


그림 4 소련의 적설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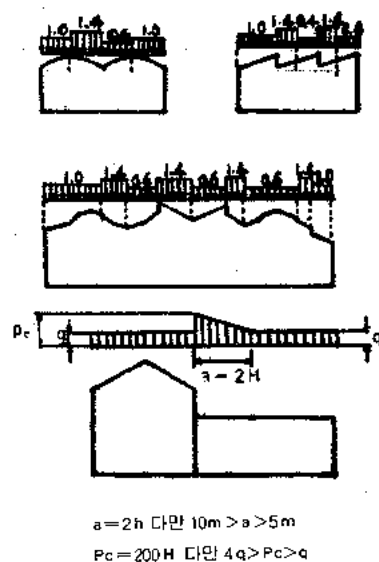


그림 5 복잡한 지붕형의 설계용
적설하중계수(소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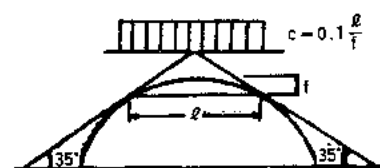


그림 6 아—치형 (소련)

면에 대한 적설하중보다 경감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적설하중 경감에 관한 각국 기준은 대개 비수합을 표 4의 외국 적설하중 기준에서 알 수 있다. 이 기준의 지붕 경사계수(Cs)의 설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이는 CIB의案이기도 하다. 이 계수에 대하여 세밀한 규정을 정해놓은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소련·캐나다 등이며 이 규정 중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표 7에 표시하였다. 또한 특수한 부분을 제외한 각종 형태의 지붕에 대하여는 본문 그림(6月號 그림 1.2)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이 외에 지붕의 적설하중이 부분적으로 집중 내지 편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표 4 나라별 적설하중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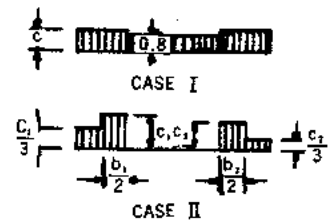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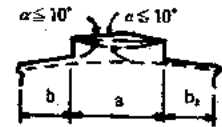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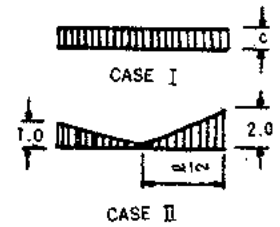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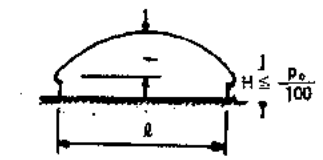
나 라 명	설계용지붕설하중(S)의 산정방법			비 고
한 국 건 축 법	S = 단위중량×수직최심적설량×지붕의 경사계수(Cs)			적설의 단위중량은 1cm마다 1m ² 에 대하여 2kg (다설지역은 3kg)
또는 일본 건축기준법	물 매	30° < α < 40°	40° < α < 50°	50° < α < 60°
	적설하중에 곱할수치(Cs)	0.75	0.5	0.25
일 본 건축학회 하중안	S = P×Zs×E×R×I S : 설계용지붕설하중(kg/m ²) P : 눈의설계용평균단위중량(적설 1cm당kg/m ²) Zs : 설계용 지상적설깊이(cm) E : 환경계수 R : 지붕경사각에 의한 계수 I : 용도계수			
	경 사	25° 이하	60° 이상	
	계 수 (R)	0.9	0	
	*중간값은 직선보간			
미 국 (ANSI)	S = 적설하중×Cs Cs: 기본설하중 계수로 0.8이나 지붕경사에 따른 계수			적설하중은 재현기간 50년 및 100년에 대하여 지역을 등고선으로 표시하였음.
캐 나 다 (NBC)	Li = L [1-0.0233(x-20)] Li: 등분포하중 L : 지도상에 등고선으로 표시한 설계용설하중 x : 지붕경사각			
독 일 (DIN 1055 Sheet 5)	S = Ks·So, Ks = 1 - $\frac{\alpha-30}{40}$ 0 ≤ Ks ≤ 1 α : 지붕경사각 So : 수직적설하중 Ks: 지붕경사에 따른 감소계수 적설하중에 대한 지도가 되어 있으며 베를린에서 적설하중 So=75kg/m ²			30년재현기간
소 련	Pc=P·C P : 1m ² 당의 설하중(표 5 참조) C : 지붕의 형상에 의한 계수 (그림 4.5.6.7.)			소련 내의 지역을 5개구역으로 표시
노 르 웨 이	Sa=S × $\frac{60-\alpha}{30}$ S : 표준적설하중 α : 지붕경사각 Sa : 지붕경사에 따른 적설하중			지역을 3개지역으로 구분

표 5 적설하중 P

No.	소련내의 지역구분(그림 4 참조)	적설하중 P (kg / m ²)
1	I	50
2	II	70
3	III	100
4	IV	150
5	V	200

* 산악지방의 적설하중은 60 kg / m² 이상으로 한다.

그림 7 설하중의 분포 및 계수 (소련)



$$c = 1 + 0.2 \frac{a}{b_1 + b_2}$$

$$c_1 = 1.5 (1 + 0.6 \frac{a}{b_1})$$

$$c_2 = 1.5 (1 + 0.4 \frac{a}{b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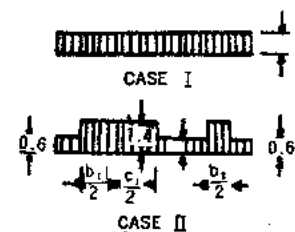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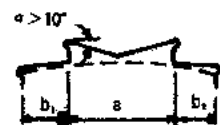


표 6 계 수 C

No.	지붕의 형상	C 비	비 고
1	형이 단순한 지붕 경사각 $\alpha \leq 25^\circ$ $\alpha \geq 60^\circ$	1.0 0.0	지붕 경사각이 중간에 있는 경우는 지 선보간을 함
2	아—치형 지붕	$\ell / 10 f$	단자 ℓ : 아—치의 스패 f : 아—치의 높이 계수 $C = 0.3 \sim 1.0$
3	형이 복잡한 지붕	그림 7	고도자 H는 m단위로 표시

표 7

지붕 경사각 (α)	계 수 (C_s)	
	바람막이 있는곳	바람막이 없는곳
0 ~ 30°	0.8	0.6
40°	0.6	0.45
50°	0.4	0.3
60°	0.2	0.15
70°~90°	0	0

(6) 풍하중 · 지진하중과의 조합

풍하중 및 지진하중과의 조합을 고
려할 경우에는 적설기간에 준해 표 8
의 계수를 곱하도록 한다.

표 8

적설기간	1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계수	0	0.5

強風과 눈 또는 強震과 눈과의 조
합하중이 건물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
다. 겨울에 건물에 눈이 쌓였을 때 강
한 바람이 불면 눈은 飛散하여 버린
다. 그러므로 구조물 설계에 있어 눈
과 바람의 각 최대하중을 동시에 본
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구조설계에서 풍하중과 적설하중을
동시에 고려할 때에는 하중조합에 있
어 최대풍하중에 대해서는 적설하중
을 감소시키고 최대적설하중에 대해
서는 풍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와같은 하중조합법에 대해서는 미국
규정의 예를 들 수 있다.

$$D \cdot L + L \cdot L + W \cdot L + \frac{1}{2} S \cdot L$$

$$\text{또는 } D \cdot L + L \cdot L + \frac{1}{3} W \cdot L + S \cdot L$$

여기서는 표 3과 같이 적설기간이
짧은 지역에서는 조합하중을 고려하
지 않으며 3개월 이상의 적설기간이
있는 지역에서는 적설하중에 0.5를 곱
한 값을 취하도록 하며 중간값은 적
선보간에 의해 구한다.

(7) 눈의 축압

경사지에 세워진 집이나 또는 적설

심이 2~3m를 넘는 경우는 건물의 벽
면에 작용하는 눈의 축압이 문제가 된
다. 단순히 적설에 의한 경우 (경사면
을 제외), 어떤 점에서 뒷부분의 눈
하중을 $W(\text{kg/m}^2)$ 로 하면 이 점의 수
평방향에는 (눈을 탄성체로 볼 경우)

$$W_H = \frac{\nu}{1 - \nu} \cdot W \text{의 하중이 작용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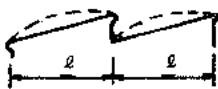
ν 를 대개 0.25 이하의 값으로 하면

$$W_H = \frac{1}{3} W \sim \frac{1}{4} W \text{의 값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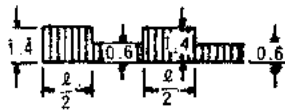
이 축압에 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지만 실험치와 거의 일치하는 값을
보이고 있다. 경사면에 따른 분력 이
외에 또한 沈降壓에 해당하는 하중을
받는다. 즉 건물이 抵抗物이 되어 눈
의 이동을 막으므로 인해 건물쪽보다
훨씬 큰 부분까지 눈의 분력을 받게
되므로 이의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三大 不正심리를
추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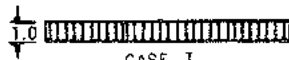
- * 부정부패심리
- * 물가 오름세심리
- * 무질서심리



CAS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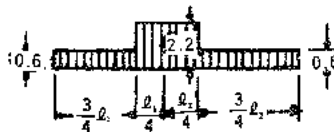
CASE II



CASE I



CASE II



$S \sim 2H$ (H의 단위는 m로
 $5 < H < 10$)

$c \sim \frac{200H}{P_s}$ ($c < 4.0$)

P_s - 지상적설하중

構内通信線路設備에 關한 解説(Ⅱ)

金 文 洙 — 通信部 通信政策局 通信技術課

構内通信線路設備에 關한 解説(Ⅰ)에서는 電氣通信設備의 技術基準에 關한 規則 第3編(通信線路設備) 第2章(構内通信線路設備) 第1節(設備의 要件) 및 第2節(公衆回線의 引込要件)의 第85條부터 第90條의 2까지를 살펴 보았다. 이어서 第3節(屋外線路)과 第4節(屋內線路)의 규정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제91조(옥외선의 요건) 옥외선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선조의 종류는 시내케이블·시외케이블·1.6밀리미터(강설지대에 있어서는 2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 또는 옥외전화선을 사용할 것.
2. 선조의 접속방법은 케이블·심선의 경우에는 꼬임접속 나선의 경우에는 스템 접속으로 할 것.

제91조(옥외선의 요건) 옥외선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동일구간의 배선이 5회선 이상의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2. 선조는 시내케이블·시외케이블·1.6밀리미터(강설지대에 있어서는 2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 또는 옥외전화선을 사용할 것.
(82. 6. 2개정)

第91條(屋外線의 要件)는 屋外線으로 사용되는 線條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線條를 接統·分岐할 必要가 없는 동일한 구간으로서 5회선 이상일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용토록하여 架空시설의 外觀을 개선하고 故障要素를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從前의 接統方法에 대한 規定은 接統工法이 날로 다양하게 開發되고 있고 또한 接統技術도 상당수준 이상이라고 判斷되어지기 때문에 自律化하도록 하였다.

제92조(전주의 요건) 옥외선로에 사용하는 전주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전주의 종류는 목주·콘크리트주·철주·기타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일 것.
2. 전주의 길이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할 것.

구 분	설 치 요 건
전주의 길이	6미터 이상
전주의 간격	1. 케이블 경우 40미터 이하 2. 옥외전화선의 경우 50미터(강설지대에 있어서는 40미터) 이하
전주의 말구경	1. 옥외전화선이 4조 이하인 경우 12센티미터 이상 2. 기타의 경우 14센티미터 이상
전주의 근입	전주길이의 6분의 1 이상(연약 지반에 있어서는 길이 1.0미터 이상, 말구경 15센티미터 이상의 근가목 또는 시멘트브럭을 취부할 것)

주: 위표 이외의 전주는 위표의 전주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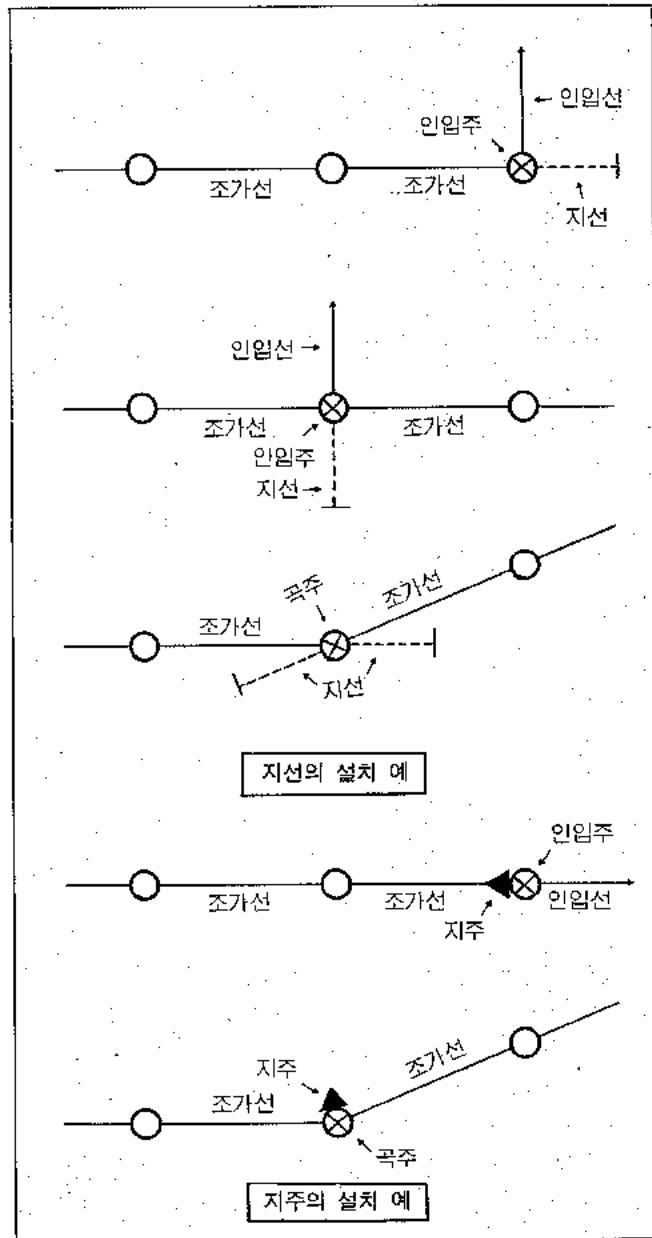
第92條(電柱의 要件)는 屋外線路에 사용되는 電柱의 종류·길이 및 設置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電柱의 종류로는 一般的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나무電柱·콘크리트電柱·鉄柱 또는 충분한 強度 등 優秀한 特性을 가지고 있어 사용상 支障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電柱의 길이 및 設置거리를 規定한 것은 線條의 荷重과 설치장소의 環境條件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93조(지선·지주 및 조가선의 요건)

지선·지주 및 조가선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인입주 및 곡주에는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선 또는 지주를 설치할 것
2. 지선의 지하매설 부분에는 근가목·시멘트브럭 또는 지선영커 등을 사용할 것.
3. 조가선은 케이블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굵기 30평방밀리미터 이상의 강연선을 사용할 것

第93條(地線·地柱 및 助架線의 要件)는 構内로 引込되는 線條를 최종적으로 收容하는 電柱인 引込柱 및 非直線 線條架設 區間の 中間지점(꺾여지는 곳)에 設置되는 電柱인 曲柱 등에는 電線의 張力이 한쪽방향으로만 작용되므로 이를 보완하여 電柱의 直立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地線·地柱 및 助架線의 設置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설치방법에 대한 예를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제94조(인입용 애자등) 옥외전화선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애자 또는 인입용 크램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해설 생략”

제95조(건물 등에의 첨가) 선로가 건물 등에 첨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선조와 건물 등과의 이격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
2. 선조의 지지물 상호간의 거리는 40미터 이하

“해설 생략”

제96조(지하선로시설의 요건) 지하선로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포설방식에 따른 전기통신용케이블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

가. 관로식 또는 트라프식의 경우: 전기통신용 비외장 케이블

나. 직매식의 경우: 전기통신용 외장 케이블

2. 관로 및 케이블을 매설하는 경우의 토피는 다음 표와 같이 할 것. 다만, 타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부족이한 경우, 보수상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암반 지대에 있어서 토피를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로 보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포 설 장 소		표 준 토 피
차 도	콘크리트관	90센티미터
	파·브이·씨관	100센티미터
보 도		60센티미터
기 타		120센티미터

第96條(地下線路施設의 要件)는 地下布設 方式別 케이블의 종류와 管路 및 케이블의 안전을 위한 土皮, 즉 흙의 두께를 규정하고 있는데 管路를 통하여 布設되는 케이블은 管路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므로 비외장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埋設되는 케이블은 스스로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인 외장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管路 및 케이블 埋設에 있어서 그 埋設장소를 차도·보도 및 기타로 구분하고 예상되는 最大荷重을 고려하여 管路와 케이블이 안전할 수 있는 깊이에 埋設하도록 하였다.

제97조(관로시설의 요건) 관로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관로에 사용하는 관의 종류는 특수관·강관·주철관·토관·콘크리트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으로 할 것.
2.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차도·보도·택지 또는 궤도 등 그 포설개소의 하중조건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고 토질 또는 수질에 대하여 내식성과 내구력이 충분한 것을 선정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궤도 등으로 인하여 진동이 큰 장소에는 특수관·강관·또는 주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내면은 평활하여 케이블 포설이 용이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옥내인입지하관로는 건물의 외벽에서 옥외지하시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
5.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포설이 가능한 간격으로 설치할 것
6. 맨홀 및 핸드홀은 그 크기가 내부에서 케이블의 곡률반경이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이 되고 케이블의 포설 또는 접속작업 등이 용이한 것일 것. (82. 6. 2개정)

第97條(管路施設의 要件)는 管路로 사용될 管의 종류 및 그 특성과 맨홀 또는 핸드홀의 設置要件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第1號에서 列擧하고 있는 管의 종류중 合成樹脂管은 従前규정의 “경질비닐관”을 개정한 것으로 耐蝕性和 耐久力 등 그 특성이 優秀하여 현재 公衆통신용 규격으로 채택하여 사용되고 있다. 第4號는 屋外引込管路와 屋内引込管路를 접속하는 경우 曲處理 등의 작업이 容易한 屋外에서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第5號는 맨홀 등을 1드림의 케이블로 보호설이 가능한 거리(제89조 해설 참조) 이내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第6號의 규정은 맨홀 또는 핸드홀의 크기에 대한 것으로서 내부에서 케이블 심선의 절연물 및 도체의 손상없이 케이블을 구부릴 수 있고 접속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제98조(트라프식 관로의 요건) 트라프식 관로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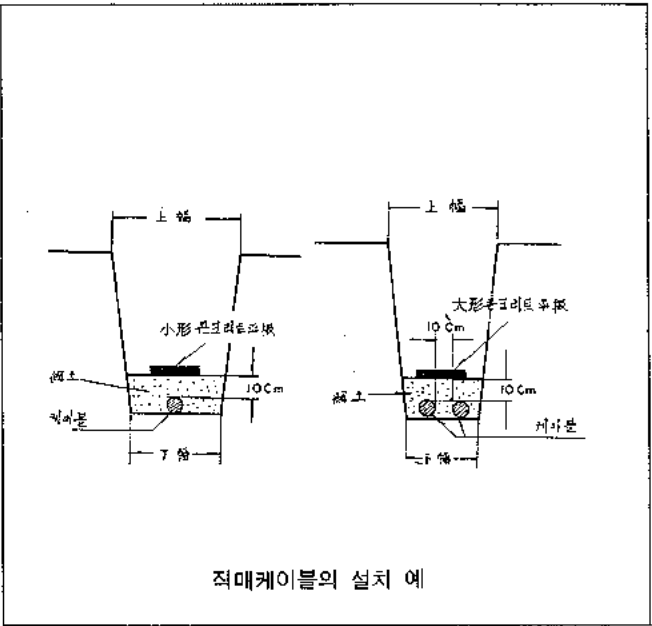
1. 콘크리트제로서 개거식 또는 암거식일 것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 가. 도난 또는 기타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개거식일 것.
 - 나. 설치장소에 있어서 예측되는 최대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을 것.
 - 다. 침수지 또는 연약지반에 설치되지 아니할 것.

第98條(트라프식 管路의 要件)는 線條의 増設· 변경 등이 빈번한 구간 등 특수한 구간 또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管路의 일종인 트라프식 管路의 要件을 규정한 것인데 이 방식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즈음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트라프식 管路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튼튼히 하여야 하며 布設되는 線條의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필요시 열어볼 수 있도록 개거식으로 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埋設 하도록 하였다.

제99조(직매식의 요건) 케이블 등의 옥외선로를 직매식으로 설치할 경우의 설치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약지반이 아닌 곳으로서 차량 등의 통행이 적은 구간에 설치되되, 그 포설 구간 중 도로가 횡단되는 장소 등에는 보호조치를 할 것.
2. 매설물 관제로 굴착이 빈번한 개소에는 보호조치를 할 것.
3. 직매구간에는 직매표시를 할 것.

第99條(直埋式의 要件)는 케이블을 管路施設없이 직접埋設하는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설치예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으며 터파기는 길이 80cm 이상, 上幅은 최저 50cm, 下幅은 40cm 정도로 하여 케이블을 무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천천히 포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래나 세토 위에는 소형콘크리트平板 등을 설치하여 重荷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고 굴착작업 등 공사시 케이블이 직접 노출·접촉되어 손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직매케이블의 설치 예

제100조(옥내선의 종류) 옥내에 설치하는 단자함(단자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에 포설하는 선로는 피·이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 내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해설 생략”

제101조(타관로 등과 분리) ① 옥내관로는 감전류전선용 관로 등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용 닥트와 강전류전선용 닥트가 병행하여 포설된 때에는 그 인출구의 위치가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第101條(他管路 등과 分離)는 屋内通信線用 管路와 屋内強電流電線用 管路를 分離하여 設置함으로써 屋内強電流電線으로부터 通信線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屋内通信線과 屋内強電流電線은 相互 30cm 이상 離隔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상 불가피하여 다음 중 1과 같이 하는 경우는 예외로 許容하고 있다.

- 1) 屋内通信線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서 屋内強電流電線이 收容·布設되는 合成樹脂製, 接地공사를 한 금속제의 管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근접 설치하는 경우.
- 2) 옥내強電流電線이 케이블(케이블타이어 케이블 포함)로서 옥내통신선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근접 설치하는 경우.
- 3) 300볼트 이하인 옥내強電流電線과 屋内通信線 간에 절연성의 隔壁을 설치하거나 屋内強電流電線을 電線管(絶緣性·難燃性 및 耐水性의 것)에 收容하여 근접 설치하는 경우.
- 4) 300볼트 이하인 屋内強電流電線과 屋内通信線이 6cm 이상(壁内 또는 容易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서는 12cm 이상)의 離隔거리를 갖도록 설치하

는 경우

- 5) 300볼트 이상인 屋内強電流電線과 屋内通信線이 15cm 이상(壁内 또는 容易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는 30cm 이상)의 離隔거리를 갖도록 설치하는 경우.
- 6) 同一의 管 또는 닥트의 내부에 隔壁을 설치하고 管 등의 금속제 부분에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하여 屋内強電流電線과 屋内通信線을 각각 分離·收容하여 布設하는 경우.

第2項의 규정은 비록 屋外電氣通信用 닥트와 強電流電線用 닥트가 近접·並行하여 布設되더라도 引出口에서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상호접촉을 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02조(보안용접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안용접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주배선반의 보안용 접지저항은 10옴 이하
2. 단자함의 접지저항은 300옴 이하
3. 보안기용 접지저항은 100옴 이하
4. 접지선은 1.6밀리미터 이상의 피·보이·씨 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동판·동관·동봉 또는 나동선을 사용하여 지하의 안전한 길이에 매설할 것.

“해설 생략”

제103조(옥내관로 등의 요건) 옥내관로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닥트 및 배관 등의 옥내관로는 선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구조의 것으로서 작업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닥트에는 선조를 고정시키는 지지물을 구비할 것.
2. 배관용금속관은 두께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일 것.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옥관물 등에 의한 피해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나사조임에 의하여 접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은 주위온도 섭씨60도 이상의 장소, 현저한 기계적 충격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전력유도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벽의 내부에 매입하는 합성수지관은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것일 것.
5. 관로의 곡률반경은 별표 8과 같이 할 것.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1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완곡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내일 것.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도 이내로 한다. (82. 6. 2개정)

第103條(屋內管路 등의 要件)는 屋內的 管路를 적절히 설치함으로써 線條의 布設을 容易하게 하고 損傷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合成樹脂管”은 從前의 “경질비닐관”을 개정한 것이며 그 두께도 從前의 3mm

에서 2mm로 하향조정하여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규격으로 완화하였고, 管路의 曲率半徑에 대하여는 케이블에 한하여 第90條(屋外引込)의 解説에서 圖示 한바와 같이 케이블의 수용을 容易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구간의 관로 완곡개소를 케이블이 포설될 경우 3개소까지로 하고 그 완곡 각도도 180도 이내로 하여 케이블의 布設작업과 케이블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屋內電話線만을 收容하는 경우에는 그 布設작업이 케이블에 비하여 비교적 容易하므로 완곡개소를 5개소,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제104조(배관의 요건) 옥내에 설치된 단자함 사이의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옥내의 단자함이 동·일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주단자함과 각 단자함간의 배관은 단독배관 또는 연속배관으로 할 것.
2. 국선용 단자함 또는 주배선반과 각종의 주 단자함 사이에는 내경 50밀리미터 이상의 관을 사용할 것.
3. 주단자함과 각종의 중간단자함 사이에는 내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관을 사용할 것.
4. 주단자함 또는 각종의 중간단자함과 실내에 설치한 단자함(이하 “실내 단자함”이라 한다) 사이에는 내경 30밀리미터 이상의 관을 사용할 것.
5. 실내 단자함과 상면에 설치하는 출단자 또는 실내배선을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함(이하 “연결함”이라 한다) 사이에는 내경 19밀리미터 이상의 관을 사용할 것.

제104조(배관의 요건) 옥내에 설치된 단자함 사이의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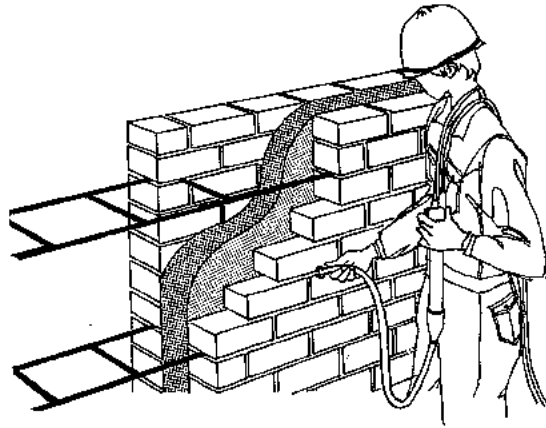
1. 옥내의 단자함이 동·일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주단자함과 각 단자함간의 배관은 단독배관 또는 연속배관으로 할 것.
2. 국선용 단자·국선용 단자함 또는 주배선반과 주단자함·중간단자함·연결한(실내의 단자함과 상면에 설치하는 출단자 또는 실내의 배선을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실내의 단자함(이하 “실내단자함”이라 한다) 또는 실내단자(콘덕팅브릭의 껍을 말하며 이하 “전화기용 콘센트”라 한다) 사이 또는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배관의 규격에 대하여는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82. 6. 2개정)

第104條(配管의 要件)는 屋內에 설치되는 모든 配管의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從前의 區間別로 규정한 配管用 管의 규격을 第89條第2項第2號의 解説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收容되는 전線線條의 外部直徑만을 고려하고 자율화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의 두께가 配管때문에 두꺼워 진다거나 管이 노출되어 외관이 불량하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 건축자재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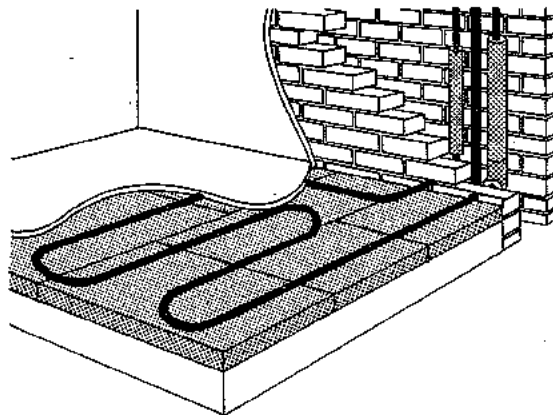
제품명	우레아폼 (UREA-FOAM)	
성분 및 제조	요소비료가 주원료이며 요소수지를 경화제로 현장에서 발포시켜 시공부위에 주입 또는 분사시키면 자연상태에서 경화되어 밀도가 낮고 단열성능이 우수한 백색의 탄성을 가진 폼이 됩니다.	특성
용도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태양열주택등 주거용건축물, 각 관공서건물, 병원, 호텔, 상가등의 건물벽체, 천정용 단열재입니다.	가 격
		열전도율 : 0.025Kcal / mh℃ 밀 도 : 0.01~0.015g / cm³ 시공방법 : 분사 충전식 화재특성 : 화재에 안정함 내 열 성 : -200℃ ~ 80℃ 방 습 성 : 흡습을 없음
		1mm / 1m² : 36 ³⁶ 원, 50mm / 1m² : 1,818원 1mm / 1평 : 120원, 50mm / 1평 : 6,000원

시 공 장 면



제품명	페놀폼 (PHENOL-FOAM)	
성분 및 제조	석탄산에 특수촉매와 첨가제를 넣어 수지를 만든 후 이를 농축, 경화제로 발포시켜 판상이나 파이프카바 형태로 제조되는 단열재로 넓이와 두께, 강도를 임의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성
용도	재래식 주택(통벽)의 벽체, 파이프카바의 보온·보냉, 주택의 온돌자갈대신 사용합니다.	가 격
		열전도율 : 0.025Kcal / mh℃ 밀 도 : 0.02~0.05g / cm³ 시공방법 : 판상으로 사용 화재특성 : 방화벽으로 사용 내 열 성 : -200℃ ~ 150℃ 방 습 성 : 흡습을 없음
		1mm / 1m² : 45 ⁴⁵ 원, 50mm / 1m² : 2,272 ⁵⁰ 원 1mm / 1평 : 150원, 50mm / 1평 : 7,500원

시 공 장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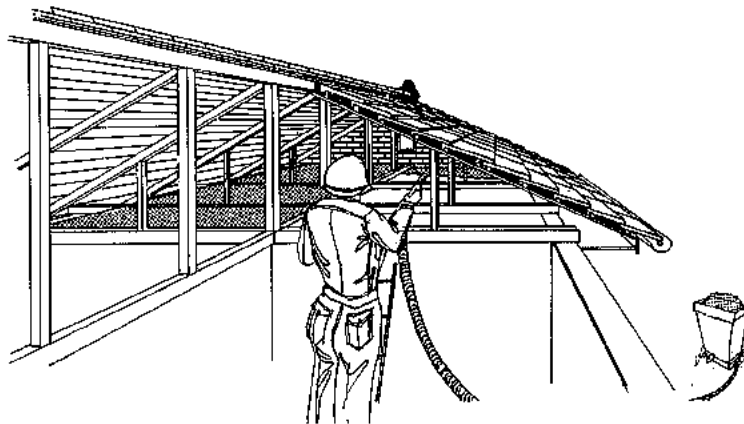


- 본사 · 공장 :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578 T : 용인 (1335) 3791 포곡17
- 서울사무소 :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503호 T : 723 · 8301 ~ 3
- 시 공 센 타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60 - 16번지 T : 590 - 3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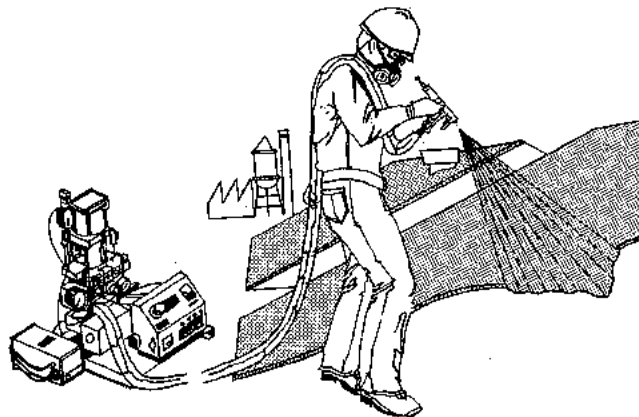
제품명	세룰로스 (CELLULOSE)		열전도율 : 0.03Kcal / mh℃
성 분 및 제 조	폐지와 난연재를 분쇄 혼합하여 만드는 것으로 폐지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싸며 열 전도율이 0.033이하로 우수하며 불이 번지지 않아 화재에도 안전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 성	밀 도 : 0.03~0.05g / cm ³ 시공방법 : 솜처럼 사용 화재특성 : 자기소화성 내 열 성 : -45℃ ~ 80℃ 방 습 성 : 흡습율 5%
용 도	기존주택의 천정 및 농촌 스프레이붕틀단열, 특수 건축의 경우 스프레이전에 의한 벽체, 천정의 접착 단열시공.	가 격	1mm / 1 m ² : 24 ²⁴ 원, 50mm / 1 m ² : 1,212원 1mm / 1 평 : 80원, 50mm / 1 평 : 4,000원

시 공 장 면



제품명	우레탄폼 (URETHANE-FOAM)		열전도율 : 0.018~0.020Kcal / mh℃
성 분 및 제 조	경질우레탄은 폴리올 (polyol) 과 폴리이소시아산 (polyisocyanate) 및 발포제를 주원료로 하여 관상 및 파이프카바로 제조되며 분사전에 의하여 스프라브위, 벽면 등 시공부위에 분사건으로 폼을 형성시켜서 시공함	특 성	밀 도 : 0.025~0.05g / cm ³ 시공방법 : 관상 또는 분사식 화재특성 : 난연처리 내 열 성 : -200℃ ~ 80℃ 방 습 성 : 흡습성 없음 흡 수 율 : 1 (Vol %)
용 도	옥상스라브위, 건축물내외단열, 특수운동장바닥, 각종차량, 선박, 냉동창고, 전자제품단열	가 격 (분사식)	1mm / 1 m ² : 300원, 50mm / 1 m ² : 15,000원 1mm / 1 평 : 990원, 50mm / 1 평 : 49,500원

시 공 장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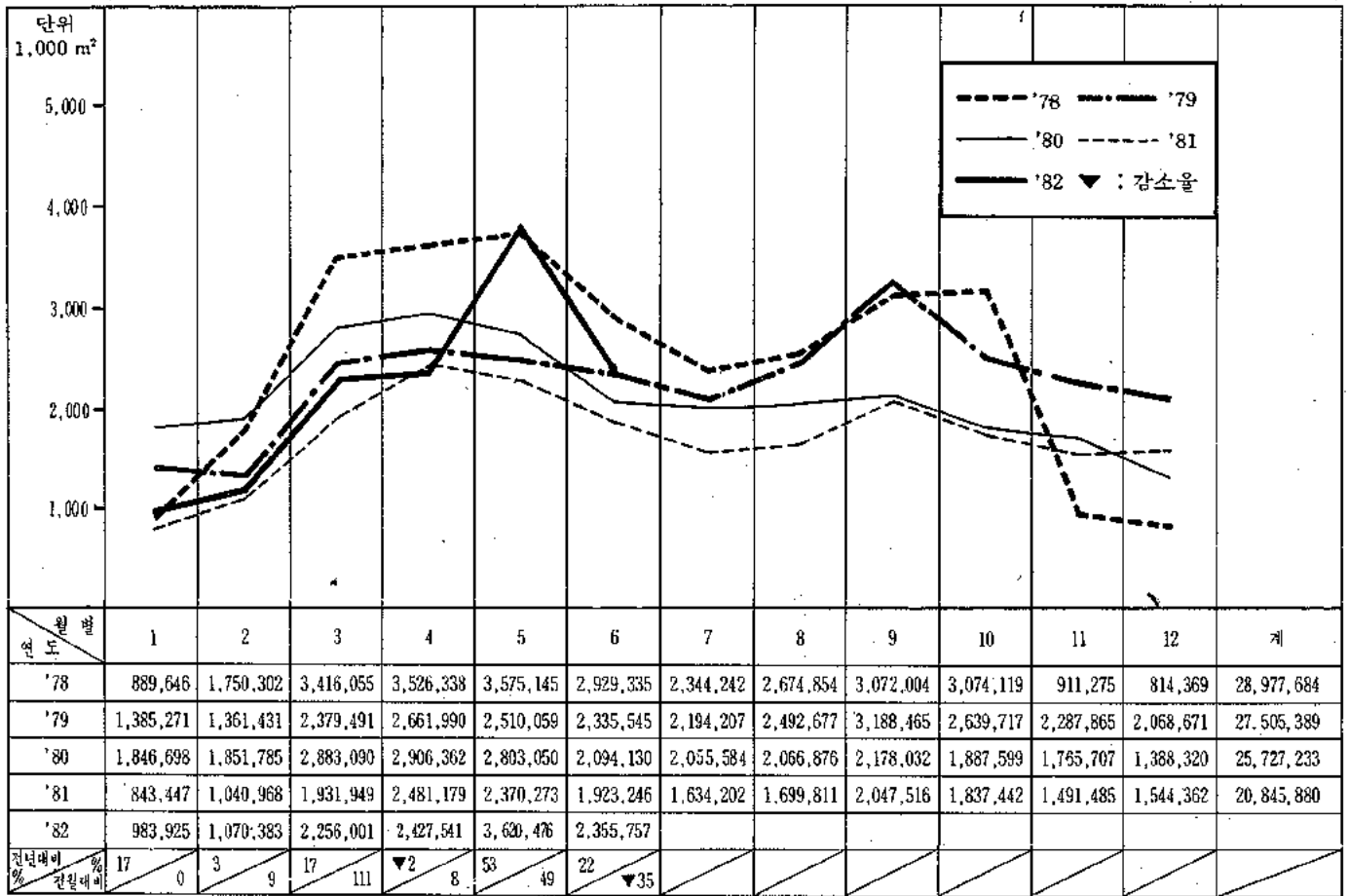
- 분사 · 공장 :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578 T : 용인 (1335) 3791 포곡17
- 서울사무소 : 종로구 신문로 2 가 89 피어선빌딩503호 T : 723 · 8301 ~ 3
- 시 공 센 타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60 - 16번지 T : 590 - 3930



건축허가(도서신고) 면적 변동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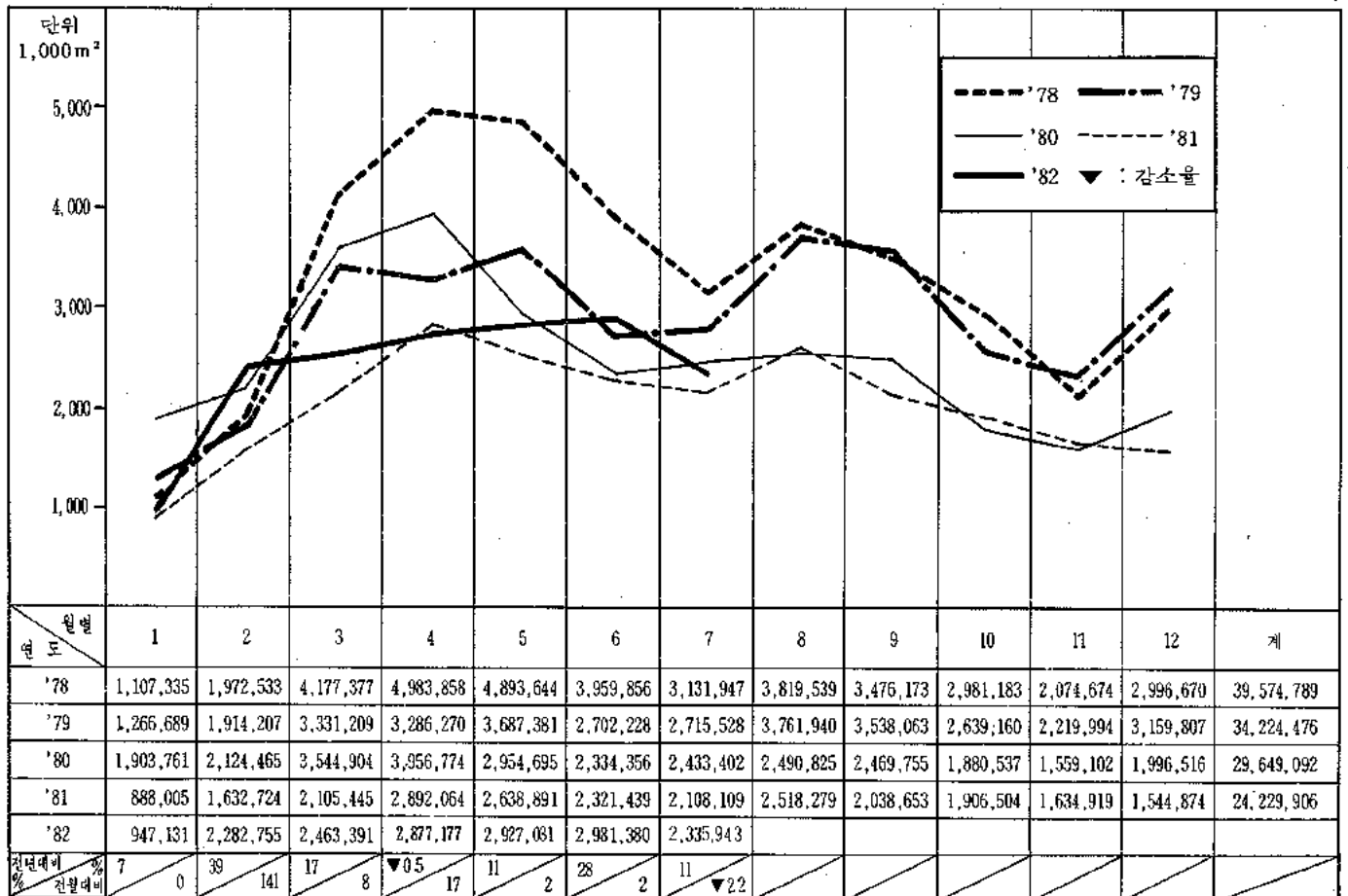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2. 6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2. 7 현재)



건축법시행령개정령 (82. 8. 7개정)

(대통령령 제10,88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폐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중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폐멸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7.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8.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잘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0.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상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건축물을 말한다.

1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상 필수적인 것으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자의 목적이나 건축물관리·건축설비·위생·대피·종업원후생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용도를 말한다.

12.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경우(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3.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서울특별시·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정하는 토지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대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적용) 법 제3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다음의 구역으로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
2.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구역
3.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도로 중심선이나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 이내의 구역

제4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2 제2항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 제1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은 제외한다)을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5호 나목, 법 제5조, 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 법 제7조, 법 제7조의2, 법 제9조의2 제3항,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3항 및 제5항, 법 제43조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 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건축허가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등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조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써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신청인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한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7조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허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로서 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

하여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8조 (공사감리자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등의 공사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공사
2. 3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등의 공사
3.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게 한 건축물의 건축등의 공사

② 공사감리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 이상의 건축등의 공사에서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그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착공신고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의 공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동별 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착공신고서 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군수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설계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및 준공신고서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건축물의 가사용의 승인) ① 건축주는 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방화·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건축물(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의 일부가 법 및 이 영이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조처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간검사) ① 건축주는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중간검사신

청을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된 기초의 경우에는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 제 1 호 이외의 구조로 된 기초의 경우에는 그 거푸집 또는 추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② 건축주는 건축면적이 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동일 대지안에 2 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출수량이 많은 대지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간검사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회이상으로 구분하여 중간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은 중간검사에정일의 3 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중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에정일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법 제 2 조제 7 호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사(철근배치 또는 거푸집설치를 제외한다)를 계속할 수 없다.

제1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는 당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 1 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지체없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 1 항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 7 조제 2 항 및 제 4 항과 법 제 7 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 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구역은 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 이상을 단위로 할 것.

2. 도시계획에 다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 구역의 위치·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5. 앞으로의 도시개발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② 제 1 항에 규정된 기준외에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 8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된 서류 또는 도면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설계의 목표와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대상구역을 포함한 주변구역의 현황

3.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4.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5.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형태에 관한 제한 사항

6. 대상구역의 공공시설설치계획

7. 조경계획

8. 기존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과 그 처리계획

9. 기타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 2 장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건축설비

제 1 절 대 지

제14조 (대지의 조성) 법 제 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 : 1.5 이상으로서 높이 1 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5 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 기타 필요한 조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적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15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 9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등을 한 때에는 당해 대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시·군의 조례(이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 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 2 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 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 퍼센트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한다.

③ 시장·군수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점사를 할 수 있다.

제2절 구조내력

제16조 (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2. 제1호의 건축물중 21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제3절 일반구조

제17조 (개구부의 차면시설등) 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를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거실의 창으로서 수시로 여닫는 것에 있어서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거실의 반자높이) ①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이상(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거실의 바닥등) ①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 그 바닥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에 콘크리트바닥의 설치 기타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중목욕장의 욕실 또는 숙박시설·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조리장의 바닥 및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등구조)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계단의 구조) ① 계단중 높이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단중 높이 1미터를 넘는 것은 그 계단 및 계단참의 양쪽에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 폭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마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은 거친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건축물의 용도별 구조)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기타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조치) 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때에는 법 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그 벽·반자·지붕·바닥·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0에 정한 건축재료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외의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재료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그 유통 또는 수송의 여건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절 내화구조·방화구조 등

제26조 (내화구조)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터(그 마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3. 기둥에 있어서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의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

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그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제기한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7조 (방화구조)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철망모르터바르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터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흠으로 맞벽치기 한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제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제28조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랜치로서 주무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것.

4. 당해 개구부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① 제28조제 1 호에서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3. 제 1호 및 제 2호에 계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 제28조제 2 호에서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철재 및 방입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복재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4.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계기한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 방화문의 문틀은 불연재로 하고,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닫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달아야 한다.

제30조 (방화구획)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운동시설·공강·통신촬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로써 메워야 한다.

⑥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에 정하는 구조의 뎀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2.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3. 닫힌 때에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4. 제 1호 내지 제 3호에 정한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뎀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31조 (복조건축물등의 방화벽)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제30조제 4항 내지 제 6항의 규정은 제 1항의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 ①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 밑 또는 바로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 또는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방화에 주요한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 및 또는 바로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굴뚝의 높이는 그 상단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로부터 0.9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건축물의 내장) ①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의료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판매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동일 건축물안에는 공동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 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5절 피난시설등

제36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제37조 (복도의 폭) ① 복도의 유효폭은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미터)

구	분	양 측 에 거 실 이 있 는 복 도	기 타 의 복 도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2.4	1.8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공동주택의 공용복도 기타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		1.5	1.2

②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에 접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제1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라 한다)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폭 1.5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폭 1.8미터 이상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폭 2.4미터 이상

③ 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종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외측에는 그 양측 바 후방에 모두 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를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은 서로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위락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 이

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9조 (피난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라도 그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 이상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를 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의 비탈로 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공연장의 관람석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계단실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이하 이 조에서 “개구부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

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감종방화문 또는 을 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②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감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은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③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로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개구부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충분히 채광이 될 수 있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의 옥외에 면하는 개구부등(망입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한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개구부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입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감종방화문을,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1항제6호의 감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각각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둘레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① 관람집회시설 기

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담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종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종별로 2 이상 설치할 것.
2. 각출구의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일 것.
3. 각종별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제43조 (옥외로의 출구) ①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개구부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 제1항에 정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담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옥외로의 주된 출구의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옥상광장등)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이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콥터착륙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주된 출구(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보조출구 및 비상구를 포함한다) 및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통하는 폭 3미터(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 (대규모건축물등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폭 3미터 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개구부의 폭은 2.5미터 이상,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절 지하층

제47조 (지하층의 설치) ①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 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의 건축(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다)하는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1층 이상 15층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바닥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이영 또는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에 의한 공지 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만 쓰이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지하층의 구조)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되, 벽 두께는 20센티미터 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제7절 건축설비

제49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배수·환기·난방·냉방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적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환기설비)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등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 (난방설비등) ①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골프장·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급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한다.

제52조 (소화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제53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②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강장은 개구부·창 또는 출입구(이하 이 조에서 “개구부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적접 노대 또는 외부로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로(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로 할 것.
5. 채광이 충분히 되는 개구부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55조 (위생설비) ① 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전용변소가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상인 층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 변소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구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는 오물청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비상조명장치) ①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으로 연결되는 주된 복도·계

단·기타의 통로에는 비상용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기숙사·운동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는 화재시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바닥의 조도가 1룩스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구내통신선로 설비) 건축물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9조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차고·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우편물수취함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수위실 또는 그 부근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 (국기게양대의 설치) 상업지역내에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10미터 이하의 높이에 길이 2미터 이상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 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의 텔레비전수상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도로 및 건축선

제62조 (막다른 도로의 구조등)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구조로 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길이 35미터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폭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폭
10 미 만	2
10 이 상 35 미 만	3
35 이 상	6

제6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지들 배결이의 5분의 1 이상을 다음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폭 8미터 이

상의 도로

2.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

제64조 (도로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 ① 법 제2조제1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
2. 도로의 폐지후 또는 변경 전후의 상태
3.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

제65조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법 제30조제1항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정하는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미터)

도로의 교차각	교차되는 도로의 폭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90°미만	8 미만 6 이상	4	3
	6 미만 4 이상	3	2
90°이상 120°미만	8 미만 6 이상	3	2
	6 미만 4 이상	2	2

제4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제66조 (지역안의 건축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같은 호에 정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주거전용지역:별표 1에 정한 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별표 2에 정한 건축물
3. 자연녹지지역:별표 3에 정한 건축물
4. 생산녹지지역:별표 4에 정한 건축물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같은 호에 정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주거지역:별표 5에 정한 건축물
2. 준주거지역:별표 6에 정한 건축물
3. 상업지역:별표 7에 정한 건축물
4. 공업지역:별표 8에 정한 건축물
5. 준공업지역:별표 9에 정한 건축물

③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는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공장 및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7조 (공원안의 건축물)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68조 (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유원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69조 (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농치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 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대지안의 조경, 배지 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 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옥외에 돌출하는 건축설비·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최저고도지구안에서는 당해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교육연구지구안에서는 교육 및 연구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3조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업무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주간인구 및 교통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물이나 업무환경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4조 (임항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임항지구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설로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사업무에 직접 관제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관계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11. 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② 시장·군수가 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임항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당해 지구에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항지구안에서 이를 건축할 수 있다.

제75조 (공치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공치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공치지구안의 건축물의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조성이나 주요산업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7조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법 제3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특정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한다)로 구획된 가구를 단위로 하여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특정지구의 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도시계획시설을 침범하거나 그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토지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고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제1호 내지 제3

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특정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특정지구안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정지구 및 인근구역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2. 특정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4.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④ 시장·군수가 특정지구의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계획의 승인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는 법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특정지구안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3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3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2인이상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하여야 할 기간

⑥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5항제3호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안에 건축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3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자금계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서울특별시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에게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야 한다.

⑧ 시장·군수는 제7항 후단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재정신청인외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제8항 후단의 기간내에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도지사가 법 제3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신청인과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⑪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3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도시계획 사업시행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8조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승인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9조 (자연환경보전지구안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구의 지정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기타 그 지구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2.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3. 근린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전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에 필요한 건축물

제80조 (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는 동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81조 (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제69조 내지 제80조에 규정한 것 외의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구를 다시 세분화거나 새로이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2조 (적용의 특례) ①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제83조 (전폐율의 완화) 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대지를 말한다.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고,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 이상이며,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고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84조 (전폐율의 강화)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전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전폐율의 최하한도를 10분의 4 이상에서 법 제39조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전폐율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전폐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전폐율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330제곱미터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로 한다.
2. 주거지역·준주거지역 : 90제곱미터
3.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4. 자연녹지지역 : 600제곱미터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②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정하고 제1항의 기준면적의 2배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면적은 당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적용하는 기준면적에 그 대지안의 단독주택의 동수를 곱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제86조 (용적율)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에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및 건설부장관이 관광지·신개발지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비율에 그 2분의 1을 가산한 비율 미만이고, 그 비율의 2분의 1 이상인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율을 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천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당해 구역안에서의 용적율을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변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그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그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④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특정가정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제87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②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중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 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④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8조 (2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 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중 다음에 정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그 대지와 12미터 이상 접하고, 그 접한 길이가 대지폭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도로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에 있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의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89조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

① 상업지역안에서 대지둘레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6미터 이상을 후퇴(지표면이하의 부분은 제외한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상업지역안에서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10분의 4 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

제90조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측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각 부분을 다음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제10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2.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②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그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때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40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 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 건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대지 안에서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의 마주보는 부분의 벽 또는 당해 건축물(단독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다른 부분과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다만, 마주보는 각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를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으로 한 경우와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

물로서 그 높이를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물매가 4: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택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2조 (대지안의 공지) 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경비용에 쓰이는 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해공장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 : 6미터 이상
2.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4미터 이상
3. 공동주택(연립주택을 제외한다)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 이상

②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구 분	외벽각부분으로부터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정북방향의수평거리	외벽각부분으로부터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직각방향의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직각방향의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안의건축물	-	1.0이상	0.5이상
주거지역안의건축물	-	0.5이상	0.2이상
준주거지역안의건축물	1.0이상	0.5이상	0.2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2.0이상	1.0이상	0.5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	4.0이상	3.0이상

공 동 주 택	-	3.0이상 (2층이하인경우에는 2.0이상)	2.0이상 (2층이하인경우에는 1.5이상)
---------	---	-------------------------	-------------------------

제6장 감 독

제93조 (하자보수)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건축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그 준공점사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공사기간중의 과실로 인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4조 (건축허가의 취소) 법 제42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건축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제95조 (손실보상) ①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이 보상을 할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손실은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6조 (건축허가의 제한) ① 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7조 (건축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의 시장 또는 군의 군수(이하 이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4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등이 지명하며, 위원은 건축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의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건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폐안 및 이에 의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2. 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3. 법 제 26 조제 1 항 및 법 제 4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
한 구역의 지정
 4. 법 제 3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법 제 33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계획의
작성과 법 제 33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6.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
의 건축물과 법 제 5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장등이 부의하는 사항(제 6 호에 정한 것의
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⑤ 사장등은 제 4 항 각호의 사항에 관련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로 하여
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⑥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장등에게 건의
할 수 있다.
- ⑦ 제 1 항 내지 제 6 항에 규정한 것외에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98 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 47 조제 1 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
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3 층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가스 및 수도의 새로
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3. 법·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다만,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
설에 대하여는 법 제 22 조의 3·법 제 30 조·법 제
39 조 또는 법 제 39 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존
속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 99 조 (용도변경) ① 법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며, 이 경우에 법 제 3 조·법 제
5 조·법 제 8 조·법 제 8 조의 2·법 제 10 조제 1 항·
법 제 17 조·법 제 23 조의 2·법 제 24 조·법 제 26 조
제 3 항·법 제 32 조·법 제 33 조·법 제 39 조의 2·법 제
41 조·법 제 41 조의 2·법 제 42 조·법 제 44 조·법 제

52 조·법 제 53 조·법 제 53 조의 3·법 제 54 조·법 제
55 조 및 법 제 57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 8
조의 2·법 제 10 조제 1 항·법 제 24 조·법 제 26 조제 3 항
·법 제 32 조·법 제 33 조·법 제 39 조의 2·법 제 41 조
·법 제 41 조의 2 및 법 제 52 조의 규정은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
비의 기준을 달리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부표 각항 각호간(제 4 항 각호 및 제 5 항 각호간
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2.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부표 제 4 항 각호간의 용도
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 상
호간의 업종변경
4.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
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상호간의 업종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6.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제
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시설계확인가 당시
의 용도의로의 용도변경
7.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
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원의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동
의 결정 당시 또는 점용허가 당시의 용도의로의 용도
변경

② 제 1 항의 경우에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 6 조제 1 항·법 제 7
조(착공신고를 제외한다) 및 법 제 42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2 조 또
는 법 제 33 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이 법·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용도제한
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보다 그 부적합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의 용도변경을 허가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00 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법 제 49 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
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법 제 3 조·법
제 5 조·법 제 6 조제 6 항·법 제 7 조(착공신고에 관한
사항 및 제 1 항 후단을 제외한다)·법 제 7 조의 3·제
1 항·법 제 8 조·법 제 9 조제 4 항·법 제 9 조의 2 내
지 제 11 조·법 제 21 조·법 제 26 조제 3 항·법 제 28 조
제 53 조의 3 및 법 제 54 조 내지 제 57 법 제 33 조(건축물의
형태·색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법 제 33
조의 2 제 1 항·법 제 42 조·법 제 42 조의 2 공사시공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법 제 43 조·법 제 44 조·법 제 46
조제 1 항·법 제 51 조·법 제 53 조 법 제 3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높이 6 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 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3. 높이 4 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 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 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제101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굴뚝·다락(반자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배관팻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쿨링타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면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 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면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1미터 이상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에서 1미터를 뺀 나머지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광고판의 경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갈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때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 제1 항제 5 호다목 또는 제 8 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 2 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102조 (적용의 특례) ① 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 7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3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굴착할때 인접 대지(건축하는 당해 대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손괴방지를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② 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제14조·제46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2장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증축·개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제2호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다음에 정하는 증축(그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도변경을 포함한다)·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준시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 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 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환경오염 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 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

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국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시로부터 10 년간에 한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법 제53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설비 등의 증축 또는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중전 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1 호 외의 것은 다음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가. 전폐율: 10분의 9 이하

나. 용적율: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 배 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 분의 1 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피어야 할 거리의 2 분의 1 이상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열병합발전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 3,558호 건축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으로서 전폐율 및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은 그 전폐율 및 용적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통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그 설치에 관한 제신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 5 제 3 항 제 2 호중 "건축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를 "건축법 제 5 조 제 2 항"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 2 항 제 3 호중 "건축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5 조 제 1 항"으로 한다.

③ 소방법시행령 제17조 제 1 항제 8 호중 "건축법시행령 제96조 제 1 항제 3 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0조 제 1 항제 3 호"로, 동령 동조 제 2 항제 3 호중 "건축법시행령 제95조"를 "건축법시행령 제29조"로, 동령 제30조제 1 항중 "건축법시행령 제104조"를, "건축법시행령 제 38 조"로 한다.

[별표 1]

주거전용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 단독주택
- ②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부표 제4항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것에 한한다)
- ③ 근린공공시설
- ④ 종교시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타종시설 및 육의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 ⑤ 노유자시설
- ⑥ 국민학교

[별표 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 근린생활시설
- ② 근린공공시설
- ③ 교육연구시설 (공장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④ 공장 (부속기숙사를 제외한다)
- ⑤ 창고시설
- 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⑦ 운수시설
- ⑧ 자동차관련시설
- ⑨ 쓰레기오물처리장
- ⑩ 군사시설

[별표 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 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②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③ 근린공공시설
- ④ 종교시설
- ⑤ 노유자시설
- ⑥ 의료시설
- ⑦ 교육연구시설 (시설강습소를 제외한다)
- ⑧ 운동시설
- ⑨ 공공업무시설
- ⑩ 관광숙박시설
- ⑪ 관람집회시설
- ⑫ 전시시설
- ⑬ 도정공장·식품공장
- ⑭ 농산물보관창고
- ⑮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 ⑯ 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시내버스터미널
- ⑰ 동물관련시설
- ⑱ 교정시설
- ⑲ 군사시설
- ⑳ 통신·촬영시설
- ㉑ 묘지관련시설

㉒ 관광휴게시설

[별표 4]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
- ②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③ 근린공공시설
- ④ 종교시설
- ⑤ 의료시설
- ⑥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 ⑦ 동·식물원
- ⑧ 도정공장·식품공장, 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 ⑨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시설
- ⑩ 위험물판매취급소
- ⑪ 동물관련시설
- ⑫ 군사시설
- ⑬ 방송국·전신전화국
- ⑭ 관광휴게시설
- ⑮ 제1항 내지 제1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지 것으로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별표 5]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격리병원
- ② 사설강습소
- ③ 일반업무시설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숙박시설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관과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 ⑤ 판매시설
- ⑥ 위락시설
- ⑦ 관람집회시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을 제외한다)
- ⑧ 동물원
- ⑨ 공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2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⑩ 창고시설 (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를 제외한다)

- ⑪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관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
- ⑫ 운수시설(시내버스터미널·철도역사·해운시설을 제외한다)
- ⑬ 자동차관련시설(주차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인 차고를 제외한다)
- ⑭ 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에서의 축사·부화장을 제외한다)
- ⑮ 쓰레기오물처리장
- ⑯ 촬영소
- ⑰ 묘지관련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격리병원
- ② 위탁시설
- ③ 관람장
- ④ 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연탄제조업 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관매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 ⑥ 운수시설(시내버스터미널·철도역사·해운시설을 제외한다)
- ⑦ 자동차관련시설(차고·세차장·자동차관계 강습소를 제외한다)
- ⑧ 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 미만인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축사·부화장을 제외한다)
- ⑨ 쓰레기 오물처리장
- ⑩ 묘지관련시설

[별표 7]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격리병원
- ② 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과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연탄제조업 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관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 ④ 폐차장
- ⑤ 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간이도제장을 제외한다)
- ⑥ 쓰레기 오물처리장
- ⑦ 묘지관련시설

[별표 8]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단독주택·공동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② 노유자시설
- ③ 의료시설(보건사회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병원을 제외한다)
- ④ 교육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제외한다)
- ⑤ 운동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을 제외한다)
- ⑥ 숙박시설
- ⑦ 판매시설
- ⑧ 위탁시설
- ⑨ 공연장·관람장

[별표 9]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① 단독주택·숙박시설(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숙박시설에 한한다)
- ② 격리병원
- ③ 위탁시설
- ④ 관람장
- ⑤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먼지·매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해당하는 공장
- ⑥ 위험물제조소

[별표 10]

한국공업규격표시품 등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구	분	품	명
1.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포트랜드시멘트	
		2. 레디믹스콘크리트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4. 나왕베니어코어합판	
		5. 수도용아연도강판	
		6. 인입용비닐절연전선	
		7. 옥내용소형스위치류	
		8. 콘센트 및 플러그	
		9. 도아틀로우저	
		10.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11. 수도꼭지	
		12. 배관용밸브	
		13. 복층유리	
		14. 보주정첩	
		15. 배관용탄소강판	
		16. 배수용주철관	
		1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18.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	
		19.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 이음관	
		20. 난방용주철방열기	
		21. 난방용강관방열기	

2. 전설부장관이 인정하여야 하 는 건축재료	22. 난방용방열기부속품
	23. 경질비닐전선관
	24. 강제전선관
	25.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26. 프리텐션방식원심벽피·씨말뚝
	27. 도자기질타일
	1. 보통벽돌(소성벽돌)
	2. 시멘트벽돌
	3. 시멘트블록
	4. 시멘트기와
	5. 스테트기와

{부 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①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공 관

② 공동주택

1. 연립주택
2. 아 파 트

③ 기숙사

④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 건축물안(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점골원·조산원·안마시술소
5. 정구장·탁구장·태권도장·합기도장· 유도장·요가장·헬스클럽·체능계강습소·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품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 및 방앗간·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가원·당구장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강습소·복서실·장의사·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⑤ 근린공공시설

1.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⑥ 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장:수도원·수녀원·사찰 기타 이와 유사한것.

⑦ 노유자시설

1. 아동시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유치원·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노인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유사한 것.
3.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 복지시설

⑧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2. 격리병원:전염병원·정신병원·요양소·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⑨ 교육연구시설

1. 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사설강습소(예능계강습소·체능계강습소·자동차계강습소·독서실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⑩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것.

1.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운동장(육상·구기·수영·스케이팅·로울러스케이팅·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⑪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타 이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⑫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

2.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청소년호텔·해상관광호텔

⑬ 판매시설

1. 백화점
2. 시장: 슈퍼마켓(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장·도매시장·경매장·공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상점: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판매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 건축물안에서 제 4 항제 1 호의 용도와 동항제 2 호·제 3 호 또는 제 9 호의 용도 중 1 이상의 용도와 부합되어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⑭ 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도장(무도교습소를 포함한다)
3. 특수목욕장
4.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기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투전기업소

⑮ 관람집회시설

1. 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극장·영화관·연극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집회장: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관람장: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⑯ 전시시설

1. 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상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동식물원: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⑰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일반공장: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⑱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계기하는 것.

1. 창 고
2. 하역장

⑲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가스사업법·석유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

리법 또는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계기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3. 위험물제조소
4. 위험물저장소
5. 위험물취급소

⑳ 운수시설

1. 시내버스터미널
2. 시외버스터미널
3. 화물자동차터미널
4. 철도역사
5. 공항시설
6. 해운시설: 항만법 제 2 조 제 2 항제 1 호 내지 제 7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㉑ 자동차관련시설

1. 차 고
2. 세차장
3. 폐차장
4. 자동차검사장
5. 자동차매매장
6. 자동차부속상
7. 자동차제강소

㉒ 동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등을 포함한다)
2. 부화장
3. 가축시장
4. 도살장

㉓ 쓰레기오물처리장(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㉔ 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2.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㉕ 군사시설

㉖ 통신·촬영시설

1. 방송국
2.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촬영소

㉗ 묘지관련시설

1. 화장장
2. 납골당
3.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㉘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 建設基礎材類價格 (7.10~20일)

價格性格：都賣價
附加稅：別途

品名	規格	單位	價格				
			서울	釜山	大邱	光州	全州
羅王原木	中品 末口直徑 50~60cm	㊦ B/F	273	273	273	273	273
" 角材	180~240×9~13.5×4.5~6	㊦ 才	700	700	700	682	682
" 割材	150~240×3~6×1.5~2.7	㊦ "	650	650	650	650	650
" 板材	180~360×15~30×4.5~6	㊦ "	800	—	785	745	745
蒸氣乾燥木	含水率 13% 75×30mm	㊦ m'	20,310	20,310	20,310	20,310	20,310
후로팅보오드(방부처리)	" "	㊦ "	22,540	22,540	22,540	22,540	22,540
普通合板(T/II)	3.6~4.0 90×180cm	枚	1,800	1,800	1,800	1,800	1,800
"	" 120×240cm	"	3,200	3,200	3,200	3,200	3,200
防水合板	12 "	"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나무라이트	4.0×1,210×2,420	"	7,300	7,300	7,300	7,300	7,300
밤라이트	"	"	4,540	4,540	4,540	4,540	4,540
포틀랜드시멘트	40 kg	袋	1,859	1,859	1,859	1,859	1,859
白시멘트	"	"	4,500	4,500	4,500	4,500	4,500
컬러시멘트	#213(褐色) 20kg	"	2,465	2,465	2,465	2,465	2,465
消石灰	68.5%	M/T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自然자갈	#467 40~5mm	㊦ m'	3,700	3,700	4,200	5,000	4,900
混合骨材	A級	㊦ "	4,000	4,300	4,800	4,500	4,300
모스콘	#467	㊦ M/T	21,790	21,790	21,790	21,790	21,790
碎石骨材	#57 25~5mm	㊦ m'	4,000	5,100	5,000	5,200	5,000
레미콘	#57-270-140	㊦ "	29,420	31,820	29,830	—	30,080
大理石	칠보석 20~24mm	㊦ "	51,500	60,500	54,500	49,500	49,500
선라이트	小骨 0.8×670×6尺(KS)	枚	1,463	1,463	1,463	1,463	1,463
"	大骨 1.2×690×6尺	"	2,376	2,376	2,376	2,376	2,376
슬레이트	小骨 0.65×72×182cm	㊦ "	1,533	1,533	1,533	1,533	1,533
"	大骨 0.65×96×182cm	㊦ "	2,176	2,176	2,176	2,176	2,176
韓式기와	小 15×270×330mm	㊦ "	272	270	300	300	300
붉은벽돌	燒 1級	個	46	47	46	45	45
化粧벽돌	1級(見出系)無光	㊦ "	152	—	152	152	152
耐火벽돌	SK32 230×114×65mm	㊦ "	250	270	260	260	260
오지土管	直管 內徑 5"	"	750	750	750	750	750
시멘트벽돌	190×90×57mm	㊦ 枚	27	25	25	25	25
보도블록	300×300×60mm 무색	㊦ "	330	330	330	330	330
도로경계블록	150×120×1,000 B형	㊦ "	1,450	1,450	1,500	1,450	1,450
철근콘크리트관	450×1,000×45mm	㊦ 個	5,040	5,040	5,040	5,040	5,040
흙관(보통관)	하수도용 500×42×2.5m(KS)	㊦ "	8,820	8,820	8,820	8,820	8,820
흙관(압력관)	2kg/cm ² 500×42×2.5	㊦ "	10,580	10,580	10,580	10,580	10,580
파일	7m×350×65mm	㊦ 本	53,500	53,500	53,800	53,700	53,700
다이너마이트	一般 25mm (22.5kg)	㊦ 箱子	24,530	24,530	24,530	24,530	24,530
"	高性能 25mm (")	㊦ "	36,100	36,100	36,100	36,100	36,100

2 建設副資材類

價格性格：都賣價
附加稅：別途

內裝타일	白色 1級 108×108mm	㊦	坪	7,200	7,230	7,200	7,200	7,200
"	有色 1級 "	㊦	"	7,400	7,500	7,400	7,400	7,400
모자익타일	25×25mm (HL)	㊦ m'	"	3,333	3,600	3,500	3,500	3,500
外裝用타일	59×59mm (IT)	㊦ "	"	4,499	4,600	4,499	4,499	4,499
바닥용타일	90×90×9mm	㊦ "	"	6,750	6,800	6,750	6,750	6,750
아스타일	2.5 300×300cm	㊦	坪	7,980	7,980	7,980	7,980	7,980
아스팔트루우핑	一般 6坪 100cm×21m 20kg	㊦	卷	6,900	7,200	6,900	6,900	6,900
아스팔트펠트	" 12坪 100cm×42m "	㊦	"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物價情報提供)

會員動靜

변경

□ 부산지부 = △ 송국웅 · 정진영 · 박영순 회원 / 부산종합설계사 / 남구남천동 11-13 / 사무소이전 / TEL. 65-0245 · 69-0998 / 6월 5일
 △ 김건수 회원 / 종합건축기술공사 / 북구덕포동 429-4 / 성명변경 / TEL. 92-4411 / 6월 15일
 □ 경기도지부 = △ 윤광영 회원 / 윤광

영건축설계사무소 / 의정부시의정부동 180-8 / TEL. 2-2945
 △ 윤문혁 회원 / 동도건축설계사무소 / 의정부시의정부동 / TEL. 2-2869
 △ 김영석 회원 / 고양건축설계사무소 / 고양군원당읍주교리 / TEL. 6-5158

□ 대구지부 = △ 이지관 · 안상은 회원 / 삼성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서구평리동 1094-7 / TEL. 94-1168 / 6월 15일

휴업

□ 서울지부 = △ 김성동 회원 / 아립건축설계 / 서대문구대신동 35-3 /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폐업

□ 부산지부 = 강영순 회원 / 동성대흥종합건축연구소 / 5월 3일 / △ 황경호 회원 / 대아건축설계사무소 / 5월 26일
 △ 윤창용 회원 / 삼원설계사무소 / 7월 9일

□ 충남지부 = △ 김준용 회원 / 종합건축연구소 / 대전시중구선화동 182-4 / 7월 8일

□ 서울지부 = △ 황인무 회원 / 중앙합동건축 / 7월 23일
 △ 강권순 회원 / 상명합동건축 / 7월 23일
 △ 이근창 회원 / 완종합건축 / 7월 22일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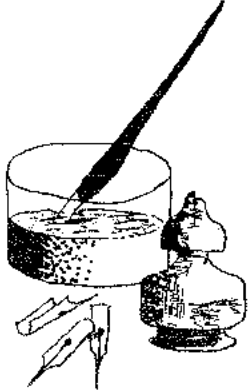
□ 경기도지부 = △ 황갑선 회원 / 동아건축연구소 / 6월 20일
 △ 박상두 회원 / 부친별세 / 7월 21일 / 자택
 △ 이상쾌 회원 / 부친별세 / 7월 31일 / 자택
 △ 박찬영 사무국장 별세 / 7월 27일 / 자택

□ 경북지부 = △ 장학선 회원 / 부친별세 / 7월 12일 / 자택

입원

□ 경북지부 = △ 최중배 회원 / 교통사고 / 포항성모병원에 입원 / 7월 23일

◆ 編輯後記 ◆



□ 올림픽을 위한 준비작업이 점차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 분수에 알맞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도시환경을 꾸미고 새 시설을 세우는 데에는 역시 전문 건축인들의 힘이 필요한 것은 두말이 필요없다. 회원제외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用)

□ 36년의 치욕을 사흘이나 닷새쯤의 두통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으나보다. 어처구니가 없을 때는 말문이 막힌다.

빌어먹을!

歪曲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뱀의 혀가 몸에 닿는 듯한 소름으로 치가 떨린다.

8월 15일.

우리에게 있어서 이날이 주는 의미는 운명같은 한과 기쁨과 슬픔이다.

침을 수 없는 짜증에 잠시 일손을 놓고 소리쳐 본다.

뭔가,

우리는 뭔가, 뭔가 말이다!

그리고 멧적은 오기를 부려 본다.

〈나의 이모가 포함되어 있는 제일동포만 없다면 당장 지진이라도 나서 그놈의 섬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으면……〉 (京)

□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또 하나의 더위는 우리의 열기를 식힐줄을 모르고 기승을 부린다.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정말 웃어 넘기기엔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는 구제 불능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인 나 자신은 조국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되니 불행중 다행이 아닌가 싶다. (基)

□ 수은주는 계속 34°, 35°를 가리키고 내려갈줄을 모른다.

연일 더운 날씨 속에 모든 것이 짜증스럽기만 하다.

이 더위에 오직 기다려지는 것은 서늘한 가을뿐인 것 같다. (宙)